

창업농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연구책임자 : 강대구 (순천대학교)

공동연구원 : 정철영 (서울대학교)

이근수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연구보조원 : 김재호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보 조 원 : 빙하나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생)

농림부 도서실



0008893

순천대학교

창업농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연구책임자 : 강대구 (순천대학교)

공동연구원 : 정철영 (서울대학교)

이근수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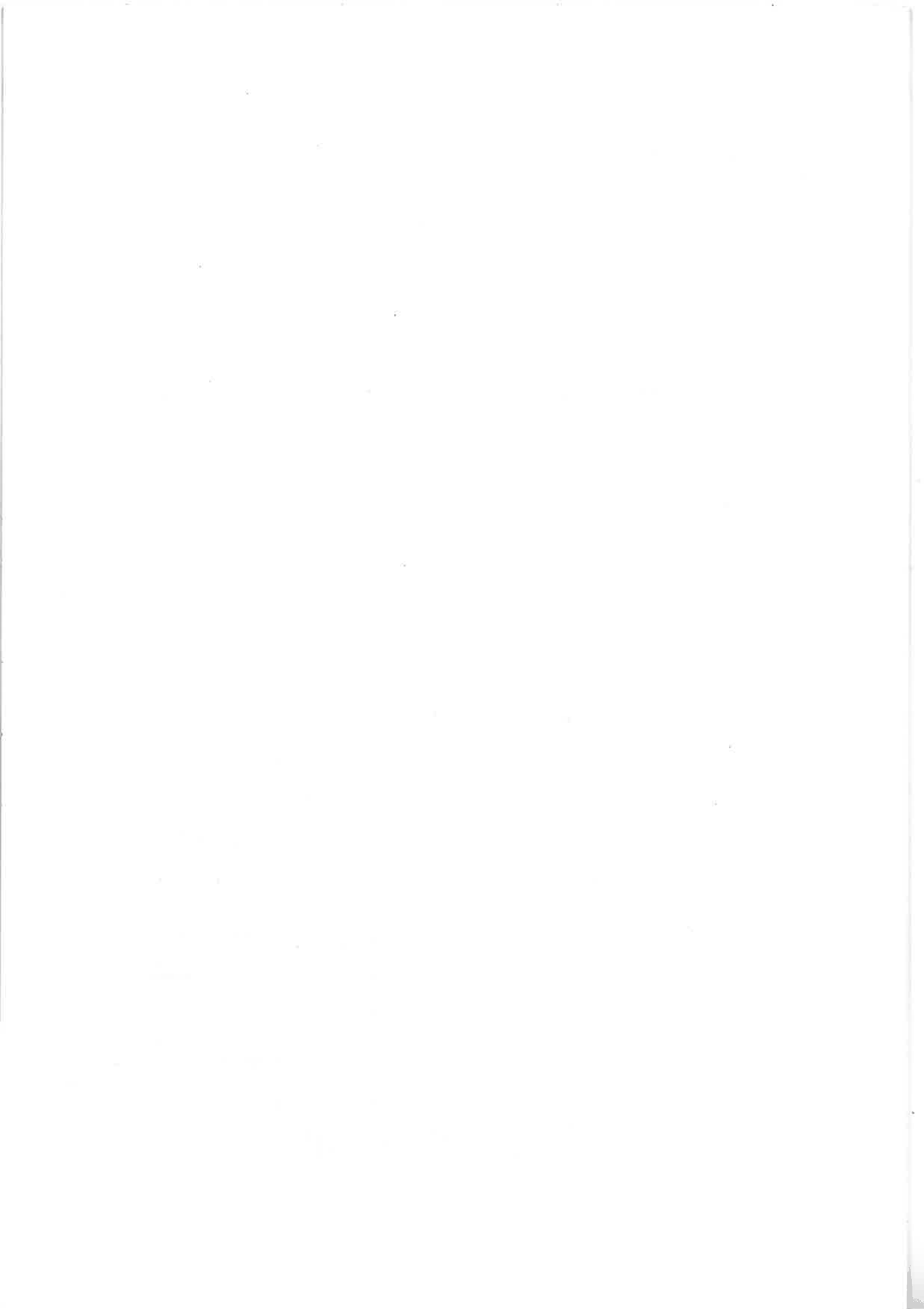
연구보조원 : 김재호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보 조 원 : 빙하나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생)

2003-10

농림부 자료실
등록번호: 8893
등록일: 2003년 10월 16일
기증:

순천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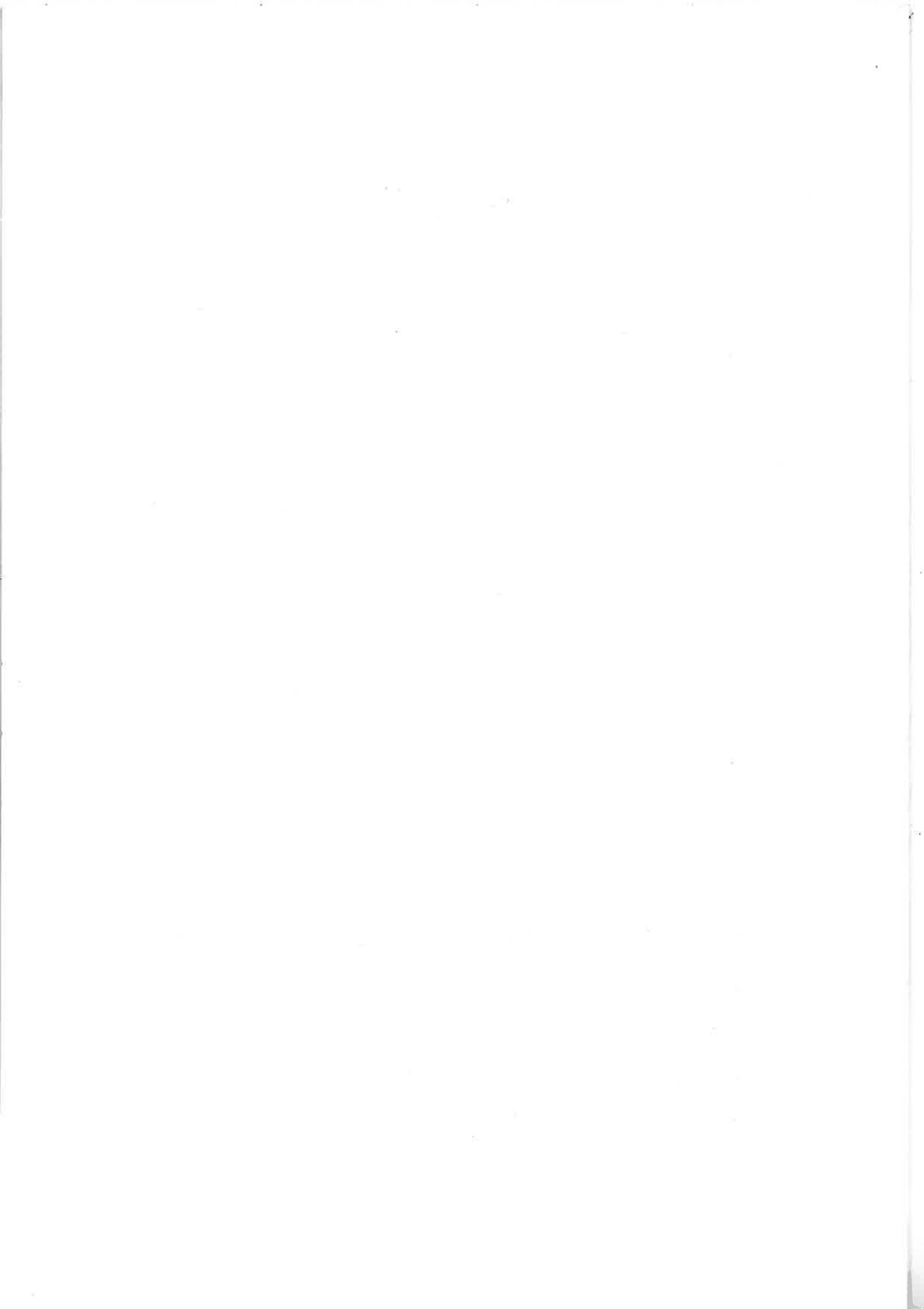
제 출 문

농림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창업농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3. 5.

-
- | | | |
|---------|----------------|-----|
| ▣ 연구책임자 | : 순천대학교 농업교육과 | 강대구 |
| ▣ 공동연구원 | :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 정철영 |
| |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교사 | 이근수 |
| ▣ 연구보조원 | :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재호 |
| ▣ 보조원 | :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빙하나 |
-



【연구 요약】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우수한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창업농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창업농 지원사업의 개념 및 현황,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일부 국가의 농업후계자 육성체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창업농 지원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또한, 이들을 토대로 창업농 선발 단계와 선발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논의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문헌고찰과 전문가 협의회를 주된 연구방법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농업인력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논문, 연구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포괄적으로 수집하였으며, 특히, 국내 창업농 지원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미국, 일본, 프랑스, 덴마크 등 선진농업국가의 농업정책 및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례를 수집하여 이용하였다. 또한, 문헌연구로 파악하기 어려운 농업인력의 발달단계에 따른 창업농의 구체적인 개념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업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문제점을 구명하고, 창업농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을 자문받기 위하여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 및 교육기관 및 정부기관, 연구기관 종사자 및 대학 교수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였다.

3. 창업농의 개념 및 현황, 문제점 분석

가. 창업농의 개념

창업농은 영농후계자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협조와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후계농업인, 영농후계자, 창업 후계 농업인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던 대상자들로서, 법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개인들이 창업농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선발된 농업인들을 말하며, 폭넓게는, 학교 졸업 후 농업 분야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로 정의하였다.

나. 창업농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창업농 지원사업은 동일한 명칭으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비슷한 내용으로는 후계농업인 사업 중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창업농은 성격상 영농을 처음 시작한다는 의미로, 후계농업인 역시 일부 한계는 있으나 농업을 승계한다는 의미가 있고, 이는 창업의 유형에 속하므로 후계농업인 사업도 함께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창업농 지원사업의 핵심은 어떠한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얼마나 타당하고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나 연령의 문제와 결부된 대상자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둘째,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심사,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선발과정상에 있어 한계가 있다.

셋째, 현재 신규후계농업인 지원분야는 경종분야와 축산분야로 제한되고 있으므로, 벤처농업부분을 사업항목으로 신청한 경우 현행 제도하에서는 선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농업관련 산업부문도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선정시의 점수기준이 여러 가지 항목을 합산하므로 일견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배점하에서는 사업계획 등이나 교육훈련 등의 일부 항목에 대한 점수를 못 받아도 선정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태이다.

4. 창업농 육성방안

창업농은 신규로 농업생산부문에 투입되는 인력으로서 농업에 대한 기술과 지식, 태도를 갖춘 인력이 될 것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영농할 작목에 대한 생산 기술과 경영기술의 기본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물론 영농과정에 대한 실제적 체험과정은 거치지 않았을 수 있으나 적어도 지식이나 기본적 기술,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기본 능력은 갖추어 있어야 함을 말한다. 즉, 전문적 농업 인력의 육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며, 이를 위하여 인력의 육성단계를 개인의 직업적 발달과 전문 농업인력의 육성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세분화된 단계로 인력개발 단계를 세분하여 정책적 적용을 차별화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선발 단계와 선발 이후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선발 단계

- 지원대상의 연령 및 영농경력의 반영 : 기존의 후계농업인 제도와 부합하도록 40세 미만의 규정을 그대로 둬야 적절함. 더구나 순차적인 단계를 거쳐 선발되므로 나이는 한계 연령으로 규정함이 필요. 영농경력은 새로운 방법에 따르면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창업후보자 단계나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경험을 갖도록 함이 필수적임.
- 선발방법 및 기준 : 단계별 선발 및 단계에 따른 기준 설정을 통해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3단계 통과된 사람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4단계에서 자금지원 규모를 결정함.
- 추진주체 : 4번째 단계인 자금지원단계는 종합자금제로 금융기관이 주가 되어 추진할 수 있으나, 3단계를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과정에서 충분한 사업계획서의 검토와 조언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후계인력 육성체제 : '예비단계 → 취농단계 → 정착단계 → 발전단계 → 안정단계 → 후계수련단계 → 경영이양단계'의 7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 적절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창업농의 확보 : 창업농은 전체 인구의 증가나 농업생산물에 대한 연간소비량 변동, 농업인구의 변동 및 농업인의 생산성 변동을 고려할 때, 매년 10만-20만명을 확보하여야 함. 농업인력, 국민식품소비량 등을 고려할 때, 농업분야의 학과개편에서 생산학과의 관련학과로의 개편을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의 취업생 6,500여명은 농업분야로 최대한 유치하되, 고교이상의 각급학교에서 10%이상의 졸업생에 대한 취농으로의 유인이 필요함. 더 나아가 졸업생들의 유치를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각급 농업계 학교에 상설과정을 설치 지원하여 취농희망자를 유치하는 방안이 육성과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

나. 선발 이후

- 사업계획서 : 영농사업계획에 대한 낮은 배점의 문제, 경영능력, 재배 작목에 대한 미래 소비 확대 가능성, 영농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재무관리 및 위험관리 능력 등이 재고되어 창업농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창업농 육성단계인 ① 예비후보자단계, ② 창업예비단계, ③ 창업단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사업계획서 내용 및 수준이 구분되어야 할 것임.

- 교육방안 : 창업농 각 육성단계별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함께, 건전한 농업경영체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관리 진단, 농업인들이 쉽게 작성하고, 자신의 재산상태와 수익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회계관리 프로그램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발 및 교육 등이 요구됨.
- 컨설팅 방안 : 컨설팅 관련 각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게 컨설팅 종류별 주체기관이나 업체를 선정하여 농업경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컨설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컨설팅 대상 경영체의 선정과 컨설팅 공급업체의 선정 등이 합리적으로 선정되고, 컨설팅 업체와 경영체가 상호 정보와 경영에 대한 각종 자료 공유를 통한 경영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제 목 차 례

I. 서 론	1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방법	2
4. 용어의 정의	3
5. 연구의 제한	3
II. 창업농의 개념 및 현황, 문제점 분석	5
1. 창업농의 개념	5
가. 관련 용어의 정리	5
나. 창업농 관련 정책의 변화 과정	9
2. 창업농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	12
가.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의 운영 현황	13
나.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사업의 운영 현황	24
다.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 사업	31
라. 4-H회 육성사업	33
3. 선행 농업 인력 육성 관련 연구의 제안점 요약	36
4. 창업농 지원사업의 문제점	40
III. 국외의 후계농업인 지원 현황	43
1. 미국	43
가. 미국의 농업정책	43
나. 영농후계자 육성 체계	44
다. 영농후계자 지원을 위한 법률 및 시책	46
2. 일본	48
가. 농업분야로의 유인책	48
나. 전문농업인력으로서의 성장 유도 정책	57

3. 프랑스	62
가. 영농정착 지원금(DJA, Dotations aux jeunes agriculteurs)	62
나. SAFER	66
4. 덴마크	67
5.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68
IV. 창업농 육성 방안과 논의	71
1. 창업농 육성의 논리적 기반	71
2. 선발 단계상의 문제	71
가. 지원대상의 연령과 영농경력 문제	71
나. 창업농 대상자의 수요 규모와 확보 방안	73
다. 선발 방법과 기준의 문제	80
라. 추진주체	83
마. 후계인력 육성체제	84
3. 선발 이후의 문제	89
가. 사업계획서의 모형과 평가방법	89
나. 교육방안	99
다. 컨설팅의 개선방안	105
V. 결론 및 제언	109
참고문헌	117
[부록] DJA의 주요 작성서류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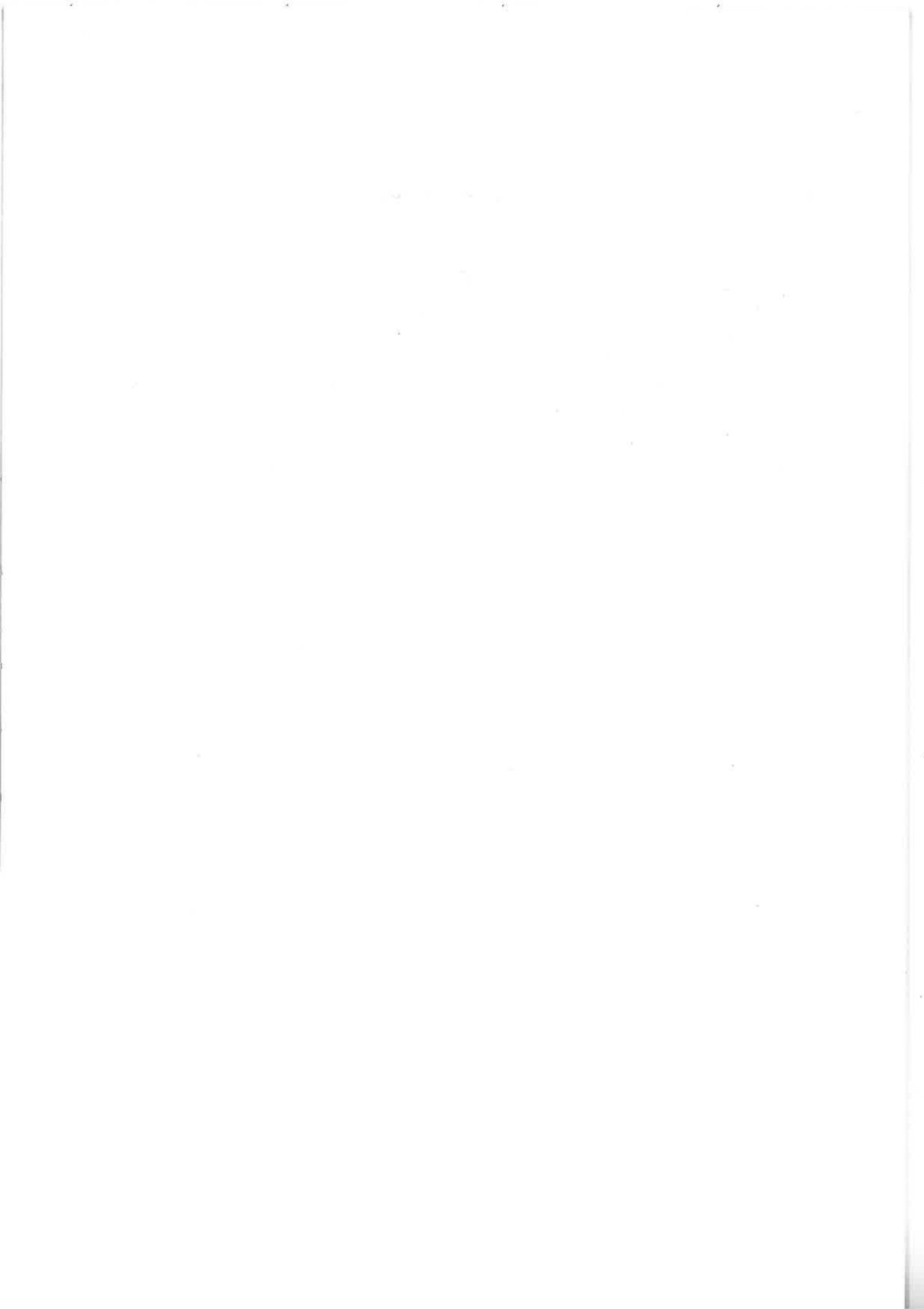
표 차례

<표 1> 창업농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변화 과정	10
<표 2> 창업농 육성사업의 추진방향 변화	11
<표 3>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의 개요	13
<표 4> 연도별 후계농업인 선정 현황	14
<표 5> 연도별 후계농업인 신청 현황	15
<표 6> 분야별 후계농업인 육성 현황	16
<표 7> 후계농업인 선정 및 자금지원 추이	17
<표 8> 신규후계농업인 평가방법 및 배점	19
<표 9> 취농창업후계농업인 평가방법 및 배점	20
<표 10> 신규후계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23
<표 11>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사업의 개요	24
<표 12>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사업기관별 추진업무	25
<표 13>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의 선정 추이	27
<표 14>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사유	27
<표 15>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의 시도별 배정 및 선정 현황	28
<표 16>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의 선정 기준 및 평가방법	29
<표 17>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 사업의 개요	31
<표 18> 귀농희망자 교육훈련프로그램	33
<표 19> 4-H회 육성사업의 개요	33
<표 20> 4-H 유형별 조직현황	34
<표 21> 과제유형별 4-H 현황	35
<표 22> 4-H 회원을 위한 교육과정	35
<표 23> 현행 농업인후계자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의 문제점	38
<표 24> 신규 영농취업자 금융지원	50
<표 25> 농업후계자 지역실천활동추진사업의 개요	53
<표 26> 농업경영기반의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시책의 체계와 내용	58
<표 27> DJA의 개요	63
<표 28> DJA의 주요 평가항목	64
<표 29> 지역에 따른 DJA 지원기준	65
<표 30> 농림업 취업자의 연령별 동향	74
<표 31> 농가인구수 변화	74
<표 32> 학교 유형별 졸업생의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분야 취업률	76
<표 33> 인구증가와 식품소비량에 기초한 농업종사인력 규모 추정표	77
<표 34> 학교수준에 따른 농업 세부분야별 취업자수	79
<표 35> 농업인력의 육성 단계	88

<표 36> 농업인력 육성단계별 정책적 적용	88
<표 37> 농업계고등학교와 농촌진흥청의 영농설계서 내용	89
<표 38> 육성단계별 사업계획서의 내용	91
<표 39> 영농사업에 대한 배점기준	98
<표 40> 신규후계농업인교육내용	100
<표 41> 단계별 교육내용	101
<표 42> 농촌진흥청에서 제시한 원예작물 경영진단 내용	102
<표 43> 고등학교 농업경영과목에 제시된 경영진단 내용	103
<표 44> 자산관리 진단방법	104
<표 45> 회계관리 프로그램 포함 내용	105
<표 46> 컨설팅 종류별 주체기관	105
<표 47> 육성단계에 따른 컨설팅	107

그림 차례

[그림 1]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사업 추진 체계	26
[그림 2] 귀농영농자금 대출취급 절차도	32
[그림 3] 4-H 육성체계도	34
[그림 4] 농가의 발전단계별 교육훈련과 자금지원의 연계	37
[그림 5] 미국의 농업정책 변화	44
[그림 6] 일본의 영농후계자 육성 체계도	56
[그림 9] SAFER의 토지사장 개입절차	67
[그림 10] 농업인력 육성기관 차원에서의 농업인력 육성체계	85
[그림 11] 컨설팅 절차 구성도	106



I. 서론

1. 문제의 제기

창업농 지원사업은 1970년대 말 농가인구의 노령화 현상의 심화, 농촌임금 상승과 일손 부족 문제의 대두, 농촌 청소년 층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농업노동력의 질적 저하 및 영농 후계자 부족 문제의 심각한 대두로 인하여, 영농후계자의 확보를 목표로 1980년 11월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법을 중심으로 시작된 후계농업인 제도를 승계한 사업이다. 후계농업인 제도는 영농후계자라는 사업명칭으로 1981년부터 시작되어 후계농업인을 확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최근에는 이 사업을 신규후계농업인과 취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구분하여 각 대상마다 선정기준의 차이를 두었으며, 1994년부터는 병역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후계인력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농업인력의 사전할당으로 인하여 양적 확보에 치우쳐 심사기준의 공정성이 지적되고 있고, 후계자의 확보에만 초점을 두므로 전체적인 농업인력육성의 틀 속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선정된 후계 농업인도 초기의 1회성 자금지원이나 경영컨설팅으로 그쳐 사후의 관리미비로 인하여 농업주도인력으로 성장하는 데 제한적이다(안덕현 외 2001, 정철영 외, 2002). 또 농업인력이라는 용어도 영농후계자를 중심으로 논의되므로 인하여 농업인력 전반적인 연구는 인력 수요 예측 정도로 그치고 있으며, 최근의 농업이 정보화나 비 농업부문의 첨단 기술이 농업분야에 접목되는 경향이므로 이들 분야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인력이 육성되어야 하나 이제까지의 정책체제가 생산농업인, 그중에서도 식량작물이나 동물의 직접 생산분야에 치우치는 실정이다. 병역복무를 혜택으로 제공되는 산업기능요원제도는 후계 농업인 제도와 구분하여 운영하는 관계로, 산업기능요원중의 후계농업인 지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박진도 외, 1999, p.60), 비록 제한된 결과이기는 하나 1996년의 경우는 산업기능요원 중 농 후계자로 지원한 사람의 비율도 낮았고, 이들 중 선정된 비율도 30%정도로 과거보다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이는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성격상 일손 부족 상태인 농촌에 일시적 인력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기는 하나 그들이 영농에 정착하는 비율도 감소하고 있고,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된 자가 후계 농업인으로 선정되기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가 신규 후계 농업인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감소하고 있음은 농업을 종사하는 후계자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어 영농 정착으로 유도하는 정책의 효과가 의문시되는 부분이다. 또한 지원자격에 대한 각종 제한이 있으나, 영농의욕이나 사업계획서와 같이 명백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을 선발과정에 반영하는 등의 객관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한 산업기능요원이라는 명칭과 취농창업후계농업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차별적 정책의 집행으로 인하여 정책적용에 있어서 분명한 구분이 곤란한 실정이다.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정책인 경우 정책적 적용대상이 농업을 창업하는 자로 한정되어야 하나, 창업자를 어떤 범주로 규정하는가에 따라 그 범주의 구분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창업을 통한 농업인력의 육성으로 정책을 전환함은 과거의 영농후계자 확보에 치중한 사업에 기초한 전환으로 의의가 있으나, 대상자의 자격이나 선발방식, 자금 지원방법과 육성에 관련된 구체적 사항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이 부분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벤처농업 부분과도 관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FTA 발효와 DDA의 전개는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틀로 농업의 시장개방을 촉진하여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사항이고, 이는 보다 경쟁력있는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가공의 과정을 담당할 우수한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나 현재는 이들 부분에 대한 연구는 농업인력이나 영농후계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일부 있을 뿐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창업농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농 지원사업의 개념 및 현황, 문제점을 분석한다.

둘째, 일부 국가의 농업후계자 육성체제를 살펴보고 창업농 지원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한다.

셋째, 창업농 선발 단계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창업농 선발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연구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기본적인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후계농업인력과 관련된 각종 정책과 통계자료 및 연구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농업인력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논문, 연구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포괄적으로 수집하였다. 특히, 국내 창업농 지원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미국, 일본, 프랑스, 덴마크 등 선진농업국가의 농업정책 및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례를 수집하여 이용하였다.

나. 전문가협의회

문헌연구로 파악하기 어려운 농업인력의 발달단계에 따른 창업농의 구체적인 개념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업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문제점을 구명하고, 창업농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을 자문받기 위하여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 및 교육기관 및 정부기관, 연구기관 종사자 및 대학 교수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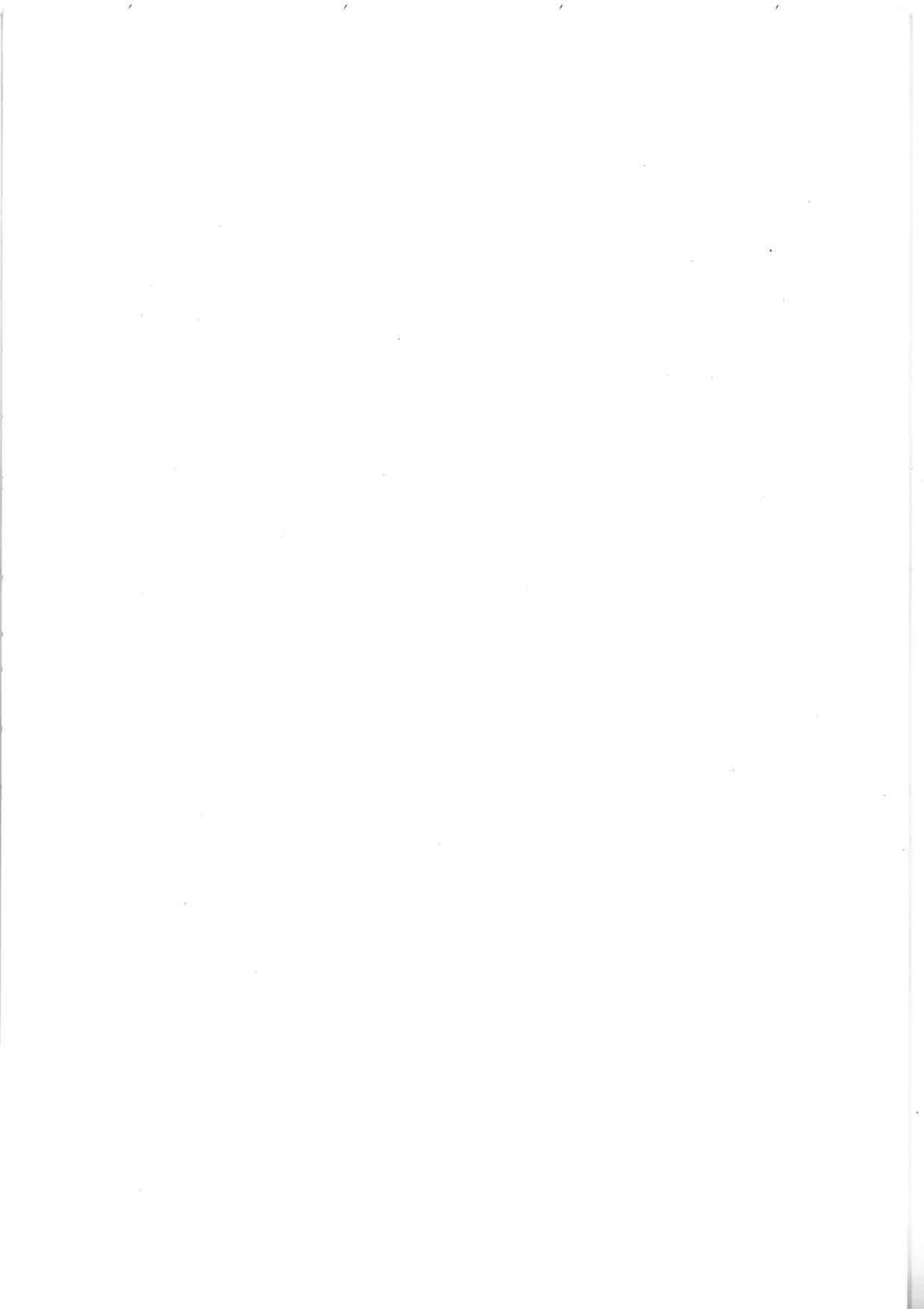
4. 용어의 정의

가. 창업농: 창업농은 영농후계자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협조와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후계농업인, 영농후계자, 창업후계 농업인들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던 대상자들로서, 법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개인들이 창업농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선발된 농업인들을 말한다. 폭 넓게는, 학교 졸업 후 농업 분야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창업농 지원사업: 농업창업에 관련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지원관련활동을 포함하며, 선발부터 육성까지의 전반적인 지원사업을 지칭한다. 여기서는 선발과정, 육성과정을 중심으로 파생되는 지원 및 선발기준, 선발방안, 교육 방안, 사업계획서 및 평가모델, 컨설팅 등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지칭한다.

5. 연구의 제한

이 연구는 창업농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화를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므로 창업농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의 연구이어야 하나 육성방향을 선회하면서 검토하는 과정으로서 창업농 사업만이 아닌 후계농업인 제도를 함께 검토하였으므로 엄밀한 의미의 창업농 지원사업만으로 한정되지는 않았으므로 확대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II. 창업농의 개념 및 현황, 문제점 분석

1. 창업농의 개념

창업농은 학교 졸업후 농업분야의 개인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하며, 영농후계자, 후계 농업인들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광의의 의미로는 농업분야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창업농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인력은 각종 정규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농업분야의 직업을 갖는 사람들과, 다른 분야의 일을 하다가 농업을 창업하거나 농업으로 귀농한 인력, 농업분야의 일을 하기 위하여 관련교육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 연수 등을 받고있거나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 범주에 속하는 용어들은 지금까지 영농후계자, 농업인 후계자, 후계 농업인이라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워왔다. 그들이 종사하는 분야를 포함하여 농어업인 후계자로 불린 경우도 있었다. 현재는 신규후계농업인,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후계 농업인들의 명칭이 사용되나, 규정상 자격기준이 농업분야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아닌 이미 일정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창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농업분야는 벤처농업 분야이다. 이는 벤처농 지원사업으로 요약되는데, 이 용어는 경영단위로서의 경영집단이나 개별 농업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의 특징을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들 용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분석하여 창업농이라는 정책의 범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가. 관련 용어의 정리

창업농이라는 용어는 최근 신규 후계 농업인 제도에 취농 창업 후계농업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용한 용어로서, 농업후계자를 대체하는 새로운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창업이란 “사업을 처음 일으킴, 또는 그 기초를 닦음. 기업(起業)”이라는 의미를 가졌거나, “나라를 처음으로 세움”¹⁾을 말하며, 결과적으로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사업의 기초를 닦는 것을 창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창업에 대한 정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함으로, 새로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 사업과 연관이 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 사

1) <http://kordic.empas.com/show.tsp?q=%C3%A2%BE%F7&qn=>

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법인 전환, 조직변경 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제외한 부분을 창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다음 표와 같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2조 1항에서 창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²⁾.

● 비해당 창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다만, 사업의 승계, 양수, 임차한 경우라도 이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신규로 창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동법상의 창업으로 인정
(※ 단,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분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
- 법인 전환, 조직변경 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다만, 조직변경 전후의 업종이 다른 경우는 변경전의 사업을 폐지하고 변경 후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동법상의 창업으로 인정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다만, 폐업을 한 후에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폐업전의 사업과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는 동법상의 창업으로 인정

앞의 규정들을 요약하면 창업은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만이 아닌,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다가 변경하거나, 분가하거나, 승계하여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직이나 전업이 창업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정의가 함께 창업농 사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창업농은 위의 정의에 따르면 농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로서 학교를 졸업하고 최초 직업으로 농업을 선택하는 집단이나, 다른 분야의 직업에 종사하다가 농업으로 전직한 사람들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IMF이후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 대부분이 농촌으로 귀농하여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농업을 영위하면서 살고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 역시 창업농의 범주에 속한다. 탈북 주민이나 병역의 의무를 마친 전역자와 같이 이주 후나 전역 후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한 집단 역시 그들의 직업이 과거와 다르다면 창업의 범주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 군제대자나 탈북 주민들은 군 입대전의 직업이나 탈북이전의 직업이 무엇인가에 따라 재론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지리적 이동이나 일정 기간 이상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업종의 유사성을 고려한다면 창업으로 보아도 문제는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이 창업으로서 농업을 선택할 때 이들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창업농 지원사업의

2) 중소기업청, 창업가이드, <http://www.changupnet.go.kr/cnet-bin/index.cgi>

핵심이 된다. 이는 농촌지역의 후계인력의 부족으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즉 신규 입직 자원이 감소되는 농촌 현실에서 농촌 외부 인력의 입직을 지원하여 농업인력으로 육성하는 것은 어쩌면 현실적으로 타당한 접근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창업농의 성격상 후계농업인 제도에서 출발하였고, 전직자가 아닌 농업계 학교를 졸업하여 농업 분야의 신규 인력으로 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농업분야에 좀 더 많이 진출하도록 돕는 일이 정책의 기본적 원칙이었으므로, 농업계 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후계자를 선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후계자로 선정되어 농업에 종사하도록 함도 그 의의는 있다.

정예인력이라는 용어로 사용한 경우도 있는데, 민승규의 연구(1997, pp.7-12)에 따르면 정예인력이라는 용어는 농업인 후계자의 육성 방향으로서 제시한 용어로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충분한 영농기술과 일정한 영농기반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구가 감소되거나 경영인력의 소수 정예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말과 함께 그 현상을 고학력화와 규모화라는 용어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전문인력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하였는데, 전문인력은 전문지식과 창의력을 갖춘 인력을 지칭하고 있어서 현재 단계의 인력을 지칭하고 그들이 갖춘 조건이 전문지식과 창의력이야 함을 말한다. 정예인력은 전문적 교육 이수라는 자격 조건과, 충분한 영농기술, 영농기반,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여 농업인 후계자 육성의 방향성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정의에 의하면 농업인 후계자라는 의미와도 관련이 있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의 인력이라는 의미도 함께 존재함을 말한다.

이들 외에도 현재 농업 인력 육성 체제하에서는 전업농이라는 용어와 신규 후계농업인,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등의 명칭이 존재하는 데, 신규 후계농업인은 병역필, 면제자, 여성으로서 40세 미만자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농창업후계농업인은 병역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자, 면제자, 여성으로 35세미만자 중 농업계 학교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는 5년 미만자로서 영농승계희망자나, 타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졸업자중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거나 영농에 종사한지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약간의 혼란이 있기는 하나, 대체로 졸업자나 졸업후 5년이내나 영농종사후 4년 이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물론 선발의 절차가 존재한다.

전업농업인이라는 용어는 농업기본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조 6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農業發展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農業人으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農地와 農業勞動力을 보유한 農業人"이라고 하였고, 농업인은 농지법 제 2조 제 2호 과 1조 2항에 "農業人"이라 함은 農業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고 규정되어있고, 농지법 시행령 3조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또한 농업·농촌기본법 13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전업농업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으로 규정하였고, 선정은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2조 3항에 따르면 전업농에 대한 정의가 “전업농업인등”이라 함은 농림어업의 경영규모와 기술수준, 투입노동시간 등에 있어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업농업인을 자세하게 규정한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 2 항을 보면 농업이외의 자영업자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영규모와 기술수준을 가진 자이고 전문경영품목이 1개 이상이며, 연간 200일이상 농림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와 비슷한 규정이기도 하나 200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영농규모화 사업에 따르면 지원대상자의 설명에서 쌀 전업농은 2ha이상을 규정으로 제주도와 같이 기타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기준은 밭작물은 식량류 10ha, 채소는 3ha, 과수는 1.5ha이나 감귤은 10ha로 규정되고 있다. 이같은 기준은 모든 지역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대략적인 차이는 있을지라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농업 경영인을 전제함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창업의 규모에서 어느 정도 성장한 자립단계나 선도 단계에 속하는 인력 수준이 전업농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벤처농이라는 용어 역시 창업의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논의되어야 할 용어가 될 것이다. 벤처농업은 벤처기업의 출현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움직임이 농업분야에서 일어나면서 구체화된 용어이다. 김양식(2000)은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업을 창출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해나가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경영형태의 농업으로 정의하였고, 김재호(2000)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농업, 새로운 아이디어로 색다른 분야에 도전하는 사업,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장래의 성공에 도전하는 농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민승규(2000)는 농지, 시설 등의 하드기반 위에 장기간 축적된 노하우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한 것을 벤처형 농업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농림부(2002a)는 기존의 관행적인 농업형태와는 달리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조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경영형태의 농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업을 말하며, 전통농업에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접목한 벤처농업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을

그에 비하여 이동필, 김중선, 전일송은(2002, 14-15) 세가지 유형으로 벤처농업을 구분하였는데, 하나의 유형은 사업체의 형태를 갖추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농림업 및 관련산업분야의 벤처기업, 두 번째 유형은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 아이디어를 가지고 고부가가치 상품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나 관련법에 의하여 인정받지 못한 농업관련사업체, 세 번째 유형은 좋은 아이디어나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업체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농가나 사업자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세 번째 유형은 신지식 농업인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벤처농업의 구분에 따른다면 각 유형은 기업화단계의 수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 인정받지 못한 기업, 기업화가 안된 기초 수준으로 나눌 때, 기초 수준 단계는 창업의 초기 단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신지식농업인이라는 용어는 이용환 외(2000, p.62)와 농림부는(2001a) 지식의 생성, 저장, 활용, 공유를 통해 농업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을 끊임없이 개발, 개선, 혁신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농업, 농촌의 변화를 추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에 있어서 새로운 품종의 개발이나 육종, 재배방법의 개량등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농사를 짓는 유형, 새로운 기계나 기술 등을 개발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의 품질을 향상하는 유형, 특수사료의 개발 및 이를 이용한 기능성 축산물의 개발과 차별적 유통을 하는 유형,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직거래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유형,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식품으로 농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유형, 유희자원을 활용하여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이동필, 김중선, 전일송, 2002, pp.15-16). 이들 외에도 농업인력은 귀농자라는 용어나 농업법인, 선도농업경영체, 농업인, 농업숙련종사자, 농업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등의 용어가 존재하는 것으로 정철영 등(2001, p.6)은 분석하고 있다.

이상의 용어들은 창업농의 범주를 규정할 때 참고되어야 할 부분이다. 앞에서 고찰되었듯이 창업이라는 범주를 학교 졸업후 최초로 농업을 시작하는 사람만을 창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가 전업한 농업인도 창업범주에 포함하는가의 논의이다. 또한 그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규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전업농이나 선도개척농이라는 용어나 신지식농업인, 벤처농 등의 용어는 그 수준이 초보적 수준을 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창업의 수준을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정착하여 농업을 선도하는 입장에 처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벤처농은 초보수준이므로 농업의 형태를 벤처형태로 시작할 수는 있어서 창업농의 유형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이들은 기업화 수준까지 진전된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좀 더 세분화가 필요하다.

나. 창업농 관련 정책의 변화 과정

창업농 제도는 후계농업인 제도를 계승한 것으로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가인구의 노

령화 현상 심화, 농촌임금 상승과 농촌일손의 부족 문제 대두, 특히 농촌청소년 규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농업노동력의 질적 저하 및 영농후계자 부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법을 제정하여 1981년부터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을 실시하였다(김호탁 외, 1993; 장건상, 1997). 농민후계자라는 용어는 농업인 후계자로 개칭되었다가, 다시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후계 농업인으로 개칭되었다. 후계농업인은 취농창업후계농이라는 용어의 등장으로 창업농이라는 새로운 용어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창업농 관련 제도의 변화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창업농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변화 과정

구 분	설 명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법』 제정 (1980. 11.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8년부터 새마을 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원되어 오던 영농후계자 육성자금을 통합 농어민후계자의 정의 :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농어촌 청소년(제2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정 (1990. 4.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민후계자의 정의 : 농림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제4조) 전업농의 정의 : 농림어업의 경영규모의 적정화와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림어업의 경영능력과 의욕이 있는 농업인(개정법률 제3조) 기존의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 농어촌지역 개발기금, 농업기계화 촉진기금, 수산진흥기금 등 4개의 기금을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통합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 (1990.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민후계자의 선정조건 :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농어촌 청소년 중 영농정착 의욕이 강하고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연령 이하의 자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제3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 영어 또는 영림에 종사하고 있는 자 농어촌에 정착할 뜻을 두고 4-H회 활동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의 농업·임업 또는 수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거나 당해 연도에 졸업 예정인 자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훈련기관에서 3개월 이상 전문영농기술훈련을 이수한 자 기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자 농업인후계자에 대한 지원 :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을 융자·지원하며, 농업에 관한 기술·경영교육·농산물의 판매를 알선한다. 그리고, 농업인후계자들이 전업농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제3조 제2항)
『농어촌구조개선 대책 마련』 (199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후계자제도를 도입하고, 우수후계자에 대해서는 후속지원과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틀 마련
『병역법』 개정 (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후계자를 산업기능요원에 포함시킴으로써, 1994년부터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되면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신농정 5개년 계획』 발표 (1993.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과계 고등학교 30개교를 선정하여 영농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중심학교로 육성하고, 국립농과대학을 기능별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지원 계획 수립 농과대학에 농업전문경영자과정 설치

<표 계속>

구 분	실 명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민 후계자를 농업인후계자, 어업인후계자로 구분
『농업·농촌기본법』 (1999. 2. 5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계농업인의 육성 :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계농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제12조) 예비후계자제도의 폐지 원예, 특작, 축산 등의 전업농은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로 흡수·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자금지원체제 구축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정 (1999.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계농업인의 자격 : 농촌에 정착할 뜻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제2조 제1항)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 : 후계농업인에 대하여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농업의 기술 및 경영에 관한 교육 기타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제2조 제2항). 후계농업인의 선정 및 기타 : 후계농업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교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제2조 제3항).
2001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을 신규후계농업인과 취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이원화

한편, 지금까지의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추진방향을 방향성의 전환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7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2>를 살펴보면, 육성사업 추진 초기에는 정착대상자의 발굴 및 기반확보에 큰 비중이 두어 추진되었고,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는 선발대상 지역 및 지원대상의 확대, 품목별 균형있는 후계자 육성, 후계자에 대한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가 주요한 추진방향이 되었으며, 현재는 농업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북한이탈주민, 여성 등에 대한 농업정착 유도, 농업관련 창업지원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창업농 육성사업의 추진방향 변화

기간	추진 방향
1981 ~ 19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욕과 능력이 있는 정착대상자의 발굴 자립정착기반 확립을 위한 충분한 자금지원 주곡농업과 복합영농 유도 사전교육과 현지 기술지도의 강화 주기적인 경영진단과 사업평가 실시 후계자 생산물의 농·수협 판매사업과 연계 안정된 영농어 소득의 증대와 영농정착

<표 계속>

기간	추진 방향
1984 ~ 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농어촌 건설을 위한 인적 기반확보와 농어촌 정착 유도 : 농어민후계자의 정예화 및 새마을 운동과 연계육성, 농어촌 사회계발의 선도자 역할 및 농어민 지위향상을 위한 협동주체 • 선진과학영농(어) 실천의 기수로 육성 : 영농설계에 의한 과학영농 체제 구축 및 신기술, 신품종 보급의 거점으로 활용 • 사후관리 철저 : 정기적인 기술지도 실시로 자질 향상, 안정적 소득향상으로 완전정착 유도, 기술·유통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경쟁력 제고, 경영진단과 사후평가 실시, 선임후계자에 의한 후임후계자 지도체제 구축
1990 ~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민후계자 선발대상 지역 및 지원대상 확대 • 영농어 정착지원금을 확대하되 개인별 영농어 사업계획을 기초로 사업자금 지원 • 농어민후계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영지도·사후관리 • 미혼여성의 농촌정착 유도 • 품목별 후계자 선정
1996 ~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 농수산계 학교출신자 및 기술자격증 소지자의 조기 영농어 정착 유도 • 품목별 균형있는 농어업 후계인력 육성 • 농어민후계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 • 미혼여성의 농어촌 정착 유도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 농수산계 학교출신자 및 기술자격증 소지자의 조기 영농어업 정착 유도 • 품목별 균형있는 농어업 후계인력 육성 • 농어민후계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 • 미혼여성의 농어촌 정착 유도 • 북한 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에 대한 영농정착 지원
1999 ~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촌 농업인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과 농업계학교 졸업자 등의 창업자금 지원을 통하여 미래 농업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 • 정규 농업계 학교출신자 및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초기 영농정착 유도 및 영농기반 조성 • 미혼여성의 농촌 정착 유도 • 북한 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에 대한 영농정착지원 • 후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
2001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촌 농업인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과 농업계학교 졸업자 등의 창업자금 지원을 통하여 미래 농업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 • 타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졸업자 중 농촌정착을 원하는 자에 대한 농촌정착 유도 • 여성의 농촌정착 유도 • 북한 이탈 주민 중 보호대상자에 대한 영농정착 지원 • 후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

2. 창업농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은 크게 신규후계농업인 육성사업과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취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는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의 개념과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의 운영 현황

1)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의 개요

□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의 개요

구분	내 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경영개선 및 신규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에 기여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후계농업인의 육성)
설립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노령화·부녀화로 농업인력이 점차 감소하여 젊고 유능한 전문 후계농업인력 육성 필요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후계농업인 : 사업시행년도 1.1일 현재 40세미만인 자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와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 심의회 심의를 거쳐 후계농업인 육성대상자로 선발·확정한 자 (단, 농정심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군 농정심의회에 준하는 별도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 • 취농창업후계농업인 : 사업시행년도 1.1일 현재 35세미만인 자 중 농업계 학교 졸업(졸업예정자 포함)직후 영농 승계를 원하는 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중인 자 중에서 영농 승계를 원하는 자와 타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졸업자 중 농촌 정착을 원하거나 농촌에 정착한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를 특별·광역 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후계농업인 육성대상자로 선발·확정한 자 (단, 농정심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군 농정 심의회에 준하는 별도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후계농업인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50백만원까지 차등 지원 • 취농창업후계농업인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100백만원까지 차등 지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에 대해서는 시·군의 예산형태에 따라 지원금액을 20백만원까지 하향조정 가능)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용자기간 : 국고용자 100%, 5년거치 10년균분상환(15년) - 금리 : 연리 4.0% • 용자 취급기관 : 농협중앙회(경종 농업분야 : 농협, 축산분야 : 축협) ※ 용자취급기관은 용자금 지급 및 회수와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 지원 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선조합으로 하여금 용자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사업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컨설팅 자부담금 지원 : 후계농업인이 원할 경우 농업경영컨설팅 자부담금 중 60%(사업비의 30%) 이내인 자금 • 경종농업분야 : 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축산분야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자료 : 농림부(2002). 200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림부.

2) 후계농업인 선정 및 자금지원 현황

□ 최근 6년간 후계농업인 선정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1997년 8,526명에서 2002년에는 2,500명이 선정되어 매년 후계농업인 선정자가 매우 감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5세부터 40세까지가 계속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세 ~ 24세의 비율(1997년 17.9%에서 2002년 27.8%)과 19세 이하의 비율(1997년 0.1%에서 2002년 0.4%)이 증가한 반면, 25세 ~ 34세의 후계농업인 선정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편,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2001년부터 신규후계농업인과 취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분리·시행되었는데, 2001년에는 신규후계농업인 86.9%, 취농창업후계농업인 13.1%의 비율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각각 57.0%, 43.0%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 변화는 농림부의 후계농업인 정책이 향후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선정·지원을 중심으로 계속 변화될 것임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표 4〉 연도별 후계농업인 선정 현황

연도	19세이하	20~24	25~29	30~34	35~40	계	
1997년	7 (0.1)	1,529 (17.9)	1,813 (21.3)	2,509 (29.4)	2,668 (31.3)	8,526 (100.0)	
1998년	-	928 (11.8)	1,573 (20.0)	2,323 (29.5)	3,038 (38.7)	7,862 (100.0)	
1999년	1 (0.0)	536 (11.1)	773 (16.1)	1,262 (26.2)	2,247 (46.6)	4,819 (100.0)	
2000년	-	478 (10.2)	921 (19.7)	1,213 (26.0)	2,062 (44.1)	4,674 (100.0)	
2001년	신규 후계농업인	-	189 (5.8)	494 (15.1)	823 (25.2)	1,334 (40.8)	2,840 (86.9)
	취농창업 후계농업인	1 (0.0)	149 (4.5)	123 (3.8)	157 (4.8)	-	430 (13.1)
	소 계	1 (0.0)	338 (10.3)	617 (18.9)	980 (30.0)	1,334 (40.8)	3,270 (100.0)
2002년	신규 후계농업인	-	58 (2.3)	168 (6.7)	394 (15.8)	805 (32.2)	1,425 (57.0)
	취농창업 후계농업인	9 (0.4)	636 (25.5)	199 (7.9)	231 (9.2)	-	1,075 (43.0)
	소 계	9 (0.4)	694 (27.8)	367 (14.6)	625 (25.0)	805 (32.2)	2,500 (100.0)

□ 이러한 후계농업인 선정과 함께, 후계농업인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위

에 제시된 표와 함께 살펴보면, 1997년에는 61.7%의 선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998년 68.6%, 1999년 46.3%, 2000년 45.3%, 2001년 54.6%, 2002년 48.7%로 1999년부터는 대략 50% 내외의 선정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유형별로는, 취농창업후계농업인이 2001년과 2002년 각각 94.5%, 94.8%의 높은 선정률을 보이는 반면, 신규후계농업인은 각각 51.3%, 35.6%로 비교적 낮은 선정률을 보인다.

〈표 5〉 연도별 후계농업인 신청 현황

연도		19세이하	20~24	25~29	30~34	35~40	계
1997년		16 (0.1)	2,063 (14.9)	3,401 (24.6)	4,327 (31.3)	4,015 (29.0)	13,822 (100.0)
1998년		5 (0.0)	1,220 (10.6)	2,656 (23.2)	3,500 (30.5)	4,088 (35.6)	11,469 (100.0)
1999년		2 (0.0)	916 (8.8)	2,093 (20.1)	3,155 (30.3)	4,253 (40.8)	10,419 (100.0)
2000년		5 (0.0)	784 (7.6)	2,445 (23.7)	2,961 (28.7)	4,122 (40.0)	10,317 (100.0)
2001년	신규 후계농업인	-	357 (6.0)	1,177 (19.6)	1,664 (27.8)	2,338 (39.0)	5,536 (92.4)
	취농창업 후계농업인	1 (0.0)	153 (2.5)	129 (2.2)	172 (2.8)	-	455 (7.6)
	소계	1 (0.0)	510 (8.5)	1,306 (21.8)	1,836 (30.6)	2,338 (39.0)	5,991 (100.0)
2002년	신규 후계농업인	3 (0.1)	188 (3.7)	686 (13.4)	1,279 (24.9)	1,844 (35.9)	4,000 (77.9)
	취농창업 후계농업인	10 (0.2)	669 (13.0)	208 (4.0)	247 (4.8)	-	1,134 (22.1)
	소계	13 (0.3)	857 (16.7)	894 (17.4)	1,526 (29.7)	1,844 (35.9)	5,134 (100.0)

□ 후계자 육성분야를 경종분야와 축산분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초기에는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육성하다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는 경종분야를 중심으로, 그러다가 다시 최근에는 경종분야와 축산분야를 비슷한 비율로 육성하여 왔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도작과 복합영농의 분야는 80년대 중반~80년대 후반에, 원예분야는 90년대에 후계자 선정인원의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축산분야에서는 한우에 관련된 후계자 육성사업이 주종을 이루었는데, 후계자 사업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축산분야의 한우 이외의 영역에서는 많은 규모의 육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6〉 분야별 후계농업인 육성 현황

단위 : 명, %

연도	경 중 농업 분야						축 산 분야				합 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낙농	기타	소계	
1981	73 (4.07)	- (0.00)	213 (11.87)	29 (1.62)	34 (1.89)	349 (19.44)	1,369 (76.27)	20 (1.11)	57 (3.18)	1,446 (80.56)	1,795 (100.00)
1982	473 (25.62)	- (0.00)	347 (18.80)	67 (3.63)	92 (4.98)	979 (53.03)	685 (37.11)	116 (6.28)	66 (3.58)	867 (46.97)	1,846 (100.00)
1983	505 (27.95)	182 (10.07)	215 (11.90)	17 (0.94)	50 (2.77)	969 (53.62)	623 (34.48)	164 (9.08)	51 (2.82)	838 (46.38)	1,807 (100.00)
1984	1,130 (25.22)	1,132 (25.27)	257 (5.74)	20 (0.45)	101 (2.25)	2,640 (58.93)	1,376 (30.71)	424 (9.46)	40 (0.89)	1,840 (41.07)	4,480 (100.00)
1985	1,921 (21.29)	2,929 (32.47)	561 (6.22)	73 (0.81)	223 (2.47)	5,707 (63.26)	2,250 (24.94)	991 (10.99)	73 (0.81)	3,314 (36.74)	9,021 (100.00)
1986	2,532 (27.94)	3,756 (41.44)	653 (7.21)	90 (0.99)	286 (3.16)	7,317 (80.73)	1,036 (11.43)	561 (6.19)	149 (1.64)	1,746 (19.27)	9,063 (100.00)
1987	3,227 (42.00)	2,640 (34.36)	403 (5.24)	219 (2.85)	186 (2.42)	6,675 (86.87)	439 (5.71)	392 (5.10)	178 (2.32)	1,009 (13.13)	7,684 (100.00)
1988	1,677 (46.58)	1,118 (31.06)	176 (4.89)	236 (6.56)	57 (1.58)	3,264 (90.67)	136 (3.78)	145 (4.03)	55 (1.53)	336 (9.33)	3,600 (100.00)
1989	794 (42.92)	461 (24.92)	85 (4.59)	151 (8.16)	32 (1.73)	1,523 (82.32)	152 (8.22)	110 (5.95)	65 (3.51)	327 (17.68)	1,850 (100.00)
1990	634 (34.27)	623 (33.68)	139 (7.51)	99 (5.35)	54 (2.92)	1,549 (83.73)	174 (9.41)	74 (4.00)	53 (2.86)	301 (16.27)	1,850 (100.00)
1991	186 (13.78)	341 (25.26)	179 (13.26)	88 (6.52)	113 (8.37)	907 (67.19)	245 (18.15)	79 (5.85)	119 (8.81)	443 (32.81)	1,350 (100.00)
1992	1,373 (15.26)	1,098 (12.20)	1,430 (15.89)	525 (5.83)	409 (4.54)	4,835 (53.72)	2,590 (28.78)	713 (7.92)	862 (9.58)	4,165 (46.28)	9,000 (100.00)
1993	1,195 (13.28)	1,074 (11.93)	1,438 (15.98)	464 (5.16)	342 (3.80)	4,513 (50.14)	2,932 (32.58)	745 (8.28)	810 (9.00)	4,487 (49.86)	9,000 (100.00)
1994	450 (5.40)	833 (9.99)	1,606 (19.26)	501 (6.01)	417 (5.00)	3,807 (45.65)	3,067 (36.77)	685 (8.21)	781 (9.36)	4,533 (54.35)	8,340 (100.00)
1995	490 (5.04)	823 (8.46)	1,921 (19.74)	657 (6.75)	484 (4.97)	4,375 (44.96)	3,890 (39.98)	718 (7.38)	747 (7.68)	5,355 (55.04)	9,730 (100.00)
1996	473 (5.75)	750 (9.12)	1,466 (17.82)	545 (6.62)	385 (4.68)	3,619 (43.99)	3,428 (41.67)	466 (5.66)	714 (8.68)	4,608 (56.01)	8,227 (100.00)
1997	784 (9.20)	831 (9.75)	1,398 (16.40)	468 (5.49)	379 (4.45)	3,860 (45.27)	3,603 (42.26)	475 (5.57)	588 (6.90)	4,666 (54.73)	8,526 (100.00)
1998	1,481 (18.84)	1,049 (13.34)	1,360 (17.30)	547 (6.96)	364 (4.63)	4,801 (61.07)	2,193 (27.89)	337 (4.29)	531 (6.75)	3,061 (38.93)	7,862 (100.00)
1999	1,140 (23.66)	787 (16.33)	858 (17.80)	408 (8.47)	336 (6.97)	3,529 (73.23)	872 (18.10)	155 (3.22)	263 (5.46)	1,290 (26.77)	4,819 (100.00)
2000	1,326 (28.36)	797 (17.05)	813 (17.39)	376 (8.04)	303 (6.48)	3,615 (77.34)	687 (14.70)	124 (2.65)	248 (5.31)	1,059 (22.66)	4,674 (100.00)

자료 : 농림부(1997). '97년도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사업현황. 경기: 농림부. pp.6-7.
 농림부(1998). '98년도 인력육성 현황. 경기: 농림부 농업정책국. p.2.
 농촌진흥청(2001b). 후계농업인 사업추진 실적. 내부자료.

□ 연도별 후계농업인의 선정 및 자금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1981년에 1인 당 평균 419만원씩 1,795명의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기 시작한 뒤, 2000년에 4,674명의 후계농업인까지 지난 20여년 동안 약 11만명의 후계농업인을 육성하였다. 시계열에 따른 육성 인원을 보면 85년~87년과 92년 이후에 연간 8,000여명의 후계농업인을 선

정·육성하였으나, 그 이외의 시기에는 2,000여명의 후계농업인만을 선발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1인당 평균지원액은 81년에 419만원에서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7〉 후계농업인 선정 및 자금지원 추이

연 도	육성인원(명)	지원금액(백만원)	1인당 평균지원액(백만원)
1981	1,795	7,517	4.19
1982	1,846	11,718	6.35
1983	1,807	12,526	6.93
1984	4,480	31,324	6.99
1985	9,021	63,151	7.00
1986	9,063	63,599	7.02
1987	7,684	63,423	8.25
1988	3,600	31,620	8.78
1989	1,850	17,932	9.69
1990	1,850	19,923	10.77
1991	1,350	17,550	13.00
1992	9,000	140,000	15.56
1993	9,000	150,000	16.67
1994	8,340	138,000	16.55
1995	9,730	185,000	19.01
1996	8,227	181,275	22.03
1997	8,526	227,072	26.63
1998	7,862	240,000	30.53
1999	4,819	150,000	31.13
2000	4,674	150,000	32.09
2001	3,270	110,000	33.64
2002	2,500	100,000	40.00
2003(안)	2,000	96,000	48.00
합계	122,294	2,297,630	18.78

자료 : 농림부(1997). '97년도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사업현황. 경기: 농림부. p.6.

농림부(1998). '98년도 인력육성 현황. 경기: 농림부 농업정책국. p.1.

농림부 각 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3) 후계농업인의 선정 및 평가 방법

□ 후계농업인의 선정은 다음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점수가 400점 이상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후계농업인을 선정할 때,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① 농림사업시행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농업계 학교출신자 우선 선발 등)를 제외하고는 평가 점수가 높은 자 순(다만,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의 장(이하 "시장·군수 등"이라 한다)은 지역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품목간 균형있게 후계농업인이 선

발될 수 있도록 조정 가능

- ②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농업계 학교출신자, 관련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여성 순
- ③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 졸업자로서 학교장의 추천과 대상자 선정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점수가 400점 이상인 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우선 선정 (특수전문대 출신 우선선발 원칙)

□ 2001년부터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신규후계농업인과 취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이원화되었고, 신규후계농업인은 축소하고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의 자격은 ① 농업계 학교를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중 영농승계를 원하는 자 또는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예정자 포함), ②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자중 영농승계를 원하는 자 또는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예정자 포함), ③ 타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졸업자 중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자 또는 영농에 종사한지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다.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은 5일간의 공통교육 및 3주 이상의 현장실습교육 이수(단, 신청자가 제출한 영농사업계획서상의 농업분야와 관련된 농업계 학교(대학, 전문대, 고교 등) 졸업자 및 영농사업계획서상의 농업분야에 최근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는 실습교육을 면제할 수 있음)하여야 한다.

□ 신규후계농업인 선정 기준에 따른 평가방법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표 8〉 신규후계농업인 평가방법 및 배점

구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고
영농정착의욕 (100점)	○ 영농 정착의욕(100점) - 상 : 100점(신청자의 20%) - 중 : 70점(" 60%) - 하 : 40점(" 20%)	-
학력 및 영농교육훈련 (130점)	○ 학 력(80점) (남자의 경우) - 농업계대학, 한국농업전문학 교, 여주농 업 전문교육원: 80점 -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수료자, 농업계 전문대학 및 자영농과(자영농고, 농고중 자영농과) 졸업자 : 70 점 - 일반대학(4년제) 및 농업 계 고등학교 졸업자 : 60점 - 기타 학교졸업자 : 40점 * 사업시행 년도 졸업 예정자 는 졸업자로 인정 (여자의 경우) - 농대, 농전, 자영농 과졸업자 : 80점 - 일반대학, 농고졸업자 : 70 점 - 기타 학교졸업자 : 60점 * 사업시행 년도 졸업 예정자 는 졸업자로 인정 ○ 교육훈련실적(통산일수) : 50 점 (남자의 경우) - 3개월이상 : 50점 - 2개월이상 : 40점 - 1개월이상 : 30점 - 15일이상 : 20점 - 7일이상 : 10점 (여자의 경우) - 2개월이상 : 50점 - 1개월 이상 : 40점 - 15일이상 : 30점 - 10일이상 : 20점 - 5일이상 : 10점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기관에서 이수한 실적 에 한함 - 농림부가 인정한 교육기관 - 농촌진흥청, 각 시· 도, 농· 축협 의 훈 련기관 - 농진청장이 인정한 연수기관, 농업기술센 터 및 동 연수기관 - 대학 또는 전문대 등 농업계 학교부설 영 농훈련기관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 전문교육원 (재학중의 장기 현장실습기간 포함)
영농경력 (100점)	○ 영농 경력(영농 4-H 경력포함) (남자의 경우) - 6년미만은 50점으로하되, 6년이상 1년단위로 10점씩가산 · 1년미만 0점 · 1년이상~ 6년미만 50점 · 6년이상~7년미만 60점 · 7년이상~ 8년미만 70점 · 8년이상~9년미만 80점 · 9년이상~10년미만 90점 · 10년이상 100점 (여자의 경우) · 1년미만 0점 · 1년이상~ 4년미만 50점 · 4년이상~5년미만 60점 · 5년이상~ 6년미만 70점 · 6년이상~7년미만 80점 · 7년이상~ 8년미만 90점 · 8년이상 100점 - 한국농업 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 졸업자 경력평가에 재학기 간을 1년단위로 10점씩 가산, 4-H경력은 1년 단위로 5점씩 가산하여 평가	○ 농업계 학교(농업계 학과 포함) 졸업자 및 재학중인 자는 재학기간을 영농경력으로 인 정 ○ 여성에 대하여는 혼인 전 영농종사경력도 인정 ○ 농업 관련분야의 교사, 지도사, 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은 영농경력으로 인정 *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훈련기간 포함 * 영농4-H경력은 농업에 종사하기 전의 경 력임 ○ 군근무경력(보충역 포함)은 영농경력으로 간주하되 1년 단위로 5점씩 가산(1년 미만 은 5점)
영농기반 (170점)	○ 영농기반(170점) (남자의 경우) - 2.0ha이상 : 170점 - 1.5ha~2.0ha미만 : 150점 - 1.0ha~1.5ha미만 : 130점 - 0.5ha~1.0ha미만 : 90점 - 0.2ha~0.5ha미만 : 50점 (여자의 경우) - 1.5ha이상 : 170점 - 1.0ha~1.5ha미만 : 150점 - 0.5ha~1.0ha미만 : 120점 - 0.2ha~0.5ha미만 : 80점 < 공통요건 > * 본인 소유 및 상속 가능한 직계 존속 보유분은 100% 영농기반으로 인정 * 서면계약한 0.5ha이상의 임차 농지는 50%를 영농기반으로 인정(단, 5년이상 장기계약 한 임차농지의 경우 70%까지 인정)	○ 각 사업작목별 평가기준은 별첨 세부 평가 기준표를 참고하여 평가(별표 1) * 농경지는 축산분야의 영농기반으로도 인정 * 직계존속이 임차한 임차 농지도 본인이 임 차한 것으로 인정

〈표 계속〉

구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고
영농사업계획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사업계획(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지역 및 재배 기술상의 적합성 : 40점 -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 30점 - 생산 및 판매계획 : 20점 - 사업분야에 대한 타농가 재배 작목과의 작목집단화(조화) 가능성 : 10점 ※ 평가서에 평가한 점수가 영농사업계획 점수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사업계획을 받아 평가(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평가시 4개 항목에 대한 타당성, 치밀성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각 항목별 점수는 만점시 점수) * 사업계획서 작성시 해당분야 지도공무원 등의 조언 또는 민간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을 받은 후 서명을 받은 경우 인정
○ 가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영농 사업 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여성(영농세대주)에 대하여는 총점(6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각각 20점 가산 ○ 환경친화적 농업을 2년이상 계속하거나 토착기술을 현대화하여 자원 절약형 농업을 2년이상 계속 하는 자에 대하여는 총점(6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20점 가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총점(6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 추천은 영농기반조성이 가능한 자에 한함 ○ 일반 농업계 학교장 추천은 학업성적이 전체의 2/3이내로 영농기반조성이 가능한 학생에 한함

□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선정 기준에 따른 평가방법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표 9〉 취농창업후계농업인 평가방법 및 배점

구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고
영농정착의욕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 정착의욕(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 100점(신청자의 20%) - 중 : 85점(" 60%) - 하 : 70점(" 20%)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2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계 대학,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 : 100점 - 일반대학(4년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수료자, 농업계 전문대학 및 자영농과(자영농고, 농고중 자영농과) 졸업자 : 90점 - 일반 전문대학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 80점 - 기타 학교졸업자 : 70점 * 사업시행 년도 졸업 예정자는 졸업자로 인정 ○ 교육훈련실적(통산일수) :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이상 : 100점 - 3개월이상 : 85점 - 2개월이상 : 70점 - 1개월이상 : 60점 - 15일이상 : 40점 - 7일이상 : 20점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가 인정한 교육기관 - 농촌진흥청, 각 시·도, 농·축협이 훈련기관 - 농진청장이 인정한 연수기관, 농업기술센터 및 동 연수기관 - 대학 또는 전문대 등 농업계 학교부설 영농훈련기관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 전문교육원 (재학중의 장기 현장실습기간 포함)
영농사업계획 (2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사업계획(2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지역 및 재배 기술상의 적합성 : 80점 -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 60점 - 생산 및 판매계획 : 40점 - 사업분야에 대한 타농가 재배 작목과의 작목집단화(조화) 가능성 : 20점 ※ 평가서에 평가한 점수가 영농사업계획 점수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사업계획을 받아 평가 (별지 제 13호서식에 의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평가시 4개 항목에 대한 타당성, 치밀성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각 항목별 점수는 만점 점수) * 사업계획서 작성시 해당분야 지도공무원 등의 조언 또는 민간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을 받은 후 서명을 받은 경우 인정
○ 가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 사업 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에 대하여는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20점 가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20점 가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종사(1년이상)한 사실을 입증한 자는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각각 20점 가산 	

4) 후계농업인 선정 절차

□ 후계농업인의 선정은 ① 대상자 심의·추천, ② 대상자 순위 결정, ③ 대상자 확정의 3 단계를 거치게 된다.

- 대상자 심의·추천 : 읍·면, 농업기술센터(이하 "읍·면 등"이라 한다)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의·추천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읍·면 등의 장은 읍·면 등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영농정착의욕,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영농경력, 영농기반 등을 평가기준에 의하여 신규후계자와 취농창업후계자로 구분하여 검토·평가하고 개인별 신용상태 및 사업자금 융자 적격여부에 대해서 심사하며, 적격자에 대해서만 관련서류(신청서류등)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추천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적격자만을 시장·군수 등에게 추천한다(적격자 : 신규후계농업인 360점 이상, 취농창업후계농업인 300점 이상).
- 대상자 순위 결정 : 시장·군수 등은 읍·면 등의 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전년도 2월말까지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되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 결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한다. 첫째, 시장·군수 등은 후계농업인 선발에 있어 지역 농업여건과 품목별 전업농가 육성대상자수·농가호수 등을 감안하여 품목간 균형있게 후계농업인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한다(이 경우 품목간 순위부여 등 객관적 근거 마련). 둘째,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하여 가진 자에 대하여는 후계농업인 추천 선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다만, 농업회사법인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는 농업종사자로 봄).
 - 신규후계농업인 : 1) 시장·군수 등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에 대하여는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지원금액만 결정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함. 2)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성농업전문학교 졸업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후계농업인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함. 3) 시장·군수 등은 시·군·구별 선정예정인원의 20%수준내외를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농·공(종)고 자영농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순수 농업전문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각 대학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수료자에 배정하여 동학교 출신자를 신규후계농업인으로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함. 단, 상기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가 20%에 미달할 경우 일반 농대 및 농업전문대, 농고 출신으로 충원(농업계학교 출신 우선선발 원칙)³⁾. 4) 사업시행년도 이전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농·축산경영자금, 귀농자창업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중인자와 사업시행년도에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후계농업인 선정대상에서 제외

3)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9) : 여주자영농고, 흥천농고, 보은농공고, 공주농고, 김제자영고, 강진농고, 안동농고, 경남자영고, 서귀포산업고

- 대상자 확정 : 시장·군수 등은 시·군·구별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액이 확정되면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한다. 첫째, 부부가 모두 후계농업인 지원자금을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부중 한사람에게만 지원이 가능하다(다만, 부부의 주사업품목이 각각 다를 경우 부부 모두에게 사업자금 지원은 가능하나 신청자수 등을 고려하여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지원여부 결정)

- 신규후계농업인 : 1) 시장·군수 등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자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 2) 시장·군수 등은 특수전문대 출신 우선선발 원칙에 따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신규후계농업인으로 우선 확정. 3) 시장·군수 등은 시·군별 선정예정인원의 20%범위내에서 평가점수가 360점이상인 여성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취농창업후계농업인 : 사업시행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별도 평가절차 없이 지원금액만 결정

□ 후계농업인 선정 시 우선 순위 :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 신규후계농업인 : 여성,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농업계학교 출신자, 관련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순
- 취농창업후계농업인 : 전 세대 이주가 확인된 자를 취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우선 선정

5) 후계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 시·도지사과 시장·군수 등은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경영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확보·지원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신규후계농업인의 경우 공통교육 및 영농기술교육 이수자, 취농창업후계농업인의 경우 현장실습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확인)서 발급사실을 읍자 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지원자금을 읍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신규후계농업인 : 신규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시장 및 군수 등은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후계농업인으로 성장·발전함에 필요한 각종 지원 및 행정 절차 등에 관한 공통교육과 영농정착에 필요한 분야별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공통교육은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전원이 이수하여야 하며, 영농기술교육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면제될 수 있다.

- ① 영농사업계획 상의 분야와 관련된 농업계 학교(대학, 전문대학, 고교 등) 졸업자

② 최근 2년간 영농사업계획상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표 10〉 신규후계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구분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대상
공통교육	5일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사업시행년도에 선발된 후계농업인
영농기술교육	1주일 이상	농업계 학교, 농업기술센터	"

주 : 영농기술교육기관은 현지여건, 후계농업인의 희망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 등이 결정함.

- 취농창업후계농업인 : 시장·군수는 취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5일간의 공통교육 및 3주 이상의 현장실습교육(정보화교육 포함)을 이수하도록 한다. 단, 신청자가 제출한 영농사업계획서상의 농업분야와 관련된 농업계학교(대학, 전문대, 고교 등) 졸업자 및 영농사업계획서상의 농업분야에 최근 2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는 현장실습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6) 후계농업인에 대한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 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 년도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년도까지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되며,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자로서 사업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후계농업인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연도부터 1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 시장·군수 등은 사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자금이 사업계획의 타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 등은 후계농업인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 비치하고 후계농업인 선정된지 3년 이내인 자는 매년, 3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격년제로 농·축협 등 융자취급기관과 매년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영농상담 및 영농 기술교육을 실시한다(영농종사 여부는 지속적으로 확인).
 -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경영장부를 작성하여 매년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익년 1월말)해야 하며, 시장·군수 등은 경영일지를 분석하여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영농상담 및 영농기술교육 실시
 - 시장·군수 등은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자금지원후 3년이 도래되는 연도에 취농창업후계

농업인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 시장·군수 등은 취농창업후계농업인의 영농기반 확보(영농승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사업의 운영 현황

1)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사업의 개요

□ 2003년도부터 개편되어 실시되는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육성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사업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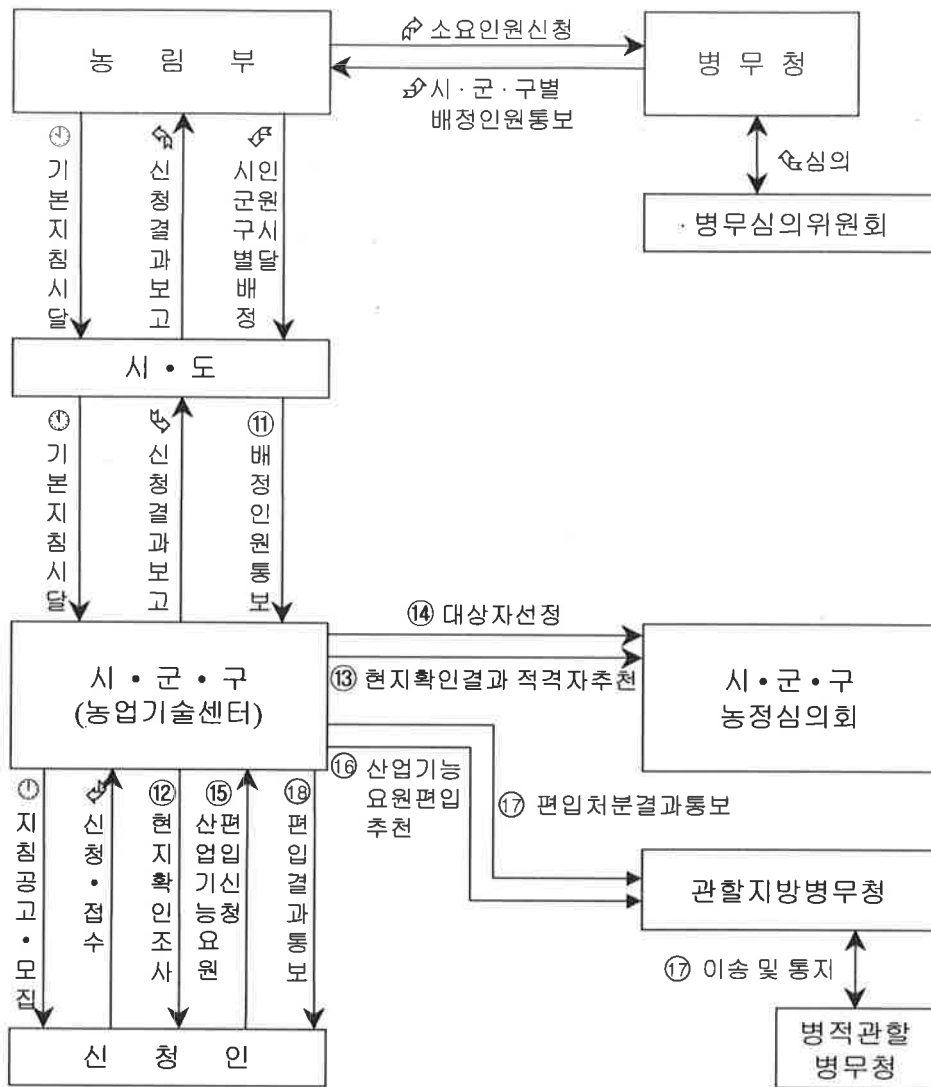
구분	내 용
목적	• 군소요에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중 영농정착의욕이 높은 자를 농업에 종사토록 함으로써 농촌인력난 해소 및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함
근거법령	• 병역법 제36조 및 제38조, 동법시행령 제81조
추진방향	•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연계하여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젊고 우수한 인력의 조기 농촌 정착 유도 •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영농기술 및 정신교육강화로 농촌정착의욕 고취
용 어	• 산업기능요원 :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6조 및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 공익근무요원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신청자격	• 농림사업시행지침상의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또는 다음연도 취농창업 후계농업인 대상자 신청을 한 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03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단,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자와 휴학중인 자는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을 신청할 수 없음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자와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신청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시 정한 기한
신청기관	• 영농정착지역 또는 정착예정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구비서류	•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1부. • 영농사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의무종사기간	• 현역 입영 대상자 : 36개월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 28개월

자료 : 농림부(2002b). 2003년도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사업실시요령.

2)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사업의 추진체계

〈표 12〉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사업기관별 추진업무

기 관 별		추진업무
중앙행정기관	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기본계획수립 시달 ○ 시·도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인원 협의(병무청) 및 시달 ○ 소요예산의 확보 및 총괄 감독
	병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능요원 업무의 총괄 ○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의 연도별, 시·군·구별 편입대상인원 배정
	농촌진흥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관련 업무 협조 ○ 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도단위의 작목별 전문 교육계획 수립 및 시달
지방자치단체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구역내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관련 업무 총괄 ○ 연도별 시·군·구별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인원 신청 및 시달 ○ 관할구역내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에 대한 지도·감독 협조(대 병무청) ○ 산업기능요원 업무와 관련된 예산 확보 및 소요예산의 시·군·구별 배정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구역내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관련 업무 총괄 ○ 관할구역내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모집공고 및 연간 편입대상인원의 신청 ○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및 선발결과 통보 ○ 산업기능요원 편입추천 및 편입결과통보 ○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에 대한 사후관리 총괄 ○ 산업기능요원업무와 관련된 예산확보 및 자금의 집행 ○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신청서 접수 및 편입 대상인원 관리 ○ 신청자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평가 및 적격자 편입원서 제출 ○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선발·편입결과 개별 통지 ○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교육 등 사후관리



(그림 1)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사업 추진 체계

3)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의 선정 현황

□ 1994년의 경우, 총 3,048명이 배정되어 2,832명이 선발되었고, 최종적으로 2,807명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였는데,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1년 현재, 596명 배정에 650명 선정, 639명 복무로 나타나고 있다. 특이한 점은, 1999년 이후에는 연초에 배정되어 있던 인원보다 최종 선정된 인원이 더 많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점은 전반적인 농촌 기피 현상으로 인한 지원률의 급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 13〉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의 선정 추이

연도별	배정인원	선정인원	편입인원	복무중인원	복무완료인원
'94	3,048	2,832	2,807	-	2,633
'95	1,708	1,558	1,527	-	1,406
'96	1,769	1,139	1,104	-	1,025
'97	1,628	1,129	1,098	-	1,038
'98	1,185	835	821	3	780
'99	571	722	709	550	130
'00	638	754	747	712	4
'01	596	650	639	615	-
합 계	11,143	9619	9,452	1,880	7,016

주 : '99년 이후 배정인원은 현역대상자만 포함

□ 한편,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인원 중 사망이나 신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간에 탈락 또는 포기한 사람은 1994년 총 174명으로 전체 편입인원의 6.2%에서, 2001년 3.8%로 그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선정된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초기보다 사후관리가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편입취소사유에서 자진포기와 무단이탈이 여전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아직 사후관리가 미흡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14〉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사유

연도별	편입인원	편입자중 사고자	편입취소사유					
			사망	신병	자진포기	전업	무단이탈	기타
'94	2,807	174	29	30	75	2	23	15
'95	1,527	121	18	16	51	3	19	14
'96	1,104	79	9	14	32	2	13	9
'97	1,098	60	8	9	18	4	10	11
'98	821	38	4	1	11	1	7	14
'99	709	29	6	5	5	-	6	7
'00	747	31	4	3	15	-	3	6
'01	639	24	2	3	7	1	5	6
합 계	9,452	556	80	81	214	13	86	82

□ 2001년 현재,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의 시도별 배정 및 선정 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

이 전남, 충남, 전북, 경북, 경남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비율은 지역별 농업인력의 비율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5〉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의 시도별 배정 및 선정 현황

시도별	배정인원	선정인원	편입인원	복무중인원	복무완료인원
서울	-	-	-	-	-
부산	44	40	40	11	29
대구	23	23	23	3	20
인천	75	63	63	8	50
광주	25	16	16	3	12
대전	5	5	5	1	4
울산	45	43	43	10	31
경기	971	806	794	185	557
강원	555	494	481	76	377
충북	588	481	476	104	343
충남	2,186	1,882	1,840	335	1,388
전북	1,549	1,307	1,297	248	963
전남	2,189	2,065	1,995	448	1,437
경북	1,530	1,296	1,290	269	952
경남	1,261	1,008	1,001	154	793
제주	97	90	88	25	60
합계	11,143	9,619	9,452	1,880	7,016

4)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의 선정 및 평가 방법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의 선정 기준 및 평가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6〉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의 선정 기준 및 평가방법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영농정착 의욕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정착의욕(50점) - 상 : 50점(신청자의 20%) - 중 : 40점(신청자의 60%) - 하 : 30점(신청자의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영농실적, 복무 중 영농충실성, 복무 후 영농정착 가능성을 토대로 평가
학력 및 영 농교육훈련 (18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80점) - 농업계 대학, 한국농업전문학교 : 80점 - 여주농업전문교육원, 농업계 전문대학 및 자영농과(자영농고, 농고중 자영농과) 졸업자 : 70점 - 일반대학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 60점 - 기타 학교졸업자 : 40점 *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년도 졸업예정자는 졸업자로 인정 • 교육훈련 실적(통산일수)(100점) - 2개월 이상 : 100점 - 1개월 이상 : 70점 - 15일 이상 : 40점 - 7일 이상 : 20점 - 3일 이상 : 10점 * 단위가간이 2일 이상인 경우만 통산 일수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기관은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 - 농촌진흥청, 각 시도, 농·축협이 훈련기관 -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한 연수기관 - 대학 또는 전문대 등 농업계 학교 부설 영농훈련기관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 (재학중의 장기현장 실습기간 포함)
영농경력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 경력(영농 4-H 경력포함)(100점) - 1년 단위로 20점씩 가산 (1년 미만은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계 학교(농업계 학교 포함)졸업자 및 재학 중인 자는 재학기간을 영농 경력으로 인정
영농기반 (17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기반(170점) - 2.0ha이상 : 170점 - 1.5ha~2.0ha미만 : 150점 - 1.0ha~1.5ha미만 : 130점 - 0.5ha~1.0ha미만 : 90점 - 0.2ha~0.5ha미만 : 50점 * 본인·배우자 소유 및 상속 가능한 직계존속 보유분은 100%영농기반으로 인정 * 서면 계약한 임차농지(0.5ha 이상의 임차농지)는 50%를 영농 기반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업작목별 평가기준은 별첨 세부평가기준표를 참고하여 평가(별표 1) * 농경지는 축산분야의 영농기반으로도 인정 * 직계존속이 임차한 임차 농지도 본인이 임차한 것으로 인정
영농사업 계획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 사업계획(100점) - 상 : 100점(신청자의 20%) - 중 : 80점(신청자의 60%) - 하 : 60점(신청자의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영농사업계획평가서(후계농업인사업실시요령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르되, 복무 완료 후 영농종사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평가
가점사항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능요원 복무 적합자로농업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총점(6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각각 20점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 추천은 영농기반조성이 가능한 자에 한함 • 일반 농업계학교장 추천은 학업성적이 전체의 2/3이내로 영농기반조성이 가능한 학생에 한함

5)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의 선정 절차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시·군·구별 배정인원이 통보되는 즉시 농업계와 비농업계로 구분(병무청에서 농업계와 비농계를 구분하여 배정한 경우),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시·군·구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 후계농업인을 선정(단, 농정심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군·구 농정심의회에 준하는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 선정결과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발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을 안내하는데, 이때,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되었으나 편입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의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어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포함하여 안내한다.

6)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 시장·군수·구청장(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교육과 정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도단위(특·광역시는 위탁)의 작목별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 시장·군수·구청장(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 의무종사기간중에 통산 3월이상의 국내 교육훈련(선도경영체교육 등포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기간은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국내 교육훈련기간은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장·군수·구청장(농업기술센터소장)은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대하여 의무종사중에 통산 3개월 미만의 국내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하여야 한다.

-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인은 의무종사기간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대학원의 경우는 수업을 말한다)할 수 없다. 단, 야간(본인의 사업장에서 통근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것은 가능하다.

7)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에게 주사업작목에 대한 과제를 부여하고 영농일지 등을 기재 제출토록 하여 수시 평가·지도하여야 하며,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

원으로 편입된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작목 변경을 원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작목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인의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집일자, 시간 등을 정하여 수시 영농기술지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영농기술지도 및 복무관리 등을 위한 소집일자는 교육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에 있어 병역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본 요령과 상충되는 규정이 발생할 경우는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름

다.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 사업

1)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 사업의 개요

〈표 17〉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 사업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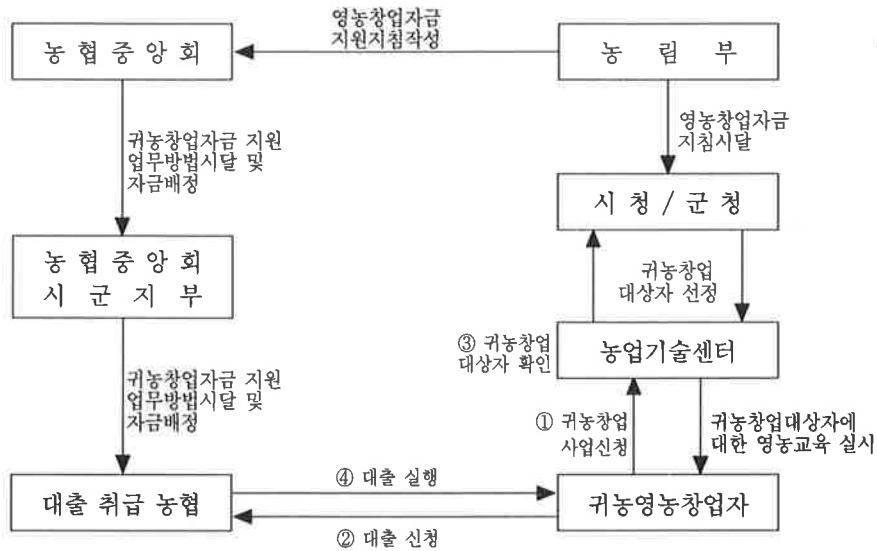
구분	내 용
목적	• 귀농한 자에 대하여 영농창업 등에 필요한 영농기반시설 및 농자재구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귀농정착을 촉진
지원규모	• 50억원, 1가구당 2,000만원(2000년)
대출조건	• 대출금리 : 5.0%(대출금리가 변동되면 변동금리적용) • 대출기간 : 5년(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대출대상	•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귀농한자로서 경종농업, 축산, 채소, 원예, 환경농업 등 농업을 전업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자 - '99. 1. 1이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하여 농촌(영농소재지)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농지구입(임차 포함) 등 영농기반을 확보하는 등 영농정착 여부를 귀농지역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확인한 자(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는 시장, 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에 관련된 사항은 같음) - 3일 이상의 영농교육을 이수한 55세이하인 자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한 자(영농교육은 농업관련 교육기관(정부·지자체, 민간단체 포함)에서 실시한 영농교육 또는 귀농자 교육을 포함하며, 농축산계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는 영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자료 : 농림부 농촌인력과(1999), 2000년도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계획(지침).

2)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선정 절차

□ 귀농자는 "사업신청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영농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농축산계학교 졸업 증명서 등 영농교육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

면 된다. 농업기술센터장은 “사업신청 및 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한 후 평가의견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게 된다. 시장·군수는 농업기술센터장의 평가의견을 참조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 및 대상자별 지원금액을 정한 후 “귀농자 창업자금 대출 자격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영농현장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농협에 통보한다. 이때 시장·군수는 지원 신청자들의 영농정착의지, 영농기반 확보 수준, 영농교육 및 기술수준,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간략히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자료 : 하동호(1998).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지원정책. p.103.

(그림 2) 귀농영농자금 대출취급 절차도

3) 귀농희망자를 위한 교육 제공

- 귀농희망자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귀농희망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교육기관 별로 교육과정,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기관, 교육대상자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8〉 귀농희망자 교육훈련프로그램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기간	교육대상자
농촌진흥청	귀농인 영농기술 교육	영농에 필요한 정보 및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중견농업인으로 육성	품목별 경쟁력제고 방안, 농업경영, 기술정보 수집 관리,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 등	합숙교육 (강의/실습)	4일	귀농 창업자금 수혜자
농협중앙회	돌아오는 농촌교육	귀향 도시민에 대한 영농조기정착 지도 및 돌아오는 농촌의 실현	영농기술, 경영정보, 농장견학 및 영농체험학습, 영농정착 사례 등	합숙교육	3-4일	귀농희망자, 일반인, 귀농자
전국귀농운동본부	귀농학교	올바른 귀농방향 정립, 농업·농민문제의 이해 확대, 당과 생명을 살리는 농업의 중요성 인식, 튼튼한 귀농 정착 지원	친환경적 유기농법, 영농정착사례 등	강의/실습	7주 (주 2일)	귀농희망자, 일반인
	지역·부문귀농학교	올바른 귀농방향 정립, 농업·농민문제의 이해 확대, 튼튼한 귀농 정착 지원	친환경적 유기농법, 영농정착사례 등	강의	5주	귀농희망자, 일반인
	실상사 장기귀농학교	농사 체험을 통한 성공적 귀농 정착 도모	분야별 영농 실습	농사체험	3개월	귀농학교출신자
	전문강좌	조화로운 마을 공동체의 형성, 다양하고 풍부한 삶의 방편 체험 등	다양한 우리 맛을 체험하는 문화강조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강좌	강의/실습	3일	일반인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귀농교육	실직 도시민을 위한 귀농조기정착 지도 및 귀향 농업인 정착 지원	영농기술, 농업경영정보, 농장 견학, 영농체험 등	강의/실습	4일	귀농희망자

라. 4-H회 육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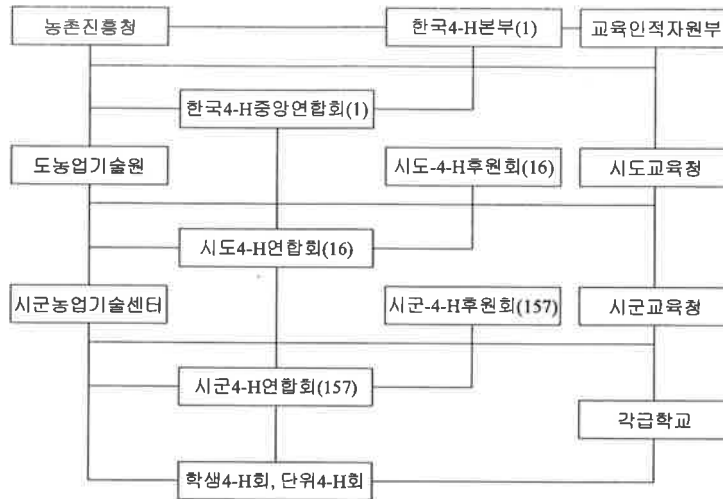
1) 4-H회 육성사업의 개요

〈표 19〉 4-H회 육성사업의 개요

구분	내 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하고 생산적인 청소년 육성 • 21세기 우리농촌을 이끌어갈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4-H회원 배가로 4-H 회원의 저변 확대 • 영농4-H회원의 지식농업경영기반 확립 • 4-H지도자의 4-H회 지도의 전문역량 증진
지원규모 (2003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H조직육성 : 62천명, 180백만원 • 4-H 교육행사 지도 : 166개회, 530백만원 • 4-H 사업 및 기반조성 : 166개회, 2,000백만원

자료 : 농촌진흥청(2003). 2003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

2) 4-H회 육성 체계



(그림 3) 4-H 육성체계도

3) 4-H회 육성 현황

□ 4-H회는 농업분야에 종사하거나 다른 분야에 종사하더라도 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영농 4-H회, 학생 4-H회, 일반 4-H회로 구분하며, 2001년 현재 전체 회원수는 58,957명이고, 조직당 평균인원은 22명(영농 4-H회 13명, 학생 4-H회 35명, 일반 4-H회 21명) 정도이다.

<표 20> 4-H 유형별 조직현황

구분	계	영농 4-H회				학생 4-H회				일반 4-H회			
		읍면	작목	기타	소계	학교	이동	기타	소계	직장	교회	기타	소계
조직수	2,575	994	261	44	1,299	1,030	104	17	1,151	19	3	68	90
회원수	58,957	13,856	2,330	1,129	17,315	37,553	1,905	355	39,793	467	68	1,314	1,849

자료 : 농촌진흥청(2001a). 2001년도 4-H 육성 현황. 내부자료.

□ 4-H회원은 연간 지속적인 과제이수를 하게 되는데, 과제 유형별로 참여하는 회원수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이 영농 4-H회 회원은 주로 식량작물, 축산, 원예 분야 과제를 주로 이수하고, 학생 4-H회와 일반 4-H회 회원은 교양취미, 봉사활동, 생활개선 분야 과제를 주로 이수하고 있어 4-H회 유형에 따라 과제 유형도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표 21〉 과제유형별 4-H 현황

구분	계	식량 작물	축산	원예	화훼	과수	특작	농기계	소득 개발	생활 개선	교양 취미	봉사 활동	기타
영농 4-H회	16,158 (100.0)	5,144 (31.8)	2,956 (18.3)	3,188 (19.7)	376 (2.3)	1,533 (9.5)	802 (5.0)	377 (2.3)	230 (1.4)	592 (3.7)	547 (3.4)	223 (1.4)	190 (1.2)
학생 4-H회	38,234 (100.0)	453 (1.2)	417 (1.1)	2,389 (6.2)	2,860 (7.5)	207 (0.5)	120 (0.3)	380 (1.0)	307 (0.8)	3,075 (8.0)	19,837 (51.9)	6,892 (18.0)	1,297 (3.4)
일반 4-H회	1,624 (100.0)	17 (1.0)	19 (1.2)	36 (2.2)	62 (3.8)	7 (0.4)	7 (0.4)	0 (0.0)	65 (4.0)	226 (13.9)	879 (64.1)	186 (11.5)	120 (7.4)
계	56,016 (100.0)	5,614 (10.0)	3,392 (6.1)	5,613 (10.0)	3,298 (5.9)	1,747 (3.1)	929 (1.7)	757 (1.4)	602 (1.1)	3,893 (6.9)	21,263 (38.0)	7,301 (13.0)	1,607 (2.9)

자료 : 농촌진흥청(2001a). 2001년도 4-H 육성 현황. 내부자료

4) 4-H회원을 위한 교육제공

- 4-H 회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전문지도자교육, 지도자기본교육, 학생 4-H회원 해외연수, 4-H회지도교사 해외연수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 지도자 교육은 전문화된 지도자 심화과정 중심으로 중앙에서 실시하고, 지도자 기본교육은 4-H 이념 및 활동, 청소년지도방법 등에 대한 기초교육 중심으로 각 시도별로 실시하며, 학생4-H회원 해외연수는 모험심과 자립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자율연수 일정을 추진하되 선진영농현장 견학 등 영농정착 동기 부여하며, 4-H지도교사 해외연수는 외국의 4-H지도자와 상호협력 및 프로그램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22〉 4-H 회원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 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기 (회수)	교육기간	인원	장소
○ 4-H지도자 기본교육	일선4-H지도교사	3~4월 (10회)	2일	800명	수련원(농업기술원)
○ 4-H전문지도자교육	우수4-H지도교사	7~12월 (2회)	4일	140명	한국4-H회관
○ 학생4-H회원 해외연수	학생4-H회원	7~8월 (1회)	6일	40명	일본
○ 4-H지도교사 해외연수	4-H지도교사	7~9월 (1회)	5일	20명	대만 또는 미주
합 계	-	연간(14회)	-	1,000명	

- 4-H지도자 기본교육은 학기초인 3~4월에 각 지역별로 학교 4-H 지도교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4-H 육성의 방향 제시 및 상호정보 교류 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한국 4-H본부에서 총괄 주관하고, 서울특별시 4-H후원회 및 각도 4-H후원회 주관으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 4-H전문지도자 교육은 우수 4-H 지도교사들에 대하여 전문화된 직무능력 향상교육으로

체계화하여 4-H전문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 4-H본부 주관으로 2회 실시하되 교육청 추천의뢰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 학생 4-H회원 해외연수는 우수한 학생 4-H회원 및 인솔 지도자 등을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통해 모험심과 자립심을 고양하고 4-H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시켜 영농정착의지 함양 및 농업지지기반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 4-H 지도교사 해외연수는 해외연수를 통하여 학생 4-H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교사들에게 선진 4-H활동 상황과 육성 기법을 습득시켜 향후 학생 4-H활동의 활성화 및 농촌지지기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선행 농업 인력 육성 관련 연구의 제안점 요약

후계농업인력 육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추진주체

1) 민승규(1997)

- 가) 다수 소액지원방식의 지원조건을 적정인원에 대한 종합지원 방식으로 전환
 - 사업성과에 따라 추가 운영자금을 지원
 - 관련 경영 및 기술교육에 대한 지원확대

나.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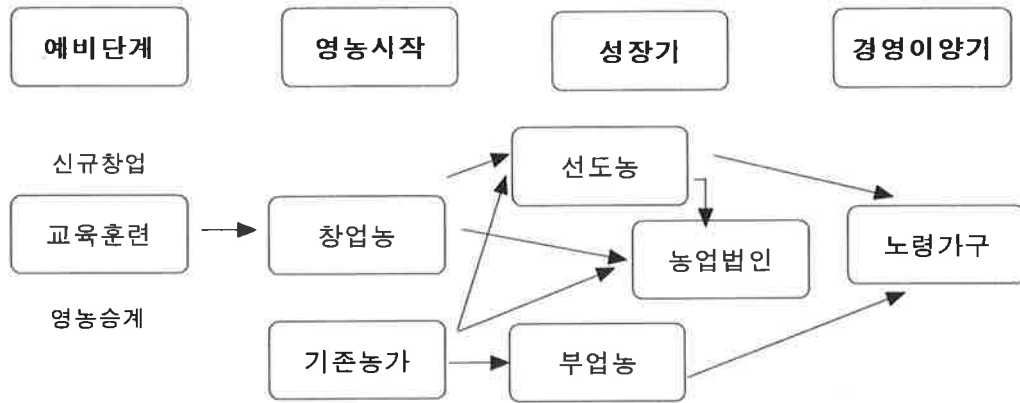
1) 민승규(1997)

- 가) 농업인후계자를 체계적으로 정예인력화하는 것이 필요
 - 후계자 선발에 있어서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로 하는 등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및 과학영농 또는 기술농업의 측면과 연계
 - 농업인후계자에 대한 기술·경영교육 등을 강화하고 농기업 경영자금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하여 전업농으로 유도
- 나) 장기적으로 농업인후계자사업을 전업농과 선도농업경영체 육성사업과 통합운영함으로써 융통성을 제고하고 육성대상자를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정철영 외(2002).

가) 성장단계별 육성대책의 체계화

- 영농예비후계자단계 → 영농착수단계 → 성장단계 → 성숙단계 → 경영이양기



자료 : 농정발전기획단(2001). 농업인력육성안.

[그림 4] 농가의 발전단계별 교육훈련과 자금지원의 연계

(나) 후계농업인 선정 확대

- 현재 선정하고 있는 후계농업인의 수를 제한하지 말고 신청자 모두를 수용하여 차별적 지원
- 산업기능요원제의 규모 확대 및 조기 선정 ; 자영고 뿐만 아니라 모든 농업계 고등학교 생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선발하며, 선정시기를 졸업후에서 농고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정적으로 선정

다. 교육방안

1) 정철영 외(2002).

가) 창업 예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 실시

- 농업교육의 정도, 영농경험에 따라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1-3개월), 이수자에 한하여 창업농 지원신청 허용(농전 졸업자는 경영기술 중심의 단기교육, 자영농고 졸업자는 경영기술과 현장실습 실시, 무경험자는 종합적인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

2) 민승규(1997).

- 지금까지의 영농기술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경영관련 교육에 집중 ; 농업인의 경영

마인드를 형성하고,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경영혁신 유도, 경영혁신 노력없이 정부지원에 의존하려는 관행을 타파하고,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한 자율농정체계 정착

마. 사업계획서

1) 박진도 외(1999)

가)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요령

- 신규농업인력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1년 혹은 6개월 전(농업인턴 또는 교육기간 중)에 예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토록 함.
-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거치도록 제도화 함

나) 사업계획서의 심사제도 개선

- 심사과정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 강화 ; 사업계획서 기재내용의 보강, 별도의 농업 컨설팅 전문가 참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배점의 상향조정 등이 필요

〈표 23〉 현행 농업인후계자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의 문제점

단위 : 명, %

항 목	응답자수	비율
● 현행 평가기준이 신규인력보다 기존 농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구성됨	11	38.0
● 신규인력과 기존 농업인을 분리 선정해야 함		
● 여성후계인력에 대한 가산점 재고	5	17.3
● 영농기반 점수(150점)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영농의욕이 있는 소농후계자가 탈락할 가능성이 큼	3	10.4
● 선정과정의 다단계화로 인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6	20.7
● 대상자의 심의, 추천기관의 일원화		
● 4-H회원 활동경력을 영농경력과 분리하여 별도가점 부여(현행 4-H 경력 1년 5점 → 10점)	1	3.4
● 부부중 1인이 타직종에 근무하면서 고정급을 받는 경우 후계자 신청 자격제한	1	3.4
● 1차 심의시 정실주의에 흐르지 않도록 객관적 심사기준 마련	1	3.4
●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점수제도 도입	1	3.4
계	29	100.0

자료 : 박진도 외(1999).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 실효성 분석. 대전충남발전연구원.

바. 컨설팅

1) 안덕현 외(2001).

가) 농업컨설팅 사업과 지도사업, 생산자단체 컨설팅 사업의 역할 분담

- 농촌진흥청 : 농가경영컨설팅사업, 시험·연구사업,
 - 농촌진흥기관(농진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부문을 중심으로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활동 강화, 일반재적인 성격이 강한 부문은 민간 농업컨설팅사업으로 이관
 - 농림부 : 점진적으로 수익자 부담비율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민간에 그 기능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
 - 정부 ; 컨설팅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 컨설팅 받을 농가에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현행의 직접적인 지원방법에서 컨설팅업체를 지원·육성하는 간접지원방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함

나) 농업컨설팅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보완

-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다원적 홍보활동
- 컨설팅 비용(계약금액) 및 지원비율의 조정
-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금은 매년 5%정도씩 지원비율을 낮춰가다가 이후 각종 하드웨어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SW 개발 및 구입 지원의 간접지원방식으로 발전
- 컨설팅 공급업체의 지정 기준 : 여유를 두고 강화
- 컨설팅공급업체 대표자에 대한 자격기준 강화
- 컨설팅 계획 및 실적에 대한 엄밀하고도 철저한 평가
- 컨설팅 실적의 중간 평가 및 사후평가의 강화(평가실적에 따른 지원액의 차등화)
- 컨설팅 계약기간 : 현행과 같은 1년 단위 계약, 2년부터는 연간 지원비율을 감소시킴
- 농업부문 벤처기업 우대
- 연중 컨설팅신청 및 서비스체제로 전환

다) 농업컨설팅 업체의 육성

- 컨설팅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 농업컨설팅 공급업체의 정부기관 시설 및 시험기기 활용 지원
- 민간 농업컨설팅협회 지원

라) 농업컨설팅 영역의 확대

마) 사이버컨설팅 체제 구축

바) 작목별 경영규모별 표준컨설팅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바. 기타

- 1) 박진도 외(1999).

가) 농업기능장제도 도입

- 일본의 지도농업사, 독일의 Meister와 유사한 기능과 자격을 가지는 농업기능장 제도 도입
- 신규취농자 또는 농업인턴의 실습교육을 담당하는 농업기능장에게는 상응하는 지원

나) 농업 인턴제도 도입

- 현행 대졸 미취업자 기업연수제도(인턴제도)에 준하는 농업부문의 인턴프로그램 마련 및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현재 시행중인 '대졸미취업자 인턴제도'를 원용할 수 있으며, 농업부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집대상을 고교 졸업자까지로 확대할 필요할 있음

4. 창업농 지원사업의 문제점

현재 창업농 지원사업은 공식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다만 관련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제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2년 정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종합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기는 한계가 있다. 후계농업인 사업에서 창업농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창업농 지원사업과 함께 후계농업인 사업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창업농 지원사업이나 후계 농업인 사업의 핵심은 대상자의 문제이다. 어떠한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들은 실제로 타당하며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정책의 대상자를 결정할 때는 타당성과 논리성, 사회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명칭과 내용이 사회적 여건과 일치하는가를 정당화의 근거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후계 농업인 사업의 핵심은 신규 후계농업인의 육성에 목적이 있어왔다. 처음 영농후계자 사업을 주창할 때도 신규농업인력의 부족이었고, 그중에서도 영농후계인력이 중심이었다. 그 범주가 수산분야까지 포함하여 농어민 후계자 사업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해양수산부가 별도로 설치되면서 후계농업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고, 2001년부터는 취농 창업 후계 농업인 제도가 분화되었다. 이들 제도의 핵심적인 정책 대상자는 취농인력이 될 것이다. 영농종사자의 노령화, 부녀화는 신규 인력의 공급을 용이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므로 영농후계 인력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 집행은 양적 확대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후계농업인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정책의 잘못이 아닌 농업을 둘러싼 외적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이 우선적인 영향요소가 될 것이나 정책 역시 이들 경향에 대응할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정책의 대상자를 현재 농업종사자로 할 것인가와 아니면 미래 취업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방향을 결정하여야 함을 말한다. 일차적으로는 명칭과 사업의 내용이 일치되는 방향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영농인력을 비롯한 농업인력에 대한 육성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들 부분

에 대한 지원과 정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미래의 우리나라 농업의 여건은 개방화가 이루어진 형태로 인구의 증가에 따른 식량 공급 문제와 함께 경쟁력있는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있는 농업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선발과정상의 한계이다. 선발과정은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심사,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선정기준의 중요한 항목의 하나가 영농사업계획인데, 영농사업계획은 해당 지도공무원의 조언과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을 받은 경우는 인정되고 있고, 컨설팅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있음을 볼 때 사업계획서 제출이 컨설팅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려면 현재의 여건상 선정된 후에 사업계획서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선발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받으려면 취업창업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기 전이 된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사업계획등에 대한 컨설팅은 받기 어렵고 농업을 영위하는 중에 문제에 대한 컨설팅과 그에 따른 자금 지원이 가능한 실정이나 영농자금의 일부로서 지원받게 되므로 자금이 부족한 농업인들이 컨설팅을 받고 싶어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농업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갖춘 전문 컨설팅 인력의 육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이 후계농업인이 영농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다면 그 내용은 새로운 계획이 아닌 경영평가 중심의 진단이 될 것이므로 새로운 사업에 대한 평가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원분야의 한계이다. 현재 신규후계농업인 지원분야는 경종분야와 축산분야로 제한되고 있으므로, 벤처농업부분을 사업항목으로 신청한 경우 현행 제도하에서는 선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관련 산업부문도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농민들이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을 제외한 영농후계자만을 창업농으로 규정할 때, 농산물 무역부분에 중대한 경험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상황하에서 가공분야나 유통분야, 임산물의 생산과 관련된 분야를 제외한 형태의 농산물 생산분야, 그중에도 경종과 축산부문만을 선발함은 신규영농후계인력의 지속적인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농업인력의 유입은 기존의 농업과는 다른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로 시작될 것인데, 그에 비하여 자금 지원부문은 생산농업으로 한계를 갖는 문제가 될 것이다. 더구나 농업으로 생업을 삼는 경우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나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는 제한된 조건으로 인하여 투기 자본의 농촌 진입은 제한될지라도 생산에서 판매와 유통이 결합된 형태의 농업인의 진입을 함께 제한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수익성이 많은 분야까지 국가의 자금 지원을 통하여 육성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타당성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선정시의 점수기준 문제이다. 총점은 600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후계농업인은 360점이상과 300점 이상으로 선발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일부는 400점이상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이들 점수는 여러 가지 항목을 합산하므로 일견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배점하에서는 일부 항목에 전혀 점수를 못받아도 선정될 수 있는 상태이다. 즉 사업계획등이나 교육훈련등의 일부 항목을 못받아도 선정될 수 있다. 또한 각 항목은 서로 형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즉 학력 및 영농교육훈련 경력의 점수에서

학력에 비하여 교육훈련경력이 과대 평가되어 있다. 기간에 상응하는 점수와 기간에 대한 질적 점수를 반영하는 새로운 점수 체제가 필요하다. 경력 역시 취업창업후계농업인과 후계농업인간에 동일한 내용의 배점 기준이 차이가 있다. 또한 기간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가산점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즉 경력은 6년을 기준으로 6년 이상은 1년 단위로 10점씩 가산되는데, 1년에서 6년까지는 동일한 점수이므로 6년이상과 이하의 차이가 그 정도로 실제적 차이가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영농사업계획은 100점(후계농업인)이나 200점(취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배점되고 있으나, 사업계획의 평가는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은(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투자 및 자금조달, 생산 및 판매, 작목 집단화등의 항목에 대하여 타당성, 치밀성, 발전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였음) 추상적이므로 이들 부분에 대한 항목의 가감이나 방법의 전환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의 기준에서 보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육성단계의 정책과 현재의 농업취업자들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정책과 대상의 타당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창업농 지원사업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으나 후계인력을 지원하는 영농 4-H과제 자금은 30세 미만자에게 농업에 대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형태로서 지원하고 있으나, 이들은 현재 학생 4-H회원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영농을 짓던 사람들이 과제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과제자금의 성격상 실습이므로 농업을 체험하는 단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예비 창업농들에게 지원하는 형태의 자금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 4-H나 일반 4-H는 농업분야의 과제 지원으로 유도하고, 영농학생회와 같은 학교의 청소년 직업조직을 대상으로 영농체험을 위하여 과제 자금을 지원함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창업농은 창업초기의 자금 수요를 지원하는 형태이어야 하므로 창업자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나 실패의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자를 낮게 하거나 원금만을 갚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창업이후 정착 과정의 단계별로도 이들 정책적 집행을 고려하여 다양한 단계의 영농후계인력의 발달 단계를 구분하여 적절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현재 농업인력의 육성단계가 취농창업인과 전업농 중심의 지원으로 그치고 있으나 창업인의 확보는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가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도 이들이 우수한 선도농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농이라는 이름하에서 제도를 정비하되 경영이양단계까지 연계되도록 농업인력육성제도를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Ⅲ. 국외의 후계농업인 지원 현황

1. 미국

가. 미국의 농업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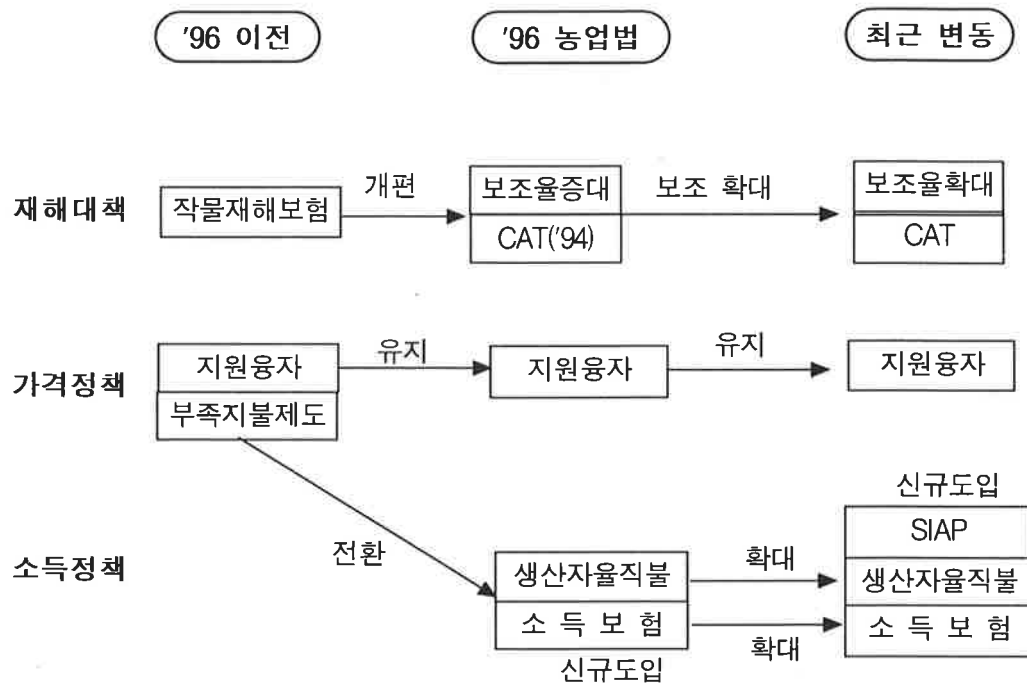
미국의 농업정책은 1996년 농업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식부면적의 적절한 통제와 소득 및 가격지지 정책을 통하여 농민의 소득을 지지함은 물론 양질의 농산물 공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었으나, 지나친 가격지지는 농산물 공급의 과잉 문제를 초래하여 재정적자 누증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특히 1980년대 이후 재고누증과 수출보조로 인한 세계 농산물 가격 하락과 수출침체는 UR 농산물협상 개시의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UR 협상결과를 이행하던 1996년에 농업법을 제정하여 과거와는 달리 소득보상과 지원을 생산이나 가격에 연계시키지 않고(decoupled income suort) 사전적으로 결정된 일정액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농정의 골격을 전환하였으며, 예기치 못한 농산물 가격폭락에 대한 안정장치로 다양한 작물재해보험 정책을 도입하였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미국의 농업정책은 크게 재해대책, 가격정책, 소득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시장상황변동에 따른 농가경영 및 소득 불안정화에 대비하기 위한 작물보험, 수입보험제도의 확충과 다양한 긴급지원제도를 통한 재해대책이다. '96년 이전에 있었던 작물재해보험은 '96년 농업법 제정을 통하여 보조율이 증대되었고, 특히 '94년에 CAT(Catastrophic Insurance)를 제정하여 최저한도의 보험으로 작물별로 연간 \$ 60을 내면 50% 이상의 재해에 대해 보상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보조율이 확대되었다.

둘째, 국내 및 세계시장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농민들의 소득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미국 정부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원융자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마케팅지원융자(marketing assistance loan)와 융자부족지불제(loan deficiency payment)를 통해 가격대책을 수행하게 되었다.

셋째, 그 동안 미국 농정의 근간이 되어 왔던 부족지불제도(1973년 농업법)와 생산조정제도(1933년 농업조정법)를 폐지하고, 식부의 자유화를 전제로 하는 직접지불제도(생산자 율직접지불제)를 도입하였고, 2000-2002년간 새로운 보완적 소득지원정책(SIAP: Sulementary Income Assistance Program)를 도입하는 등의 소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 : 임정빈(2001). 최근 미국의 농정변화와 WTO 농업협상에서의 전략.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 6.

[그림 5] 미국의 농업정책 변화

나. 영농후계자 육성 체계

1) 학교교육을 통한 영농후계자 육성

현재 미국의 농업교육은 고등학교, 지역사회대학 및 4년제 종합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등농업교육은 종합중등학교의 농업과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중등농업교육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과 학교를 졸업하고 농장을 개설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 그리고 현재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성인, 농부 등을 모두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다.

학교교육체계의 영농학생회(Future Farmers of America)는 1900년대에 들어와 선진적인 주에서 주법을 제정하여 농업교육 및 농촌지도사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스미스-휴즈법이 공포된 1917년에는 약 800개의 청소년클럽이 결성되었는데, FFA는 지도성, 협력성, 선량한 시민성, 애국심의 함양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단위 고급과정으로서의 농업교육기관인 지역사회대학(Community College)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2년제 초급대학 과정으로서 정규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이론과 실습을 겸한 현장중심 농업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2) 사회교육을 통한 영농후계자 육성

가) 4-H 클럽

학생들의 과외활동으로서 집단활동이 활발해지고 확대됨에 따라 1914년 스미스레버법 (Smith-Lever)이 통과되어 주립농과대학이 제도적으로 농촌청소년 지도사업을 전개하게 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4-H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데 농업경영계획, 가정경제, 시민성 및 자아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학습한다.

군단위 4-H 조직체는 단위내에 속해있는 4-H 클럽을 지원하며, 자원지도자, 4-H 회원 및 관심있는 시민은 군지도 요원들과 4-H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이러한 4-H 조직은 지도자 선택 및 훈련, 군단위행사 및 지역집단활동지원 등의 활동을 하며, 사업가, 산업가 및 회원부모와 함께 일을 한다.

나) GI Farm Bill(Government Issue Farm Bill)

이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퇴역장교에게 영농교육을 시켜 실제 농민들의 농업생산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마련되었으며, 1944년부터 Title II of the Servicemen's Readjustment Act을 제정하여 유휴인력에 대한 영농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였다.

일명 GI Bill of Rights라 하며, 2차 대전이후 약 70만명에 달하는 퇴역장교들에게 GI Bill에서 영농교육을 시켜 이들이 농촌에 돌아가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내용으로 하였다. 교육과정은 전일제 코스로 1년에 약 200시간 정도의 집단교육을 통해 영농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참석비용은 전액 무료이고, 참석자들에게는 약간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한다.

참여대상은 전체 농민과 농업노동자들의 절반이상의 비율이었는데, 교육받은 약 3/4에 달하는 퇴역장교들이 실제 영농에 참여하였다.

다) 청년영농회(Young Farmer Association)

청년영농회는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직업적 농업을 돕기 위한 교육단체이며,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조직'이다. 이는 성인 영농인들이 지역사회에서나 농업경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청년영농조직은 FFA 조직과 성인영농자간의 간격을 좁혀주는 교량역할을 하면서 영농에 대한 지도력과 경영참여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업교사가 州회에서 조직방법을 습득,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영농인들에게 청년영농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면서 조직하기도 하며, 청년 영농회원들이 인근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그들의 조직에 관해 설명해 주고 그들의 모임에 참석토록 초대하여 조직하기도 한다.

조직구성은 州 청년영농회와 둘 이상의 단위를 지닌 지역청년영농회가 있다. 청년영농회의 회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2인, 서기, 회계, 섭외, 봉사, 둘 이상의 감사, 한명 이상의 고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활동으로는 경제활동, 지역사회개선활동, 지도력배양 및

사교적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다. 영농후계자 지원을 위한 법률 및 시책

1) 연방정부의 영농후계자육성법

가) 영농신용법

영농신용법의 발의는 농업과 농촌지역사회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농민들에게 신용을 통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 영농재정기반을 견실하게 하고 영농기술이 향상을 꾀하여 미래에 자립영농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다. 특히 미래의 영농후계자와 농장주(rancher)가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영농후계자들에게 금융대출을 신용만으로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영농신용법의 핵심조항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영농후계자(beginning farmers and ranchers)에 대한 신용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① 영농후계자와 목장주에게 영농설비의 대여 혹은 손쉬운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농가지원행정기구(Farmers Home Administration)의 수립과 세부 프로그램의 진행
- ② 영농후계자들의 새로운 농지구입에 대한 지가대여지원 및 대출에 대한 새로운 관리 프로그램 수립
- ③ 영농후계자의 대여신청시 신속한 처리절차 수립
- ④ 농민의 부채지원을 법규에 수립된 필요수준으로 수정
- ⑤ 공인된 대출 프로그램 수립
- ⑥ 영농후계자의 지원을 위한 연방과 주간 협력체계(제휴)수립
- ⑦ 농가지원행정기구에 의해 보증된 재정지원자에게 대부 차용의 촉진
- ⑧ 10년까지 FHA 직접대부 프로그램에의 접근제한
- ⑨ 총 15년까지 직접적 또는 보증된 대부 프로그램에의 접근 제한
- ⑩ 50만 달러 혹은 그 이하의 보증대부에 대한 간소화된 신청서 필요
- ⑪ 농가지원행정기구는 성별로 신청자를 분류

특히 이 법안은 미래의 성공적인 자립농가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용대출과 함께 농민들이 일정한 영농기술교육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대출지원 이전의 5년간 농가가 성공적인 영농에 필요한 교육과 경험을 쌓을 것을 기본조건으로 한다. 그래서 영농교육 프로그램은 대출 후 대출금 사용관리, 재정평가 과목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주정부의 농무장관은 영농후계자 양성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영농에 대한 교육경험이 풍부한 지역의 대학이나 다른 교육기관을 포함시키고 있다.

나) 영농후계자, 농장주 지원 법률

영농후계자, 농장주 지원 법률은 법인보다는 영농이나 농장운업을 하는 농민을 지원하는 데 있다. 지원대상자는 첫째, 혈연이나 결혼으로 관계를 맺은 소유주와 구성원 모두, 둘째,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장소유주와 그 구성원들로 하고 있다.

농민은 지속적인 영농이나 농장경영을 위해 해당지역위원회의 지원을 이 항에 의거하여 향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초 지원을 받은 농장 및 농민은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의 위원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5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① 농장운영방식
- ② 농장운영에 의해 나타난 농산물의 양과 유형
- ③ 농장운영에 의해 전개될 생산방법과 실제
- ④ 농장운영에 의해 전개된 생산방법과 실제
- ⑤ 농장운영의 유지수단
- ⑥ 농장운영에 필요한 장비(개인이 소유한 장비, 임대장비, 타목적에 의해 구입한 장비의 일체)
- ⑦ 농장의 기대수입과 운영비
- ⑧ 농장운영에 필요한 신용
- ⑨ 농장운영에 필요한 부지

2) 영농후계자 지원을 위한 주정부법

미국은 연방의 법률과 함께 각 주마다 특색 있는 영농후계자 지원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노스다코다주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한 법률의 골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현장 126 : 제 48차 주입법회의 Vol.1.(Beginning Farmer Loan Guarantee Program)

현장 126은 노스다코다 은행에 의해 집행될 영농후계자 대부보증프로그램과 관련된 노스다코다 주법의 6개의 제목을 갖는 새로운 장의 고안과 경쟁에 관한 법이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 영농후계자 사이의 지원받는 판매자 대부에 대한 산업위원회 대부보증프로그램, 보증대부가 없을 때의 절차, 토지와 광물 위탁으로부터의 충당금을 통한 충분한 보증기금의 설립과 유지에 관련된 노스다코다 주지역 법전 54-17-29, 54-17-30, 54-17-31항의 강화를 위한 법으로 노스다코다주의 입법회의가 제정한다.

② 노스다코다 주규약(제 48차 입법회의 Vol.11.57-38-68항부터 57-38-70항까지)

이 법은 첫째, 영농후계자에게 농지를 판매시 소득세 공제(57-38-68), 둘째, 소득세가 면제된 영농후계자로 부터의 임대(57-38-69), 셋째, 영농후계자에게 토지 판매, 임대시

소득세공제에 대한 요구(57-38-70) 등을 그 골자로 한다.

③ 노스다코다 주규약(제 51차 입법회의 Vol. 10. 54-27-29항과 54-27-30항)

이 법은 첫째, 소작 영농후계자에 대한 대출지원(53-17-29), 둘째, 영농후계자 대출금 상환불능에 대한 구제(54-17-30) 등을 그 골자로 한다.

④ 노스다코다 주규약(Vol. 11, 1991년 보충항)

이 법은 영농후계자의 토지 구입, 임차지 소득세 감면(57-38-70), 영농후계자의 법적 개념 정의(57-38-71) 등을 위한 것이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영농후계자로 지목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영농경험이나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영농가를 운영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일본

가. 농업분야로의 유인책

일본은 농업인력의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계층의 인력을 농업분야로 유인하려는 몇 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중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농업분야로의 유인책은 신규 영농취업사업과 영농후계자 육성 사업이 그것이다.

1) 신규 영농취업사업

신규 영농취업사업은 전국 농업 회의소 내에 있는 전국 취농가이드 센터를 중심으로 취농 세미나, 취농상담, 농업법인의 회사 설명회 등 농업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영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규 영농취업사업이 시작된 1980년 중반은 일본이 경제대국이 되어 국제적으로 큰 공헌을 하고, 국내적으로는 「전후 총결산」이라는 형태로 전후 일본을 지탱해 왔던 각종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된 시기였다. 신규 영농취업사업의 발상은 극히 단순하다. 농촌에서는 농지의 유희화가 진행되고 있고, 도시에서는 농업·농촌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므로 양측의 요구를 결합하기 위해 상담창구를 설치한 것이다(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93).

신규취농자를 육성·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을 매력있게 하고, 청년이 영농취업을 하기 쉽도록 조건을 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지의 집적과 생산기반 정비 등 구조정책의 추진, 생활환경의 정비, 연수교육의 실시 등 각종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신규 영농취업사업에 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신규 영농 취업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기술습득, 농지구입, 자금확보의 3가지로 요약된다. 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각종 대책이 강구되고 있고, 최근에는 지원내용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우선 기술습득대책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하고 있다.

- ① 청년농업자의 영농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합의 도출, 선진농가에의 현지연수
- ② 신규 영농취업자에 대한 현 농업대학교에의 단기 연수
- ③ 개량보급원을 통한 기술·경영방법의 지도 강화
- ④ 농업대학교에의 실천적 연수교육
- ⑤ 국내외 선진농가에의 파견 연수
- ⑥ 농업개량자금 중 고도기술습득자금, 연수교육자금의 지원

다음으로 농지확보대책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하고 있다.

- ① 신규 영농취업 가이드센터에서 농지정보 제공 및 영농취업 상담
- ② 신규 영농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통해 농지구입
- ③ 축산부문에 있어서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통한 이농지 정비

그리고 자금확보 대책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하고 있다.

- ① 농업개량자금조성법 개정을 통한 청년 농업자 육성·확보자금제도의 신설(경영개시에 필요한 무이자자금의 지원대상을 신규농업취업자에게도 확대)
- ② 농림어업금융공고의 농지구입자금에 신규 영농취업자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
- ③ 농업근대화자금에 있어서 신규 영농취업 원활화자금(운전자금)제도의 신설
- ④ 신규 영농취업자에 대한 세제상의 특례조치(농기계의 할증상각제도)

농림개량자금제도의 개정은 과거의 농업후계자육성자금을 개선·확충하여 새로이 청년농업자 육성·확보자금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농외로부터의 신규 영농취업 청년이 농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대상에 추가되도록 하고, 아울러 지원한도액을 대폭 확대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였다.

또한 농지구입자금에 있어서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신규 영농취업자에 대해 농업종사자 요건을 2인이상에서 1인이상으로, 또한 경영면적 요건을 취득후 기준면적 이상에서 5년 후 기준면적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신규 영농취업시의 자금부담경감조치가 취해졌다.

<표 24> 신규 영농취업자 금융지원

용도	융자한도액	이율 및 융자대상 ⁴⁾	반환기간	
취농지원자금	취농농업연수	농업 대학교 등 → 월액 5만엔 선진 농가 → 월액 15만엔 지도 연수(청년만) → 200만엔	무이자 농업기술·경영 수법 습득을 위한 실천적인 연수(농업 대학교등의 연 수 교육 시설, 국내외의 선진 농가등 으로 실시하는 연수)에 필요한 경비 *수업료, 교재비, 시찰 연수비, 체재 비, PC등 연수용 기기 등	·청년의 경우 평장: 12년 이내 중 거치 기간 4년 조건 불리 지역 : 20년 이내 중 거치 기간 9년
	취농준비	200만엔	무이자 취농처의 조사, 취농에 수반하는 주 거의 이전, 자격의 취득 등 취농 에 해당하는 사전의 준비에 필요한 경 비 *주거 이전비(이사대, 보증금·사래 금등), 자격 취득비, 취농처 조사 여비, 체재비 등	·중노년의 경우 평장: 7년 이내 거 치 기간 2년 조건 불리 지역 : 12년 이내 중 거치 기간 5년
	취농시설자금	청년의 경우 경영 개시 초년도 → 2,800만엔 경영개시 차년도 이후 (2-5년째까지) → 900만엔 ²⁾	무이자 농업 경영을 개시할 때의 시설의 설 치, 기계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기계의 구입비, 시설의 설치비, 가 축 구입비, 각종 수선비·리스료, 종 묘·비료비 등의 운용자금	·청년의 경우 평장: 12년 이내 중 거치 기간 5년
		중노년의 경우 경영개시 차년도 이후 → 1,800만엔 경영개시 차년도 이후 (2-5년째까지) → 900만엔 ²⁾	*농협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 는 경우에는, 도도부현의 농업 신용 기금 협회의 채무보증 제도의 대상 이 된다	·중노년의 경우 평장: 12년 이내 중 거치 기간 5년
농업근대화자금	신규취농 원활화 자금	축산·시설 원예 → 400만엔 그 외 경영 → 200만엔	1.6% 취농 후 3년간의 경영 자금 *인정 농업자의 경우는 취농 후 5년 간	7년 이내 중거치 기간 3년
	특정 농가 주 택 자금	1,800만엔	1.6% 농가 주택의 개량, 조성 또는 취득 자금	15년 이내 중거치 기간 3년
농지 취득 자금 (개인의 경우)	500~7,000만엔	실효금리 1.6% 농지등 (농지·채초 방목지등)의 구 입	25년 이내	
토지 이용형 경영체 육성 강화 자금 (개인의 경우)	1억 5,000만엔 혹은 농업 사업비의80%	실효금리 1.6% 토지 이용형 농업 부문에서 경영 면 적의 확대등에 필요한 자금	25년 이내	
농업 경영 기반 강화 자금 <슈퍼 L자금 > (개인의 경우) ³⁾	1억 5,000만엔 (특인 3억엔)	실효금리 대부 기간에 따르고 1.05~1.60% 농지 취득이나 기계 시설 투자 등에 충당하는 장기자금	25년 이내 중 거치 기간 10 년 이내	

<표 계속>

용 도	융자한도액	이율 및 융자대상 ⁴⁾	반환기간
농업 경영 개선 촉진 자금 (슈퍼 S자금) (개인의 경우) ³⁾	채권최고액 500~2,000만엔	1.4%(변동금리) 단기의 운용자금	상환 기간 1년 이내

주 1) 청년등 취농촉진법에 근거하는 인정취농자가 대부분 대상, 청년의 경우(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사람).
경우(40세 이상 55세 미만, 지사특인으로 65세까지 가능).

주 2) 경영 개시 차년도 이후(2~5년도까지)는, 자금 수요의 2분의 1 이내.

주 3) 농업 경영 기반 강화 자금 및 농업 경영 개선 촉진 자금은 농업 경영 기반 강화 촉진법이 기초를 두는
인정취농자가 대부분 대상

주 4) 이율은 평성 13년 5월 18일 현재. 이율은 공정보험의 개정 등에 의해 변동

자료 : 全國新規就農相談センター(2001). 新規就農ガイド事業. [On-line]. Available.

<http://www.nca.or.jp/guide/howto.html>

1992년 6월에 발표된 「신 식료·농업·농촌정책의 방향」에서는 앞으로의 농업경영체로서 개별경영체 이외에 생산조직·법인 등의 조직경영체를 포함시키기로 하고, 농가자녀 이외의 자도 포함시키는 등 영농취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청년농업자 육성·확보대책도 단순히 농가의 후계자대책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다양한 경영체를 담당할 인재를 육성한다는 폭넓은 관점에서 청년농업자를 육성·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93).

2) 영농후계자 육성 사업

일본에서 농업후계자 육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56년의 농업개량보조금조성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며, 1964년부터 후계자 육성기금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법은 농업개량자금제도에 농업후계자 육성자금을 설치하여 자금면에서 제도적으로 지원케 하고, 정부 및 도부현이 주관이 되어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최현주, 1994).

일본의 농업후계자 육성사업은 학교교육을 근간으로 하여 개인의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미래의 농업을 담당할 후계자를 육성하고 있다. 일본의 농업후계자 육성대책을 학교교육단계에서의 후계자대책, 농업후계자 연수교육, 농촌 청소년 조직활동조장, 농업사제도, 자금지원제도 등이 있다.

일본의 농업후계자 육성시책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성장단계별로 일괄적인 교육체제가 확립되어 있다. 의무교육단계에서부터 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고교졸업예정자에 대한 푸른학원 개최사업, 고교졸업후에는 강좌제 연수사업을 통해 취업중 농업기술 습득에 대한 단계적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종합적인 육성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농업후계자 육성자금제도를 통해 자금지원과 동시에 농업사의 인정으로 농촌청년의 사회적 평가를 높여주고 생산실습, 교육용기자재 등 교육시설 이용에 역점을 두고 있다.

셋째, 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농촌청소년에 대한 교육사업은 정부 및 도도부현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시설의 설치도 정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상의 특징하에 사회교육의 형태로 추진되는 농업후계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체계화한 형태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가) 학교교육사업

농업후계자를 육성·확보하기 위한 일본의 교육지도사업은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개인의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장래의 농업후계자를 육성하고 있다.

푸른학원 개최사업은 농업후계자를 육성·확보하기 위해 취농의사를 결정하기 이전단계인 고등학교재학시부터 장래 농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계휴가 등을 이용하여 농업과 농촌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 도부현은 농업개량보급소, 고등학교, 농림수산성 및 현농업자대학교 그리고 민간단체농업교육기관 등과 협조하여 푸른학원을 개최하고 있다. 학습기간은 7일정도이며, 학습내용은 농업실무실습, 선진농가견학 등으로 이를 통해 우수한 농업후계자를 육성·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농업후계자 지역실천활동추진사업은 학교교육과 연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단계별 즉 시정촌단계, 현 및 전국단계의 3단계로 구성되어 각각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시정촌단계에서는 아동·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한편, 농업청년의 지역농업추진에 도움이 되는 실천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 및 전국단계에서는 시정촌단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업청년의 의향 및 활동실태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소요예산의 1/2을 보조하여 지원해 주고 있다.

이 사업의 내용을 시정촌단계·도도부현단계·전국단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5〉 농업후계자 지역실천활동추진사업의 개요

지역별	내용
시정촌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과의 연계사업 · 농업입문서의 작성 활용 · 농업소년그룹의 활동 촉진 · 취업예정고교생의 학습활동 촉진 - 농업청년 지역활동추진사업 · 조사사업의 추진 · 농업청년 지역활동추진회의 개최 · 농업청년리더연수 실시
도도부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후계대책추진협의회 개최 - 농업후계자에 관한 조사 실시 - 비농가자제의 취업상담 실시 - 농업청소년그룹 대책 · 청소년그룹회의 개최 · 청소년그룹기술교환회 개최 · 청년농업경영자연구집회 개최
전국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조사검토위원회의 개최 - 농업청년의 집단활동 사례조사

나) 연수교육

연수교육에는 농림수산성 농업자대학교, 현 농업자대학교, 농촌청년강좌제도, 농촌청소년 해외연수 4가지가 있다.

농림수산성 농업자대학교는 장래 농업을 짊어 질 농업자상을 전망하고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농업을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농업자를 육성한다는 목적하에 1968년에 설립되었다. 입학정원은 각 년도 총 50명이며 교육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으며, 교육내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고 스스로 학습하는 마음자세를 기른다.

둘째, 3년의 교육기간을 통해 집합교육, 현장실습 등의 교육과정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 교육효과를 증대시킨다.

셋째, 소수정예교육에 의해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계발하고 적성을 살리기 위해 전공교육 지도관을 배치하는 동시에 교육·연구 및 지도기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실시한다.

넷째, 집합교육기간중에는 전원 기숙사에 입학시켜 기숙생활을 통해 자기확립과 집단활동의 의의를 터득시켜 지역사회에 있어 중핵자로서의 인격형성을 도모한다.

현 농업자대학교는 각 현의 지역농업실정이나 사회정세에 맞는 농촌청소년에 대한 고도의 기술능력 및 경영관리능력을 습득시킴과 함께 농업자로서의 폭넓은 시야를 갖게하고 협동정신을 증대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수내용은 실천적인 영농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해 경영실천학습을 중심으로 하며 실습포장에서의 모델농장경영 또는 선진농가파견학습에 의하여 지역농업의 실정에 맞는 실천적 연수교육으로 하며, 그 연수대상자로는 고졸정도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2년간의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현 농업자대학교로 하여금 농업 및 농촌을 둘러싼 제정세에 대응한 적절하고도 원활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 농업자대학교 설치운영기획추진사업을 197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부현이 사업실시주체가 되어 농민연수교육시설 운영기획회의개최와 농민연수교육실시에 대한 홍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촌청년 강좌제도는 농업후계자가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기술 등을 단계적으로 즉 기초강좌(농업경영·농가생활의 근대화에 필요한 기초적이고 실무적인 지식 및 기술), 전문강좌(고도의 전문지식·기술 및 경영관리 조직화 등) 및 장래계획을 수립하는 종합강좌를 강좌내용으로 하는 농촌청년강좌제 연수사업이다.

이 제도는 농업개량보급소가 현 농업자대학교 및 시험장 등과 연계하여 관내 고졸 이상의 농업후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집합연수와 자가학습을 병행하여 3년동안 체계적으로 실시된다.

농촌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은 농촌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외선진국의 우수한 농간에 파견하여 선진농업경영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한 해외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촌청소년 해외연수는 농업실습생 파견사업과 단기연수가 있다.

농업실습생 파견사업은 국제농우회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1952년 미국에 농업실습생을 처음 파견하였으며, 현재는 미국, 덴마크, 독일, 스위스,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 1년간 파견되어 우수한 농가에 들어가 농가의 일원이 되어 일하면서 학습하게 된다.

단기연수는 농업시찰을 주목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전국 농촌청소년교육진흥회가 주최하여 유럽 및 미국 지역에 3주내외로 실시하는 농촌청년파견시찰연수제도가 있다. 단기연수는 농촌청년의 참여도가 비교적 높다.

전국 농촌청소년교육진흥회는 1962년 설립되었으며 농촌 청소년의 농업 및 농사생활의 실천적 학습활동을 조장하여 농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연수, 농촌 청소년교육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여 농촌 청소년 육성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全國 農村靑少年 教育振興會, 2001).

- ① 청년 농업자의 집단육성 및 집단활동의 조장에 관한 일
- ② 청년 농업자의 선진지역 유학 연수의 알선 및 원조에 관한 일
- ③ 청년 농업자의 국제교류활동에 대한 원조에 관한 일
- ④ 청년 농업자의 육성확보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정비에 관한 일
- ⑤ 청년 농업사 및 지도농업사의 활동조장에 관한 일
- ⑥ 청년 등의 취농에 대한 계발 및 연수에 관한 일
- ⑦ 취농지원자금의 관리사무의 수탁과 운영에 관한 일
- ⑧ 야츠가다케 연수관에서의 청년 농업자교육에 대한 각종 연수에 관한 일
- ⑨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다) 농업후계자의 자주적 집단활동조장

농업후계자에 대해 농촌사회인으로서의 협동정신을 증진하고 자질을 개발하는 동시에 농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는 집단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으로는 농촌청년이 실천을 통해 습득한 사업활동의 결과를 교환하는 농촌청소년기술교환대회, 농업경영의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방법 및 발전방향을 현 또는 전국단계에서 연구·검토하는 청년농업자회의, 농촌청소년단체의 지도자에 대한 단체운영방법 등을 주로 현단계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농촌청소년지도자 연수 등의 사업을 통해 농업후계자의 집단생활을 조장하고 있다.

라) 청년농업사제도

농업사의 사회적 평가를 제고시켜 전업적 열등감을 없애주고 엘리트 농가를 선정하여 다각적으로 지원하고자 1967년 나가노현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는 농업사제도는 청년농업사육성사업과 지도농업사활동사업이 있는데 여기서는 청년농업사육성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청년농업사제도는 농업자로서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자립적인 조직활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자질을 향상시키고 연대감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내용으로는 청년농업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외에 현단계 또는 보급소단계에서 수시로 연구회를 개최하고, 년 1회 선진지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청년 농업사의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청년농업사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농업자교육실시에서 고교졸업과정 이상의 연수교육 또는 강좌제연수를 이수한 자
- ② 일정한 영농경험을 갖고 장래에도 영농경험을 실천하여 지역농업의 추진자가 될 35세 미만의 자
- ③ 농촌청년집단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이 가능한 자
- ④ 현부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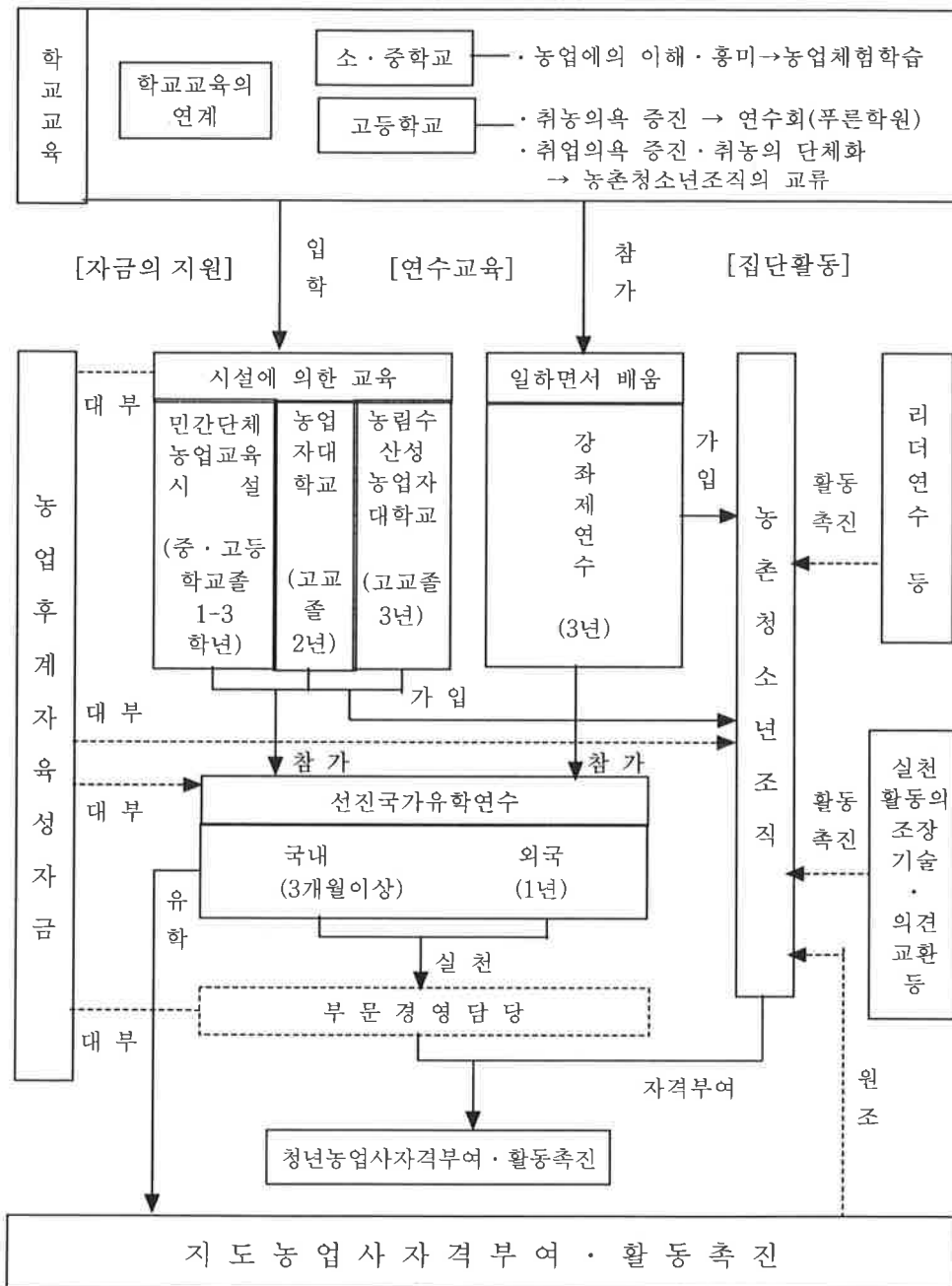
지금까지 일본의 영농후계자가 육성사업을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들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단계별로 일괄적인 교육지도체제가 확립되어 있어 의무교육단계에서부터 농업에 대해 친근감을 갖도록 농업체험학교를 개최·운영하고, 고교졸업예정자에 대한 푸른학원 개최사업을, 고교졸업후 취농중인 자에게는 강좌제연수사업을 통하여 농업기술을 단계적으로 습득하도록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농업후계자를 교육·지도하고 있다.

둘째, 지도력이 있고 영농기술이 높은 수준에 이른 농촌청년에게 청년농업사제도를 통해 농촌청년의 사회적 평가를 제고시켜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농업후계자 육성사업은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착실히 정착되고 있다. 이는 자질이 우수한 농업후계자를 육성·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

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농업을 매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촌환경을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며 후계자를 지역농업진흥의 중간적인 담당자로서 의욕과 능력을 갖춘 농업후계자를 육성한다는 시책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자료 : 조홍수·전영길(1991). 일본과 대만의 농업후계자 육성사업. 안성농업전문대학 논문집 제 23호. p20.

(그림 6) 일본의 영농후계자 육성 체계도

나. 전문농업인력으로서의 성장 유도 정책

1) 농업경영체 육성 정책

일본은 1992년 농업정책에서 이미 경영감각이 우수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체에게 농지집적과 경영기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용지이용증진법의 대개정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법률을 일괄적으로 크게 개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각종 사업의 창설·강화를 골자로 하는 구조·경영정책의 사업추진법으로서 “기반강화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의 농업경영체육성정책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구조정책의 목표로서 종전의 자립 경영 육성정책에서 다양한 “경영체”의 육성과 이러한 경영체에 생산의 대부분을 맡기는 농업 구조로 재편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정책 대상의 명확화·집중화를 위하여 인정 농업자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셋째는 제도의 추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지역의 실정”의 중시를 강조하면서 행정수법으로는 국가-도도부현-시정촌 간의 제휴·정합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넷째는 육성되어야 할 경영체의 한 축으로서 농업생산법인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다섯째는 구조정책의 시책이 종전의 규모확대정책 중심에서 “경영의 규모확대, 생산방식의 합리화, 농업종사형태의 개선, 경영관리의 합리화”등을 포함한 경영정책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농정 구조·경영정책을 체계화시킨 기반강화법의 중심개념인 인정농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① 경영개선지원센타에 의한 경영상담·연수 ② 농업위원회에 의한 농지이용집적 ③ 금융 ④ 세제와 관련된 정책지원이 구상되어 있다. 이하 그 시책과 추진체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6〉 농업경영기반의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시책의 체계와 내용

목 표	과 제	시 책	내 용
경 영 감 각 이 우수 한 효 율 적 이 고 안정 적 인 경 영 체 의 육 성	지역에 있어서 사업 추진의 활성화와 체제의 정비	· 시정촌기분구상의 조기실현 지원	- 기본구상실천활동추진(관계단체·기관이 시정촌기분구상의 조기실현을 위한 활동을 각각 역할분담하여 추진)
	계획적인 경영개선	· 경영개선계획 인정과 경영개선의 추진	- 경영개선을 추진하는 경영체에 대하여 농업경영개선계획 인정제도의 추진 -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인정받은 경영체에 대하여 시책의 집중 - 경영의 기초적 조건 정비
	바람직한 경영체로 유도	· 법인화의 추진과 경영체 질의 강화	- 농업법인의 설립·운영에 대한 개별상담화동, 연수회 등의 실시 - 법인의 자기자본 충실과 규모확대 - 세제면에서의 법인경영 지원
			· 경영지도의 강화
		· 지역레벨의 농업경영체제 확립	- 경영체, 겸업농가 등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작업분담에 의한 지역농업경영의 확립 - 겸업농가가 집락영농조직에 기간농작업의 위탁 촉진 - 집락기능이 저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역의 건조정화활동 촉진
	경영체를 담당할 인재의 확보	· 신규취농 등 인재의 확보	- 농업법인 등에의 취직의 원활화와 농업경영을 담당할 인재의 확보 육성 - 청년농업자의 육성확보대책 등의 충실·강화
		· 농촌여성대책의 추진	- 파트너쉽 농업의 추진
	경영체로의 농지이용집적	· 경영체로의 농지이용집적	- 육성해야 할 농업경영으로 농지이용집적 - 경영체 육성에 필요한 생산기반의 정비 등 - 환지와 이용권 설정의 일체적 추진 - 읍자에 의한 경영체로의 농지이용집적
농업경영의 안정	· 농업경영의 안정	- 자작지의 유지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한 농업자의 경영안정 및 부채경감 - 중산간지역의 농업경영의 개선·안정 강화 - 농업자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용과 공제제도의 활용	
통계정보의 정비	· 농업경영통계조사의 개선 합리화	- 조사에 대한 협력 촉진 및 조사결과와 경영분석에 활용	

자료 : 박문호(1998). 일본 신농정의 농업경영체 육성정책. 농촌경제 제21권 3호. p60.

“기반강화법” 제 1조의 목적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육성하고, 이러한 농업경영이 농업생산의 상당부문을 담당하는 농업구조의 확립”을 위하여 농업경영목표를 명확화·특정화시키고, 그러한 농업자에 대하여 농지의 이용집적, 경영관리의 합리화, 기타 농업경영기반의 강화와 관련한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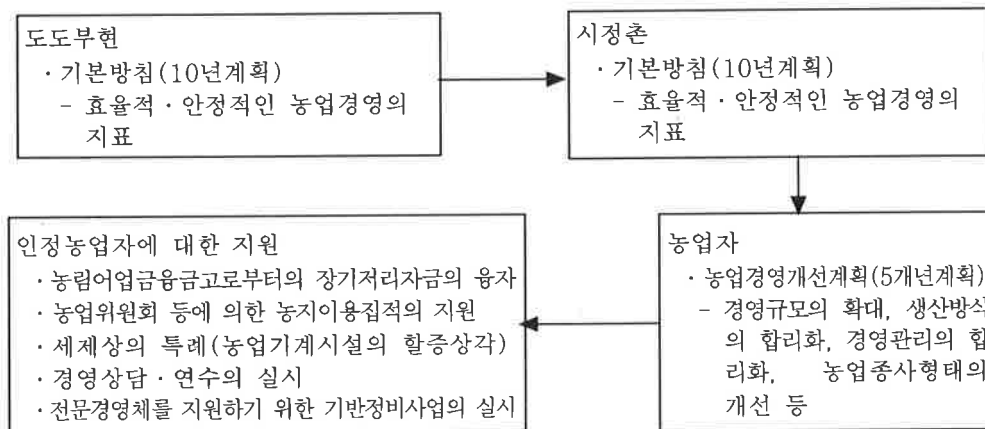
그리고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첫째, 당초의 “농용지이용증진계획”을 “농용지이용집적

계획”으로 변경하였고, 둘째, 농용지이용개선사업에 있어서 농용지이용규정에 “인정농업자”로의 이용권 설정 등을 명기하였고, 셋째,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승인요건으로서 인정농업자의 농업경영의 개선에 이바지할 것 등을 명기하는 등 경영체의 특정화를 통한 선별적 경영지원정책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가) 경영기반강화를 위한 농업경영개선계획의 인정제도 창설

일본은 경영체 육성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농업경영계획의 인정제도”를 창설하여, 계획제도로서의 발본적 체제 정비를 도모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향하는 농업자가 정부의 육성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현단계에서의 기본방침, 시정촌단계에서의 기본구상에 기초하여, 스스로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그 계획 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이다.

기본구상의 경영지표 및 인정농업자의 경영계획에서는 경영대책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래의 규모 집적목표에 덧붙여 생산방식·경영관리의 합리화, 농업종사의 형태 등, 의무적 기재사항이 보다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설정기준은 기본구상과의 정합성, 계획달성가능성의 확실성, 농용지의 효율적·종합적 이용의 적절성(농지이용의 집산화·효율화, 생산조정예의 대응을 포함)의 세가지 점이다.



자료 : 박문호(1998). 일본 신농정의 농업경영체 육성정책. 농촌경제 제21권 3호. p62.

[그림 7] 인정농업제도의 추진체계

기본구상이 그대로 인정농업자의 선정기준이 되고, 그러한 권한이 시정촌의 중추에서 구상되고 있는 점에서 “지역화된 구조정책”으로서의 성격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단, 지역의 조건, 관계자의 의향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할 기본구상 자체가 앞의 법 목적, 그것을 구체화한 현의 기본방침에 크게 제약을 받고 있고 구체적 추진의 수단이 국가, 현의 보조사업 등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에서 실제로는 상당히 한정된 지역정책이라는

기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 인정농업자에 대한 지원체제의 강화

인정농업자의 지원으로서는 첫째, 금융면에서 부기기장을 조건으로 하는 경영기반강화촉진기금의 창설, 둘째, 일정의 규모확대를 조건으로 하는 세제상(청색신고)의 우대조치로서의 기계시설의 할증상각제도 및 농용지 이용집적준비금제도, 셋째, 농지이용집적의 우선적 지원의 명확화, 넷째, 경영개선의 지원체제의 확립을 주요 추진시책으로 하고 있다.

인정농업자가 스스로의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자금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경영체육성종합유자제도(슈퍼종합자금제도)를 창설했다. 장기금융인 농업경영기반강화자금(슈퍼-L자금)의 외에 운전자금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영개선촉진자금(슈퍼 S-자금)이 설치되어 있다. 대부대상, 금리, 대부한도액 등의 대부조건면에서 종래의 자금을 상회하는 것으로 인정농업자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인정농업자가 농업경영개선계획에 따라 경영규모를 50% 이상(축사에 대하여는 건평 20%이상) 확대한 경우에는 기계, 시설, 생물의 감가상각비를 20%까지 할증상각하여 필요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 또 전문경영체의 확보가 어렵고 지역의 농지 유효 이용 및 적절한 보전이 어려운 지역을 주된 대상으로 지역의 농지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관리하게 하는 대신 농업생산법인을 특정농업생산법인으로 지정하여 농용지이용집적준비금제도라는 세제상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이 준비금제도는 특정농업법인이 특정농용지이용 규정에 따라 농용지이용개선단체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해 농지를 매입하거나 빌리거나 농작업을 수탁할 때 필요로 하는 비용의 준비금으로서, 농업수입의 10% 이하의 금액을 5년간 적립할 수 있으며, 이것을 장부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이 적립금을 활용하여 농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압축기장과 압축액의 손금산입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농업위원회 등은 인정농업자로부터 규모확대를 위한 농지이용권설정의 신청을 받아, 인정농업자에게 농지가 집적되도록 농지이용관계의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1995년부터 농용지이용집적특별대책을 실시하여 인정농업자에 대한 농용지의 유동화가 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집락단계에 있어서 농가의 의향 파악, "농지유통화추진원"의 활동 강화 등 집락기능을 활용하여 철저한 농용지이용조정활동을 추진하고, 인정농업자에 대한 농지의 이용집적이 타 지역에 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에 대하여 촉진비를 교부하는 사업이다. 시정촌 농업공사 등이 실시하는 "농지보유합리화사업"에 있어서도 규모축소농가, 이농농가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빌려 인정농업자 등에 매도 및 대부기능을 확충·강화하고 있다.

매매사업에 대하여는 농업담당자 부담경감조치로서 일시 대부후 매각방식을 도입하고, 신규사업으로서 이농희망자 소유농지 등의 신탁의 인수, 농업생산법인에 대한 농용지 등의 현물출자,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이 중간보유하는 농지를 활용한 신규취농자에 대한 연수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농지집단지회시책으로서 농업담당자에 대한 단지적 농지집적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집합적이용권설정사업이 신설되었다.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의 특별사업으로서 실시되는 동 사업에는 "집락단위관리형"과 "집합적 이용권 등 조정형"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전자는 농용지이용개선단체 관할 지구의 농지를 자작지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전부 공사가 빌려서 그것을 농업담당자에게 단지화하여 재분배하는 형태이고, 후자는 그것을 임대차유동농지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소위 "경영체간의 차지교환"을 사업화한 것이다. 이 사업은 합리화사업의 중간보유·재분배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개별적으로 단지화를 꾀하는 경우에 비하여 차지기간의 통일, 차지조건의 조정 등 전문경영체의 농지 집적을 유도하고,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공적기관이 개입함으로써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보조사업으로 인정농업자에 대한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4년 전국, 도도부현, 시정촌의 각단계별에 걸쳐 경영개선지원센타를 설치하였다. 실시주체는 전국단위에서는 전국농업회의소, 도도부현단계에서는 현 농업회의 및 민법법인, 시정촌단계에서는 지역실정에 따라 시정촌, 농업위원회, 농협, 공사 등으로 되어 있다. 주요사업의 내용은 인정농업자의 자격을 꾀하는 자 및 인정농업자에 대하여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인정농업자제도의 설명회개최, 경영개선계획의 작성 및 달성을 위한 연수회, 인정농업자의 능력개발활동으로서 관련이종업간의 교류, 정보수집 제공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인정농업자의 경영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단사, 공인회계사, 사회보험노무사, 세리사 등의 전문가를 도도부현단계에 등록시켜 인정농업자의 상담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다) 농업생산법인을 중시

인정농업자의 정립방향으로서 농업생산법인을 중시하고, 그 촉진방향으로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규제완화의 목적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육성하기 위하여는 경영관리능력, 자금조달력, 거래신용력 등 법인경영의 이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첫째, 사업요건으로서 종전의 농업생산 및 소유농기계의 잉여노동력을 이용한 농작업수위탁 중심의 부대업무에 덧붙여 농축산물의 가공, 저장, 운반, 판매, 농작업의 수탁 등 농업과 관련한 사업가지로 사업의 영역이 확충되었다.

둘째, 구성원 요건의 완화이다. 농사조합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력에 의존한 농업경영은 농업자의 협동조직이라는 농사조합법인의 성격에 위배된다는 입장에서 제도 발족당시에는 조합원의 경영참가를 1/5이하로 엄격히 규제하였으나, 1970년에는 1/2, 1992년에는 외부로부터의 법인 전문가 확보 및 생산된 농사물의 주요고객, 농작업의 위탁자 등 거래 상대방의 경영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4/5로 크게 완화하였다. 또 법인의 자본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보유합리화법인, 농협 등이 자본참여를 통하여 경영재건을 추구하거나, 신규 출자에 의한 법인 설립이 가능토록 하였다. 그리고 생산법인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개별경영과 함께 인정농업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육성·지도사업, 농용지이용집적사업 등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생산법인의 자기자본의 충실과 경영규모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농업생산법인출자육성사업, 농업후계자가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는 농업 생산법인을 특정농업생산법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2) 지도농업사 제도

지도농업사제도는 현재 우수한 농업경영을 수행하고 농촌청년육성에 있어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자의 사회적 평가를 높이고 농촌청년지도 육성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농업자를 대상으로 지도농업사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의 자립적인 조직활동을 촉진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지도농업사의 자격부여와 함께 연간 3회정도의 지도농업사 상호간 정례정보교환회를 개최하는 한편 현 또는 농업개량보급소의 주관하에 지도농업사연구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도농업사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농업기술 및 경영관리능력이 탁월하고 농업경영내용이 지역수준 이상인 자
- ② 농촌청년육성지도를 이해하고 적극적인 지도활동능력을 가진 자
- ③ 가족과 협력, 농촌청년을 받아들여 지도할 수 있는 자
- ④ 각지역의 도부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

지도농업사는 2000년 현재 44개 도부현에서 8,823명이 자격을 얻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273명은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日本農林水産省, 2001).

3. 프랑스

가. 영농정착 지원금(DJA, Dotations aux jeunes agriculteurs)

프랑스 정부는 젊은 사람들을 농업분야로의 취업을 유도하고, 그 취업기회를 확장시키고, 학교단계에서 직업세계로의 전이를 원활하게 하는 것에 오랫동안 정책적 초점을 맞춰 왔다. 이러한 정책의 주요한 목표는 많은 수의 젊은이들(21세 - 35세)의 농업분야 능력을 증진시키고, 그들이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며, 이를 위해 영농정착 지원금이 젊은 농업인력에게 제공된다. 이는 약 2백여개에 달하는 프랑스 정부의 농업지원정책 가운데 가장 비중있게 취급되고 있는 분야의 하나이며, 우수한 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영농희망자가 도시보다 우월한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농업인력을 정예화하고 이를 통해 농촌에서의 장기정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농정착 지원제도의 큰 골격은 정착시 무상으로 지급되는 정착보조금과 영농 시설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저리의 중기(中期) 특별금융(MTS) 및 추가금융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첫째, 영농정착금 지원대상자는 정착 후 3년 이후부터는 당초 계획했던 농업소득을 실현시킬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영농정착자는 향후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셋째, 정부는 이들이 최소한 EU 회원국 농민들의 농업기술수준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도록 농업기술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부부가 공동으로 영농정착을 희망할 때 배우자를 독립인으로 인정하고, 각각에 대해 지원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젊은 부부의 영농정착을 유도한다.

다섯째, 영농조건이 불리한 산간벽지지역에 대해서는 정착금지원과 특별융자에 있어 지원폭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적용, 영농정착제도가 이들 지역에서는 인구유지책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DJA를 지원받은 영농정착자는 정착 후 3년 이후부터는 사전에 제출한 '영농정착사업계획서' 상에 제시된 농업소득계획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실현된 농업소득은 반드시 전국기준소득(RRN)의 60 ~ 120%의 수준이어야 하며, 영농정착자는 정착 후 10년간 농업이 주(소득의 50% 이상이 농업소득인 경우)가 되는 활동을 해야 하며, 농업경영회계장부를 기록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DJA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7〉 DJA의 개요

구분	내 용
지원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35세로서 농업전문대학(BTA)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6개월 이상 현장실습 확인서를 구비해야 함
지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82,000프랑(1프랑=170원), 저리융자 최대 65만 프랑 ● 조건불리의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지원
융자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리 3.8%, 12년 상환
지원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가 先구매 후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이 이를 토대로 지원함 ● 자가노동에 의한 시설물 설치비용도 인정하여 실비기준으로 30%까지는 영수증 없이도 지원 ● 영농정착보조금의 경우는 정착시 50%를 지급하고, 정착 3년 후 경영성과를 평가한 후 50%를 지급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회의소, 컨설팅회사 등의 자문을 받은 영농정착 지원사업계획서 제출

DJA의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28〉, 〈표 29〉와 같이 총 20점 만점으로 하여 크게 4가지 평가항목에 따라 세부 평가항목을 두고, 지역에 따른 지원기준을 설

정하고 있다.

〈표 28〉 DJA의 주요 평가항목

주요 평가항목	점수기준
1. 창조성 및 개혁성에 대한 장려 : Encouragement à la créativité, l'innovation - 품목의 다양성(주요 생산품 제외) Diversification (grandes productions exclues) - 소득 보충에 대한 연구 Recherche de revenus complémentaires - 과감한 확대의 창조성 Création de valeur ajoutée - 생산품에 대한 상업화 Commercialisation d'une partie au moins de la production	/3
2. 사회-전문성에 대한 장려 : Encouragement à l'insertion socio-professionnelle - 농업소득의 전문적 재투자 Réinsertion professionnelle d'un salarié agricole - 단체회원으로서의 가입 Installation au sein d'une forme sociétaire - 전문인 조직에의 참여 Participation à des structures professionnelles - 예측가능한 투자(CUMA, 기업, 상부상조 등) Investissements prévus sous forme collective ou partagée	/3
3. 혁신적 정착의 조건 : Soutien aux installations délicates ou ambitieuses - 축산동물 Contraintes liées aux productions animales - 투자 증액 가능 수준 Niveau élevé des investissements - 유효 재정비율 Ratios financiers moins favorables - 가족을 제외한 토지 접근 Accès au foncier hors cadre familial	/12
4. 작업장소 Occupation de l'espace	/2
합 계	/20

자료 : <http://www.vienne.chambagri.fr/InfosPratiques/Installation/DJA.htm>

〈표 29〉 지역에 따른 DJA 지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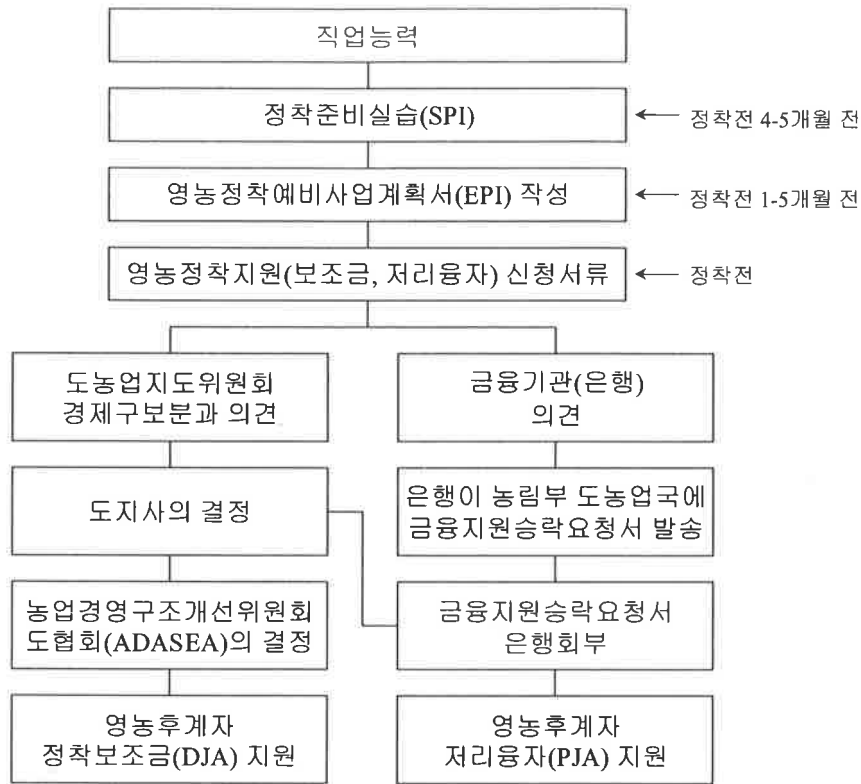
구분		최소	낮음	보통	높음	최대
지역	평야지역	0-4	5-8	9-12	13-16	17-20
	불리지역	0-6	7-10	11-14	15-18	19-20
DJA 총액	평야지역	52,000 F	67,350 F	82,700 F	98,050 F	113,400 F
	불리지역	67,200 F	87,000 F	106,800 F	126,600 F	146,400 F

자료 : <http://www.vienne.chambagri.fr/InfosPratiques/Installation/DJA.htm>

한편, 영농정착지원사업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주로 포함되고 있다.

- 정착후보자 및 농정에 관한 정보
- 경지면적 및 농지보유상황
- 노동력현황
- 영농정착관련 정보(정착계획)
- 경중부문 생산계획(작부체계, 기술경제체계, 수확고, 판매가격, 가변비용)
- 축산부문 생산계획(연령별 가축관리, 기술경제체계, 수확고, 판매가격, 가변비용)
- 조수익 비교(농업활동별 조수익 비교)
- 예상 경영성과, 중간 경영결과
- 고정자본목록 및 투자계획, 감가상각표
- 투자와 재정
- 현 부채상황 및 예상부채
- 농업노동단위당 가치분소득
- 관찰관, 금융상태 예상 대비표

영농정착금의 지원체계는 다음 [그림 8]과 같은 흐름에 따라 DJA와 PJA로 구분되고 있으며, DJA는 농업경영구조개선위원회(ADASEA)에서 대부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8) 영농정착자금(DJA, PJA) 지원체계

영농정착금지원에 대한 사후관리는 국가, 지역/도 농업국, 금융기관(농업은행)이 체계적으로 실시하며, 융자단계에서 철저히 사업 타당성을 토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부실 지원요소를 초기부터 상당부분 제거하고 있으며, 융자 실시 후의 문제는 채권자(은행)와 채무자(정착농가) 간의 문제로 보아진다. 또한 저리융자도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연차별 지원이 대부분 전년도 사업성과에 따라 차년도 지원여부를 결정하므로, 영농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담보 또는 보증인을 통한 회수나 소송과 같은 사례는 매우 드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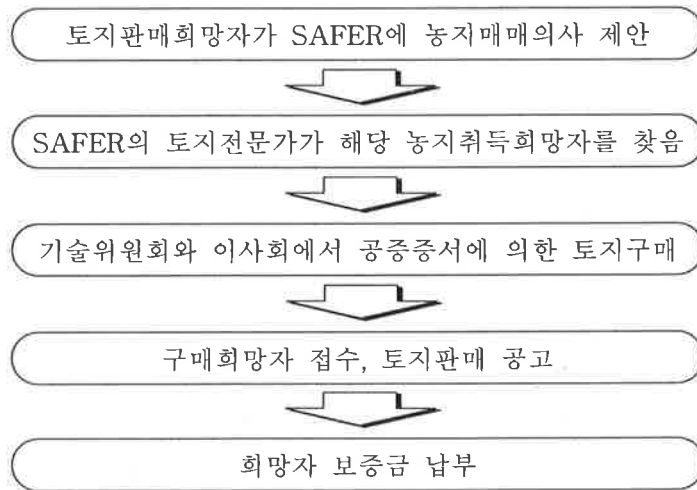
나. SAFER

SAFER(Sociétés d'aménagement foncier et d'établissement rural: 토지정비 및 농촌시설회사)는 1960년 5월 농업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FASASA에 의해 방출된 농지와 경영체, 비농지 등을 구입하고 필요할 경우 정비를 거쳐 전매한다. 비영리목적의 주식회사로서 농림부와 재무부의 승인을 거치며 국가가 파견한 대표들의 감독하에 활동한다. SAFER의 주요 임무는 신규 영농정착, 농업재정착, 기존 경영체의 경영규모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MA(농업공제), Crédit Agricole, 농업회의소, FDSEA, CDJA, CNASEA 등이 재정에 참여하고 설립기원을 이룬다. 현재, 33개의 SAFER가 있으며, 이

중 3개는 해외영토에 설립되었다. 활동범위는 몇 개의 도에 걸쳐 있으며, 행정적 지역범위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중앙조직으로서 SCAFR(Société Central d'Aménagement Foncier Rural)가 있으며, 사업촉진과 업무조정 역할을 맡고 있다.

SAFER는 농지를 되팔기 위해 구입함으로써 토지시장에 통상구매자로서 개입하지만 선매권(droit de préemption)을 가진다(1962년 기본법에 의해 부여됨). 이 선매권은 다른 토지구매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선매권운용은 SAFER가 구매한 토지 전체의 16% 정도로 낮은 수준이며, 1977년 12월 29일 법이 SAFER의 선매가능성을 더욱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SAFER가 토지를 취득하면 양도시까지 최대 5년간 보유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정비사업(배수, 관개, 평지, 개간, 농로 등)을 행할 수 있으며, 농지의 생산적 이용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AFER는 취득한 토지를 지주나 혹은 소유 또는 경영규모가 영세한 인근 경영자 또는 합리적 경영을 할 수 있는 농가 등에 이를 전매할 수 있다. 1979년까지는 우선적으로 기존 경영체의 규모확대를 꾀하는 농가에 토지를 전매해 왔지만, 1978년의 새로운 법령으로 인하여 신규영농정착과 재정착에 더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자료: 김정부 외(1998). 프랑스·독일의 영농규모화사업 관련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 9] SAFER의 토지시장 개입절차

4. 덴마크

유효한 인력을 농업분야로 유인하기 위해 덴마크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는 농업 후계자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는 EU 회원국들간에 공동으로 주요 정책으로 삼아 시행해오고 있는 정책이다. 여기에는 초기 지원과 적응 및 개발 촉진 지원으로 나뉘어지며, 초기 지

원은 젊은 영농인의 농촌 정착을 촉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농업 후계자는 40세 미만의 호주로써, 처음으로 농업 보유물에 투자하는 사람으로 하며, EU에서 지원을 받는다. 단일 지원액은 최대 25,000 ECU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이자보조이다. 또, 농업 후계자가 농촌지역에 빠른 시일내에 적응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토지개선, 토지 재구획, 농가 구제 및 농장관리 서비스, 고품질 농산물의 유통, 농촌경제와 인구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마을의 혁신과 개발 및 농촌유산의 보호와 보전, 농촌활동 및 관련 활동의 다각화, 농업용수 관리, 하부구조 개발과 개선, 농촌 여행 촉진, 환경보전, 자연재해로부터 손상된 농업생산 복구 및 예방수단 도입, 금융 처리 등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5.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이상과 같은 외국 사례가 우리나라의 창업농 지원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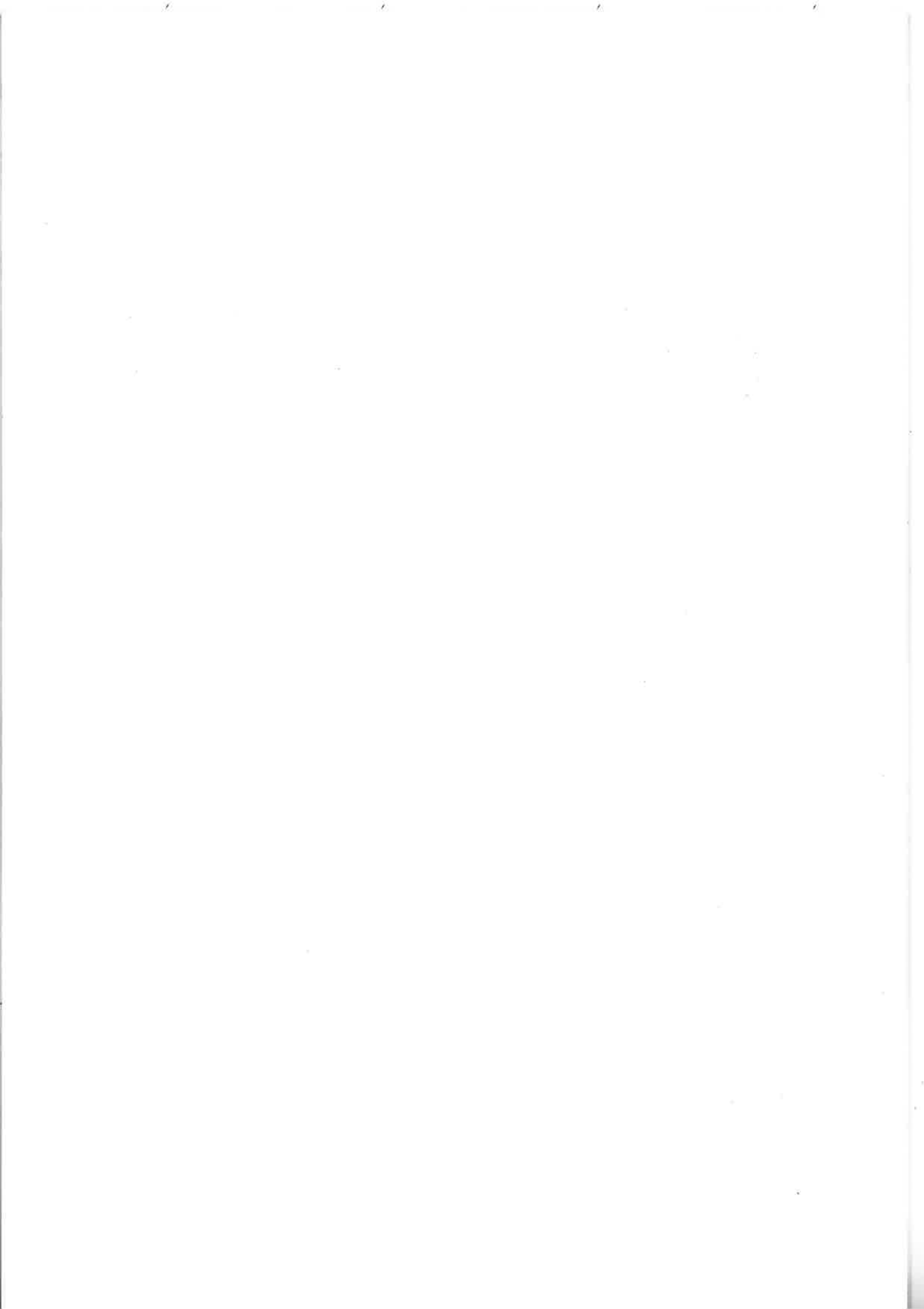
첫째, 지원대상에 있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영농후계자육성법의 경우 지원의 초점을 미래의 영농후계자와 농장주(rancher)가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 맞춰져 있으며, 이들에게 금융대출을 신용만으로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도 주로 청년층을 지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자금 지원이 주로 기존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업계 학교 졸업자 등의 신규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층에 대한 자금 지원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창업농'을 농업을 자신의 전문직업으로 상정한 젊은 농민(농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으로 개념화하여 이들에게 지원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창업농에 선발된 사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영농후계자로 선발될 경우 이후 5년간 신용을 통하여 자금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Morrill법을 시작으로 하는 농촌지도사업이 주립 농과대학교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또한, 법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이들에 대하여 다양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영농정착을 돕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 후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영세하고 일회성에 그치고 있으며, 행정적인 지원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의 영농정착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 법제 및 행정체계의 정비를 통해 각종 지원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발달단계에 따른 육성체계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농업인력에 종사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단계와 진입하여 정착하는 단계, 이후의 성장단계 등 농업인력은 그 발달단계에 따라 그 직업능력 및 유동자금 등이 매우 상이하므로, 각 단계를 구체화하여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창업농으로 선정된 사람이 이후에 지속적인 직업적 발전을 통해 일본의 인정농업자와 같이 더욱 전문적인 직업능력을 가진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단위의 후계농업인력 육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앙정부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후계자를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충청, 경상, 전라 등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비교적 많은 지역에서는 각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과 상호보완을 이루는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IV. 창업농 육성 방안과 논의

1. 창업농 육성의 논리적 기반

창업농은 신규로 농업생산부문에 투입되는 인력으로서 농업에 대한 기술과 지식, 태도를 갖춘 인력이 될 것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영농할 작목에 대한 생산기술과 경영기술의 기본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물론 영농과정에 대한 실제적 체험과정은 거치지 않았을 수 있으나 적어도 지식이나 기본적 기술,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기본 능력은 갖추어 있어야 함을 말한다.

농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영농의욕이나 의지도 필요조건 중의 하나이나 농업에 대한 전문적 기술과 지식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충분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이므로 정착과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창업농으로 선정되기전에 영농에 종사할 충분한 지식과 기술, 경영능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기존 학교 체제나 학교외 교육을 통한 예비자 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농업이 과거와는 달리 인구의 증가에 비하여, 경지면적은 감소하고 있어서 과거보다는 더욱 적은 생산인구로 더욱 많은 인구에게 필요한 농산물을 공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적은 면적에서 보다 높은 생산성을 감당할 인력이 요구되어 농업종사인구 역시 더욱 고도화된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아무런 사전지식이나 기술없이 농업생산업에 종사하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문적 농업 인력 육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인력의 육성단계를 개인의 직업적 발달과 전문농업인력의 육성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세분화된 단계로 세분하여 정책적 적용을 차별화함이 타당하다.

2. 선발 단계상의 문제

선발단계상의 문제는 어떤 사람을 어떠한 방법과 기준으로 선발할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선발은 결과적으로 어떤 절차로 어떠한 대상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연령 기준의 설정 문제, 선발 기준과 방법의 문제, 추진 주체로 구분된다.

가. 지원대상의 연령과 영농경력 문제

현재의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지원사업의 연령은 35세 미만자로 규정되어있고, 후계농업인 지원사업의 연령은 40세 미만자로 규정되어 있다. 취농창업후계농업인은 농업계 학교 졸업과 동시에 창업을 전제하므로 연령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창업은 졸업후 바로 창업한 경우와, 부모의 농업을 상속받은 경우, 타 분야에 있다가 전업한 경우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중 졸업후 창업이나 상속의 경우는 연령이 낮추어야 하나, 전자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하여 후자의 유입을 허용하여야 하므로, 현재의 나이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대학 졸업과 함께 병역을 마치는 시간이 대략 27세 정도이고, 공무원이나 기업체 등에서 입사를 제한하는 나이가 32세라는 것을 고려하면 35세 미만이라는 논의는 비교적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신규인력이 아닌 다른 직업에 있다가 전직하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다른 분야에서 명예퇴직하는 시기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영농종사 경력을 4-5년까지 허용하는 경우라면 35세 미만으로 한정할 때 제한된 인력만이 유입되기 쉽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령 제한을 없앨 경우 정책적 지원의 효율성에서 영농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 효과적 생산에 종사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나이든 귀농자를 우대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연령에 대한 제한은 유지하여, 기존의 후계농업인 제도와 부합하도록 40세 미만의 규정을 그대로 둬야 적절할 것이다. 다만 창업농의 지원대상자는 창업자나 전업자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특히 선발과정을 다단계화로 제한하고, 영농경력은 선발과 창업 과정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는 정도로 활용함이 좋을 것이다. 40세 이상의 귀농자들은 그들의 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이다. 나이의 상한을 없앨 경우, 다양한 연령층이 농업부문으로 유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그들 모두를 후계 농업인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며 신규 인력보다는 전직 인력의 입직을 유도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35-40세 이하의 인력으로 연령 제한을 두고, 그 이상의 귀농자나 전직자는 심의를 거쳐서 경영 자금과 기술과 경영능력의 확보를 지원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이다.

연령 기준의 적절성은 농림업 종사자들의 직업이동동향을 분석하면 파악할 수 있는 데, <표 30>을 보면 쉽게 고찰될 수 있다. 매 5년 주기의 결과자료라는 점을 고려하면, 5년 주기마다 다음 연령층으로 이동하므로 각 연령집단의 외부 유입이나 유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1990년에서 1995년까지의 변화는 1990년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전 연령층에서 감소가 일어났으나 15-19세가 20-24세 집단으로 이동하는 집단에서 2만 5천명정도가 증가하였고, 60-64세 집단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16만명정도의 증가가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집단은 고령화된 다른 연령층이 있으므로 이들을 모두 합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1990년도 65세 이상 인구를 합한 값이 실제 연령층의 변동분이 될 것이다. 그런 경우는 193,993명이 감소되고 있다. 1995년에서 2000년까지의 변화는 15-19세가 20-24세로 유입되는 인구층이 8,520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60-64세가 65세 이상 인구수로 바뀌는 과정에서 증가가 있었으나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리하면, 284,210명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졸업후 농업직에 진입하는 초기 진입 연령대 이후의 연령은 대체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 감소정도가 가장 적어지는 단계는 각 시기별로 45-49세에서 50-54세로 전환하는 연령집단이었다. 그러므로 45-49세에서 50세로 넘어가는 단계는 안정화 단계로 판단된다. 변화유형은 1990-1995년 사이의 기간과 1996-2000년 사이의 기간이 변동 형태가 다르나, 1995년 기간은 25-29세의 감소가 가장 많았으며, 그 이후는 감소정도가 축소되었고, 45-49세가 가장 적게 감소하였으며, 50-54세 집단부터는 다시 증가하였다. 1996-2000년은 30-34세에 가장 낮았고, 45-49세가 감소가 적었고, 다시 그 이후는 감소정도가 컸다. 가장 많이 감소된 연령은 55-59세이고, 가장 적은 나이는 15-19세의 증가시기를 제외하고는 30-34세였다. 그러므로 학교 졸업후 취업하였다가 5년이내의 전직자가 급증하고, 다시 30-34세에서 35-39세의 시기는 신규 유입이 많거나 전직자가 적었다. 그러므로 신규인력의 유입은 35-39세의 시기가 창업농 진입 연령의 상한으로 설정되는 것이 비교적 타당함을 말한다.

영농경력은 실습 단계로 반영되므로 평가에는 반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습 경험을 통한 기술적, 경영적 능력의 습득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는 학교에서 교육받는 기간에 획득되거나 창업후보자 단계에서 확보되도록 함이 필요하다.

나. 창업농 대상자의 수요 규모와 확보 방안

아래 표 30을 보면 60대 이상이 2000년 현재 102만 이상이 되며,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 연령층에 합류할 인구가 57만명이다. 이는 2000년 현재의 농업인구 228만명의 69.6%가 60세 이상이 되어 노령화 단계에 속하게 된다. 현재의 정책하에서는 경영이양농가의 연령기준이 65세로, 61세 이상이 이에 속하는 것을 볼 때, 현재의 농업인구 중 2/3이상이 노령화되어 농업을 떠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므로 신규 입직자가 없는 이상 70만명정도의 농업인구가 전 국민의 식량을 공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신규 입직자의 확보 문제와 입직자의 교육과 실제 농업 경영의 실습을 위한 적절한 실습장소와 담당 인력 확보문제와 관련을 맺게 된다. 은퇴시기에 처한 노령 농업 인구는 기술수준이나 경영수준이 풍부한 계층이므로 이들을 활용하지 않는 한, 앞으로 신규 취농자가 생기더라도 경험을 전수할 인력이 없어서 현장 정착을 하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과정을 거쳐야 함을 말한다. 이는 신규 농업인력의 확보와 함께, 은퇴하는 영농인들을 현장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을 말한다.

〈표 30〉 농림업 취업자의 연령별 동향

구 분	1990 (a)	1995 (b)	2000 (c)	b-a (변동수)	c-b (변동수)	91-95 사망자	96-00 사망자
15 -19세	40728	15570	4746	25177	8520	272	148
20 -24세	123888	65905	24090	-37743	-18218	662	520
25 -29세	195742	86145	47687	-53267	-10163	1216	1087
30 -34세	264812	142475	75982	-48679	-7433	2458	2021
35 -39세	280149	216133	135042	-47951	-21528	3820	4258
40 -44세	310005	232198	194605	-40349	-18576	4835	6242
45 -49세	379326	269656	213622	-37793	-17957	6532	8009
50 -54세	497480	341533	251699	-48727	-22678	12395	11641
55 -59세	472946	448753	318855	-59812	-45841	18304	22449
60 -64세	327569	413134	402912	-193993	-284210	20466	31709
65세이상	354928	488504	617428			97073	144460
계	3,247,573	2,720,006	2,286,668	-543137	-438084	168,033	232,544

주 : 각년령대별 변동수는 각 지점의 인구수를 5년전 나이의 인구수를 뺀 값임. *단 60-64세집단의 변동수는 전년도 65세이상 인구를 합하여 계산된 결과임.

자료: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nso.go.kr/>

농가 인구의 변화는 〈표 31〉과 같다. 농가수의 감소보다 농가인구의 감소가 더욱 크며, 남성의 감소와 생산연령층의 감소와 60세 이상 집단의 증가가 특색이다. 1985년의 62%정도에서 2002년은 96%정도까지 증가하였고, 이들의 대부분이 노령층의 증가와 생산연령층의 급감에 기인된다. 농가의 저출산은 농가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후계농업인의 확보는 시급한 상황이 되고있다.

〈표 31〉 농가인구수 변화

구 분	농가수	농가인구	남자	여자	0-14세(a)	15-59세(b)	60세이상(c)	농가당 인구	(a+c)/b
1985	1,925,869	8,521,073	4,246,286	4,274,787	2,113,997	5,229,704	1,177,372	4.42명	0.629
1990	1,767,033	6,661,322	3,278,764	3,382,558	1,370,335	4,103,839	1,187,148	3.77명	0.623
1995	1,500,745	4,851,080	2,372,999	2,478,081	680,232	2,915,959	1,254,889	3.23명	0.664
2000	1,383,468	4,031,065	1,970,989	2,060,076	458,775	2,239,295	1,332,995	2.91명	0.800
2001	1,353,687	3,933,250	1,902,666	2,030,584	444,466	2,065,807	1,422,977	2.91명	0.904
2002	1,280,462	3,590,523	1,747,802	1,842,721	384,044	1,834,936	1,371,544	2.80명	0.957
변화율*	66.49	42.14	41.16	43.11	18.17	35.09	116.49	63.35	152.15

주 : 변화율 = (2002년수치/1985년 수치) × 100.

자료 : 통계정보시스템 (2003) http://www.nso.go.kr/cgi-bin/sws_999.cgi.

특히 농가당 인구수가 4.42명에서 2.8명으로 감소하여 대개의 농가가 부부 중심이거나 부부외에 1명 정도가 더 있는 정도로 노동력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5-59세 이하의 생산활동 종사인구가 14세 이하와 60세 이상의 비생산활동 종사인구를 부담하는 비율

을 보면 1985년의 0.63정도에서 2002년은 0.96으로 152%이상의 증가가 있었다. 물론 경제활동 참가인구는 60세 이상도 있으므로 그 수치는 감소될 것으로 보이나, 이들 경향이 과거와는 달리 노령인구의 증가와 관련이 있고, 14세 이하의 감소와 60세 이상의 증가, 15-59세 인구의 감소로 결과적으로 농가부문에서는 신규 취농인구의 확보가 점차 어려워짐을 말한다. 이는 앞으로의 생산 농업은 후계 인구의 확보가 결정적인 문제로, 노령화와 부녀화로 대표되는 농업생산인구의 감소 동향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창업농 단계는 예비 후계자와 창업준비, 창업단계의 인력 확보로 한정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창업농의 유입 인력은 학교졸업이나 군필후 정착하는 신규 취농자가 주축이 될 것이다. 그 외에는 U-turn 귀농민과 북한 탈북자중 보호대상자, 여성 농업인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U-turn 귀농민은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고, 경기의 부침에 따라 변화할 것이므로 정확한 추정이 어렵고, 일정 연령이 지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갖추었거나 투자할 여력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낮을 것이다.

현재 농업 분야로 취업한 인력은 표 32와 같다. 대체로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자는 최근 그 숫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졸업자중 0.02%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0.37%, 전문대학은 0.39%, 대학은 0.40%정도로 학력이 높을수록 농림어업 분야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각급 학교 취업자 중 농림어업취업자의 비율은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 취업자의 0.87%,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 취업자의 0.81%, 전문대학 출신 취업자의 0.54%, 대학 출신 취업자의 0.76%가 농림어업 취업자이다. 대략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 취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기는 하나, 규모는 일반계고등학교 출신자는 100명 이하,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자는 844명 전문대 출신자 900여명, 대학 출신자는 777명에서 980명내외의 인력이 공급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자보다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출신자들의 공급규모가 증가하고 있어서 800-1000명 이내의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근의 결과를 보면 매년 3000명 이내의 농업인력이 농업분야 인력으로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규모와 내용이 창업농 확보라는 점에서 적절인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표를 보면 최근에는 일반계 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보다 전문대학과 대학 출신자의 농업분야 진출이 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졸업자중 농업분야 취업율은 1990년이래 모두 1%미만이다.

3000명 정도의 신규 공급 규모가 적절인가를 검토하려면 경지면적의 변동이나 생산량, 식품소비경향, 인구의 증가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 모두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곤란하며 어느정도 오차는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 증가와 식품 소비량을 고려할 때 이들 소비량을 충족시킨다는 가정하에서 추정하였다. 식품의 생산은 기술 수준의 향상에 의한 증가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기술수준의 향상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식품 소비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농업인구 규모와 감소 인구간의 차이를 추정하였다. 이 차이를 최소 규모의 공급한계치로 설정하였고, 최대로는 현재 농업

〈표 32〉 학교 유형별 졸업생의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분야 취업률 (단위: 명, %)

구분	년도	졸업자수			농림어업 취업자수			졸업자중 농업분야취업률			총취업자중 농업분야취업률		
		계	여자	남자	계	여자	남자	계	여자	남자	계	여자	남자
일반계 고등 학교	1990	2162626	948481	1214145	15135	2407	12728	0.70	0.25	1.05	7.64	1.93	17.36
	1995	2212004	974258	1237746	6068	1032	5036	0.27	0.11	0.41	2.87	0.97	4.80
	2000	2158136	991706	1166430	1313	165	1148	0.06	0.02	0.10	1.75	0.50	1.66
	2001	465778	221358	244420	78	7	71	0.02	0.00	0.03	0.61	0.11	1.10
	2002	439586	209905	229681	90	19	71	0.02	0.01	0.03	0.87	0.39	1.31
실업계 고등 학교	1990	1346293	677159	669134	44171	5500	38671	3.28	0.81	5.78	4.82	1.10	9.29
	1995	1342678	720529	622149	39562	9204	30358	2.95	1.28	4.88	3.82	1.61	6.56
	2000	1432963	745447	687516	12069	3119	8950	0.84	0.42	1.30	1.44	0.67	2.40
	2001	270393	133948	136445	1411	370	1041	0.52	0.28	0.76	1.08	0.50	1.81
	2002	231127	113912	117215	844	180	664	0.37	0.16	0.57	0.81	0.31	1.42
전문 대학	1990	413729	204665	209064	4697	959	3738	1.14	0.47	1.79	2.46	0.84	4.88
	1995	582879	316073	266806	4666	1016	3650	0.80	0.32	1.37	1.34	0.49	2.57
	2000	964057	533455	430602	4250	1227	3023	0.44	0.23	0.70	0.69	0.34	1.17
	2001	232972	130471	102501	967	259	708	0.42	0.20	0.69	0.57	0.26	0.97
	2002	239114	135811	103303	943	345	598	0.39	0.25	0.58	0.54	0.34	0.82
대학	1990	782174	288276	493898	5522	636	4886	0.71	0.22	0.99	1.63	0.71	1.96
	1995	899268	349194	550074	5381	916	4465	0.60	0.26	0.81	1.17	0.64	1.42
	2000	992131	430077	562054	4456	1003	3453	0.45	0.23	0.61	0.92	0.51	1.21
	2001	239702	112443	127259	777	208	569	0.32	0.18	0.45	0.65	0.38	0.88
	2002	244852	117973	126879	980	290	690	0.40	0.25	0.54	0.76	0.47	1.03

자료: 통계정보시스템(2003) <http://www.nso.go.kr/>에서 정리함.

인구의 연령분포를 고려하여 이들 인구를 대체할 인구수로 비교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들 추정의 전제는 인구 모두에 대한 식량을 공급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될 것이다.

〈표 33〉을 보면 인구수의 증가는 매년 평균 439,000명 정도이다. 연간 1인당 양곡, 원예작물, 축산물의 평균 소비량은 407.1kg 정도이다. 식품의 소비량에 인구 증가수를 곱하면 매년 178716.9톤의 식품 공급량이 증가되어야 한다. 1ha당 10톤의 평균 생산량을 고려할 때, 경작면적으로는 매년 17871.69ha정도가 증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작면적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농민의 공급이 없다면 개인의 한계 이상의 농지는 의미가 없다. 농민 1인당 평균 7.529톤의 식품을 생산한다고 할 때, 매년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소비를 감당하려면 23,738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하다. 이는 경작면적이 1,7871ha가 증가하거나 23,738명의 농업종사인구가 증가하여야 인구증가에 따른 현재 수준의 식량 공급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이들 수치는 농업인구의 생산성 증가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단순 추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보다는 인구수에 식품소비량을 곱한 결과를 농민 1인당 생산량으로 나눈 결과는 2000년까지의 경향을 고려하면 인구감소가 매년 101,738명 정도인데, 이는 현재 감소되는 경향인 110,700명보다 8,962명이 적은 규모로, 현재 매년 3000명 정도의 신규 농업인구의 진입이 포함되어 나타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12000명 정도의 신규

농업생산인력의 공급이 필요하다. 게다가 매년 사망자로 탈락되는 인구가 평균 5만명정도 되므로 이들도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62000명이 공급되어야 할 최소규모가 될 것이다. 이들 수치는 현재의 소비량이나 기술 수준, 인구의 증가가 계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진 추정이므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대략적인 결과로 현재의 농업인구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을 추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앞의 표 30을 참고하면 2010년까지 현재 농업인구 228만여명중 159만명의 농업인구가 60세 이상의 은퇴연령 집단이 되고, 70만여명만 남는 형태이므로, 현재의 생산성과 소비량을 유지하고, 인구증가는 현재의 동향을 유지한다고 할 때 2010년은 51,294천명이고, 소비량은 인구수에 407.1kg를 곱하면 20,881,787.4톤으로, 현재의 1인당 평균 생산량을 유지한다고 볼 때 2,773,883명이 된다. 2001년의 생산수치로 나누더라도 1,870,626명으로 187만명에서 277만명정도의 농민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은퇴연령을 61세이후로 설정하면 117만명에서 207만명의 농업인구의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재의 3000명의 공급이 비약적으로 년 평균 10만이상의 공급이 이루어지거나 생산기술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거나 농경지의 이용율이 비약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농업의 피폐화는 예견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들을 대체할 인력이 2010년 이전에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10년간 매년 10만-20만이상의 농업취농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표 33〉 인구증가와 식품소비량에 기초한 농업종사인력 규모 추정표

구분	인구수 (천명)	농림업인구 (천명)	경지 면적 (천ha)	식량 생산량 (천ton)	원예 작물 생산량 (천ton)	축산물 생산량 (천ton (계란:백만개))	식품(식량, 원예, 축산물)생산량 (천ton(계란 :백만개))	년간1인당 양곡소비 량(kg)	년간1인당 원예작물 소비량 (kg)	년간1인당축 산물소비량:k g(계란:개)	년간1인당소 비량(식량, 원예, 축산물 (kg:개))	1ha당총 생산량 (천ton)	농민 1인당 생산량 (ton)	식품 소비량에 의한추정농 업인구(명)
1980	38,124	4,429	2,196	5,324	8,509	876 (4543)	14,709.0 (4543)	195.1	142.6	22.1 (119)	359.8 (119)	6.6	3,321	4,130,387
1985	40,806	3,554	2,144	6,990	9,227	1596 (5390)	17,813.0 (5390)	181.7	134.6	38.2 (131)	354.5 (131)	8.3	5,012	2,886,219
1990	42,869	3,100	2,109	6,635	10,443	2527 (7151)	19,605.0 (7151)	167.0	174.4	62.7 (167)	404.1 (167)	9.2	6,324	2,738,627
1995	45,093	2,419	1,985	5,476	12,886	3073 (8261)	21,435.0 (8261)	160.5	213.9	75.2 (184)	449.6 (184)	10.7	8,861	2,287,983
2000	47,008	2,203	1,889	5,911	13,711	3486 (8682)	23,108.0 (8682)	153.3	223.2	91.1 (184)	467.6 (184)	12.2	10,489	2,095,619
2001	47,343	2,105	1,876	6,200	13,798	3502 (9623)	23,500.0 (9623)	145.5	?	96.2 (201)	? (201)	12.5	11,163	?
변화량	439.0	-110.6	-15.2	41.7	251.8	125.0 (241.9)	418.6 (241.9)	-2.3	4.0	3.5 (3.9)	5.3 (3.9)	0.2	0,373	-101,738.4
평균	43,540.5	2,968.3	2,033.1	6,089.3	11,429.0	2,510.0(727 5)	20,028.3 (7275)	167.1	177.7	64.2 (164.3)	407.1 (164.3)	9.9	7,528	-

주 : 추정농업인구는 반올림 적용. 1인당 소비량과 생산량 계산에서는 계란수 제외.
 자료 :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연보(2002), 농림통계연보(2002)를 참고하여 추정함.

현재의 농업생산인구의 추정은 농업생산직에 대한 추정이므로 보다 세분된 분야의 구분이 필요하다. 이들 부분에 대한 창업이 효과적인 학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으므로 보다 적절한 학과와 분야를 구분함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취농 창업에 적절한 학과들의 인력 공급 규모를 추정함이 적절할 것이다.

농업계 학교수준에 따라 전공분야별 총취업자수를 파악하여 볼 때, 〈표 34〉와 같이 나타

나고 있다. 이는 취업가능인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총취업자수는 매년 20,000명수준에서 6,500명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농업계 분야의 학과 개편이나 졸업 후 진학을 증가나, 취업 대기자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앞으로 10년내에 매년 10만-20만명이상의 농업인력확보는 현재의 취업자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결국 취업대기자나 졸업자의 확보와 학과 개편 억제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최근 계속된 농과계 대학의 학과 개편은 농업생산분야의 학과들의 축소와 학생수 감축으로 부족한 영농인력으로서의 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농업계 학교 졸업생이외에도 비 농과계 학교 졸업생중 농업에 관심을 갖고 취농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취농에 투입할 능력을 길러줄 교육기관의 확대가 시급히 요구된다. 이는 기존의 교육기관의 확대와 농업계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대학등의 농과계 학교에 상설 취농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희망자를 교육하여 후보자를 확보하고, 농업계 학과의 개편을 억제하고, 졸업자중 최대한 취농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각 학교 졸업자의 10%를 농림업부분으로 취업을 유도하면 8만명정도를 확보하고, 이들외에 귀농자의 확보를 2만이상 확보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한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하나의 방법은 61세나 65세를 은퇴 기준으로 설정하지 말고, 70세로 은퇴 기준을 삼아 이들이 생산에 종사하되 실제적인 영농기술을 전수하는 실습 지도교사로 확보함도 필요하다. 이들의 영농종사는 신규인력의 확보가 어려울 때 시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의 보충이 가능한 실정으로 이들의 건강을 유지하여 생산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은 보조적 방안이므로 학교졸업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표 34〉 학교수준에 따른 농업 세부분야별 취업자수

구분	1986 - 1990					1991 - 1995					1996 - 2000					2001					2002				
	실업계 고교	전문 대학	계	실업계 고교	전문 대학	계	실업계 고교	전문 대학	계	실업계 고교	전문 대학	계	실업계 고교	전문 대학	계	실업계 고교	전문 대학	계	실업계 고교	전문 대학	계				
	28,634	1,813	2,500	32,947	24,575	2,091	4,720	31,386	8,193	1,728	4,392	14,313	1,208	366	881	2,455	1,208	366	881	2,455	816	373	981		
식물생산분야	3,720	552	54	4,326	2,422	813	111	3,346	1,095	952	187	2,234	169	230	11	410	162	264	96	522	-	-	344		
조경분야	-	256	1,494	1,750	-	196	2,528	2,724	-	-	1,997	1,997	-	-	372	372	-	8	336	344	-	-	-		
환경임학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축산분야	15,683	1,447	2,841	19,971	11,968	2,140	4,489	18,597	2,627	1,580	3,309	7,516	349	301	543	1,193	228	267	542	1,037	228	267	542		
생물분야	-	-	-	-	-	-	-	-	66	-	2,183	2,249	21	-	216	237	18	-	228	246	18	-	228		
농기계분야	3,498	205	447	4,150	5,274	147	807	6,228	5,015	-	533	5,548	756	-	101	857	603	-	74	677	603	-	74		
농토목분야	4,677	391	-	5,068	4,628	269	-	4,897	1,358	94	52	1,504	139	-	4	143	126	124	27	277	126	124	27		
식품분야	957	2,141	1,589	4,687	2,057	3,992	2,563	8,612	3,284	3,098	1,132	7,514	572	421	-	993	529	14	-	543	529	14	-		
농업전산분야	-	11	-	11	616	13	-	629	2,404	-	-	2,404	370	5	-	375	231	-	-	231	231	-	-		
환경분야	-	830	-	830	-	569	-	569	238	488	161	887	31	-	64	95	52	19	47	118	52	19	47		
자영농과분야	2,468	-	-	2,468	1,783	359	-	2,142	1,085	-	-	1,085	327	-	-	327	200	-	-	200	200	-	-		
농업경영분야	-	262	2,235	2,497	-	-	2,353	2,353	276	199	1,624	2,099	94	24	189	307	39	-	153	192	39	-	153		
기타	702	664	-	1,366	572	238	-	810	-	-	19	19	-	-	-	-	-	6	10	16	-	6	10		
합계	60,339	8,572	11,160	80,071	53,895	10,827	17,571	82,293	25,641	8,139	15,589	49,369	4,036	1,347	2,381	7,764	3,004	1,075	2,494	6,573	3,004	1,075	2,494		

다. 선발 방법과 기준의 문제

선발 방법과 기준의 문제는 기존의 기준이 창업농을 선발하는 데 적절한가의 문제이다. 이는 가장 바람직한 창업농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고 이들을 선발하는데 어떤 방법이 적합한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창업농은 궁극적으로는 농업인으로서 성공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는 영농정착에 성공하고 농촌에서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인력을 선발함이 핵심이 될 것이다.

현재 창업농 대열에 유입될 수 있는 유형은 7가지 형태일 것이다. 각종 농업계 학교 졸업자, 중학교 졸업후 진학을 포기하고 영농을 시작한 영농 4-H회원, 농어촌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자로서 진학을 포기하고 영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 도시로부터 유입되거나, 또는 이농자가 농촌으로 귀농하여 신규로 농업에 취농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그 외에 북한 이탈 주민 중 보호대상자나 기존 농업인의 배우자나 미혼 여성들이 있을 수 있다.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인력이라면 농업분야 정규 직업교육을 이수한 농업계 고등학교 출신자나 한국농업전문학교와 여주농고 부설 전문과정을 비롯한 농업계 전문학교나 농과계 대학 출신자들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들 중 바람직한 유형을 밝히려면 일단 성공한 영농인의 특성은 무엇인가를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이는 선발 방법을 결정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된다. 성공한 농업인으로서 국가가 사용한 용어는 신지식 농업인이라는 용어였다. 신지식 농업인의 의미는 “학력과 전문자격증에 관계없이 새로운 발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상을 개선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능률을 실현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농업·농촌의 변화를 주도하는 농업인”(농림부, 1999)으로 규정하였고, 지식농업은 “농업의 생산 및 유통과정, 경영 등 농업과 관련된 제 과정에서 지식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시장을 개척해나가는 지식 집약적인 경영형태의 농업”(이용환 외, 2000, p.58)로 규정하여 21세기가 지식기반사회이고 농업 역시 지식에 기초한 농업을 영위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언급된 논의일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 농업에서 요구되는 농업인력은 ①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처하는 농업인력, ②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이해와 열정을 갖는 농업인력, ③농업경영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하는 농업인력, ④농업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농업인력, ⑤농업 및 농촌을 주도하는 농업인력, ⑥국제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력, ⑦ 분야별 단체 결성을 통한 협동능력을 갖춘 농업인력이어야 한다고 최종적인 인간상을 기술하고 있다(정철영 외, 2001, pp.7-8). 이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자질을 농업인력으로서의 자질과 직업인으로서의 자질로 구분하고, 다시 기본자질과 전문자질로 구분하였는데, 농업인력으로서 필요한 기본자질은 농업흥미, 농업적성, 농업애착심, 농업의지 및 신념, 농업기초 지식 및 기술을,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기본자질은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 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 이해 능력으로 제시하였고, 농업인으로서 필요한 전문자질은 농업인으로서의 사명감, 농업전문지식과 기술개발, 창

의적 문제해결력, 자기계발의지, 농업경영능력, 마케팅 능력을, 직업인으로서의 전문자질은 지식·정보의 생성능력, 저장능력, 활용능력, 공유능력을 들고 있었다. 이는 성공적인 농업인의 자질을 고찰하여 반영한 결과로(이용환 외, 2000, pp.63-64) 성공적인 농업인이 되려면 이와 같은 자질을 갖추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정성봉의 연구(1987)에 의하면 농업계 고등학교 출신 자영자의 영농정착 요인을 연구한 결과 영농정착의 이유가 부모의 농장과 토지를 물려받아야 하거나 흥미와 적성이 맞거나, 농업교육이수(4-H, 또는 영농학생회 활동 포함)등의 긍정적 의견이 정착자들에게 많았고, 할 수 없어서와 같이 부정적 의견은 13.6%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가장 많은 응답은 부모의 농장과 토지를 물려받아야 하기 때문, 할 수 없어서, 흥미와 적성이 맞기 때문에와 농업교육이수가 다음 순서로 부모의 토지 상속과 흥미의 문제가 중요한 선택동기였음을 말한다. 또한 이들의 영농정착 영향요인을 파악한 결과 개인적 변인이 15%, 교육관련변인이 16%, 가정적 변인이 6%, 사회적 변인이 25%로 영농 정착 정도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영대의 연구(1992)에 따르면 농가 가구원의 세대에 따른 직업선택 유형을 보면 아버지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는 자녀들의 직업선택이 학력이 낮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상속면적이 클수록, 형제서열이 높을수록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직업이 농업이 아닌 경우는 학력이 낮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상속면적이 클수록, 형제서열이 높을수록, 부모소유면적이 적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영농에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 이는 학력과 연령, 상속규모, 형제서열과 부모의 소유면적,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영농 종사에 영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의 요소들을 고려할 때 농업교육에 대한 경험, 농업에 대한 흥미나 적성, 농업에 대한 애착심이나 의지, 사명감, 농업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기술, 농업경영능력과 마케팅 능력,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 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 이해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자기계발의지, 지식·정보의 생성 능력, 저장능력, 활용능력, 공유능력 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능력 모두를 갖춘 사람들을 초기에 선발하기는 어려우므로 다양한 단계의 선발단계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즉 농업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기술, 직업인으로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을 갖춘 사람들 중에 농업에 대한 애착심이나 의지, 사명감을 갖추었는가를 고려하여 예비후보자를 선발하고, 예비후보자 중 부모의 지원이나 영농기반의 확보 가능성을 기준으로 두 번째 단계의 선발과정을 거치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농업경영능력과 마케팅 능력, 지식 정보의 생성, 저장, 활용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도록 하여, 통과한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3-4단계에 걸친 선발은 긴 기간을 요구하므로 1단계를 거치면 자금 지원을 고려하되, 예비 후보자 형태로 학교 졸업자나 재학자를 중심으로 선발하고, 부모의 지원이나 영농기반의 확보는 학교 졸업과 동시에 또는 1-2년의 경과기간이나, 영농규모화 사업에 의한 61세 이상의 영농기반승계를 지원하는 정도의 기반 확보기간을 두며, 일정 정도의 현장실습을 겸한 실제적 영농경험을 갖도록 지원한다. 이때는 과제 자금 형태의 자금 지원을 제공한다. 이때 영농 4-H의 과제자금 지원을 이용하되,

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이때는 농업계 학교의 농장이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반시설확보에 대한 자금이 아닌 운영자금 형태로 사용하되, 성패에 관계없이 그 수익을 얻어서 기반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함이 좋을 것이다. 3단계는 경영능력과 마케팅 능력, 지식정보의 생성, 저장, 활용 능력을 주로 심사하며, 이 단계까지는 합격과 불합격만으로 구분하여 창업농을 선발하되 이 과정에서 통과한 경우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자금 지원의 결정을 마지막 단계에서 하도록 함이 좋을 것이다. 이와같이 선발과정에서 4단계를 거치는 경우 최소 4년 정도의 기간을 요구하므로 초기 이탈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나 농업계 학교 출신자의 확보를 전제한다면 예비단계가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방학 기간을 이용한 기술교육과 창업교육을 이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귀농 결심자라도 직장에 있으면서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매 단계마다 심사나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 후계자는 교육을 받으며 함께 경험을 쌓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계 학교 담당 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두번째 단계와 세번째 단계는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로 개인별로 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세번째 단계가 통과된 경우는 창업농으로 선정된 것이므로 그 이후 자금 지원 결정은 사업계획서에 기초한 규모와 지원유형의 결정이므로 상대적으로 사업계획이 불리함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없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현재와 같이 선발된 경우는 컨설팅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현재의 취농후계농업인 선발방식으로서의 종합평가제는 다양한 항목을 한꺼번에 고려하여 단기간에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360점이나 300점 이상자를 추천하고 순위를 결정하여 순위에 따라 선발하는 현 제도는 외관적으로는 공정성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나 영농의지 평가와 같은 애매한 항목의 평가가 어렵고, 사업계획 능력에 없는 사람들이 심사를 받음으로 인하여 대개 컨설팅 업체나 인력에 의한 계획서 제출이 되기 쉽고, 영농능력이나 사업계획서가 형편없더라도 선발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또한 기준에 있어서도 학력과 현장교육에 대한 점수 배점이 타당하지 못한 실정이다. 즉 이수시간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학교 재학생보다 실무 강좌를 받은 사람들이 훨씬 유리한 형편이다. 즉 농업계 학교 출신자가 훨씬 많은 시간을 이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 체제하에서는 농업계 학교 출신자의 취농이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므로 이들 부분도 학점이나 단위 시간으로 환산하여 교육기간을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환산함이 타당할 것이다. 즉 전문교과의 이수 단위를 시간수로 환산하여 영농교육을 받은 시간수와 학점수를 비교하여 차등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규인력의 진입의 곤란점이 농지확보나 농업기반 조성자금 및 시설 확보 자금의 곤란, 농기계 등의 농업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가장 심하므로(안덕현 등, 2001, p.108), 결과적으로 농지와 농업기계 등의 농업기반 확보가 절대적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자금 수요가 많은 편이다. 그러므로 선발과정에서 농업기반확보를 최소로 하는 대상자가 선발되는 것이 수익을 얻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영농정책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진입 후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후의 육성과정에 자금 수요가 발생하므로 운영자

금의 지원과 안정적인 가격정책과 유통구조 개선, 생산 및 경영기술 지원과 경영정보의 제공(안덕현, 2001, pp.115-116)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적절한 대상자의 선발은 비교적 장기간에 해당하는 다단계 평가가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기존의 선발기준은 이는 현재의 선발방식보다 다단계 선발로 전환하되, 교육의 문제를 합격과 불합격의 제도로 정례화하면 될 것이다.

라. 추진주체

창업농 지원사업의 추진 주체가 누구이어야 하는가를 검토하는 문제이다. 현재 시장이나 군수가 사업주관기관이고, 농업기술센터(특별시, 광역시, 기타시), 읍·면에서 대상자를 심의·추천하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상자를 선발 및 지원액 결정, 대상자 교육, 사업실적확인, 사후관리를 하며, 선발자를 통보하면 농협에서 사업비 지원 및 지원용자금 관리를 하게 한다. 선정된 대상자들의 관리는 사업계획서는 농업기술센터나 컨설팅업체에서 자문을 받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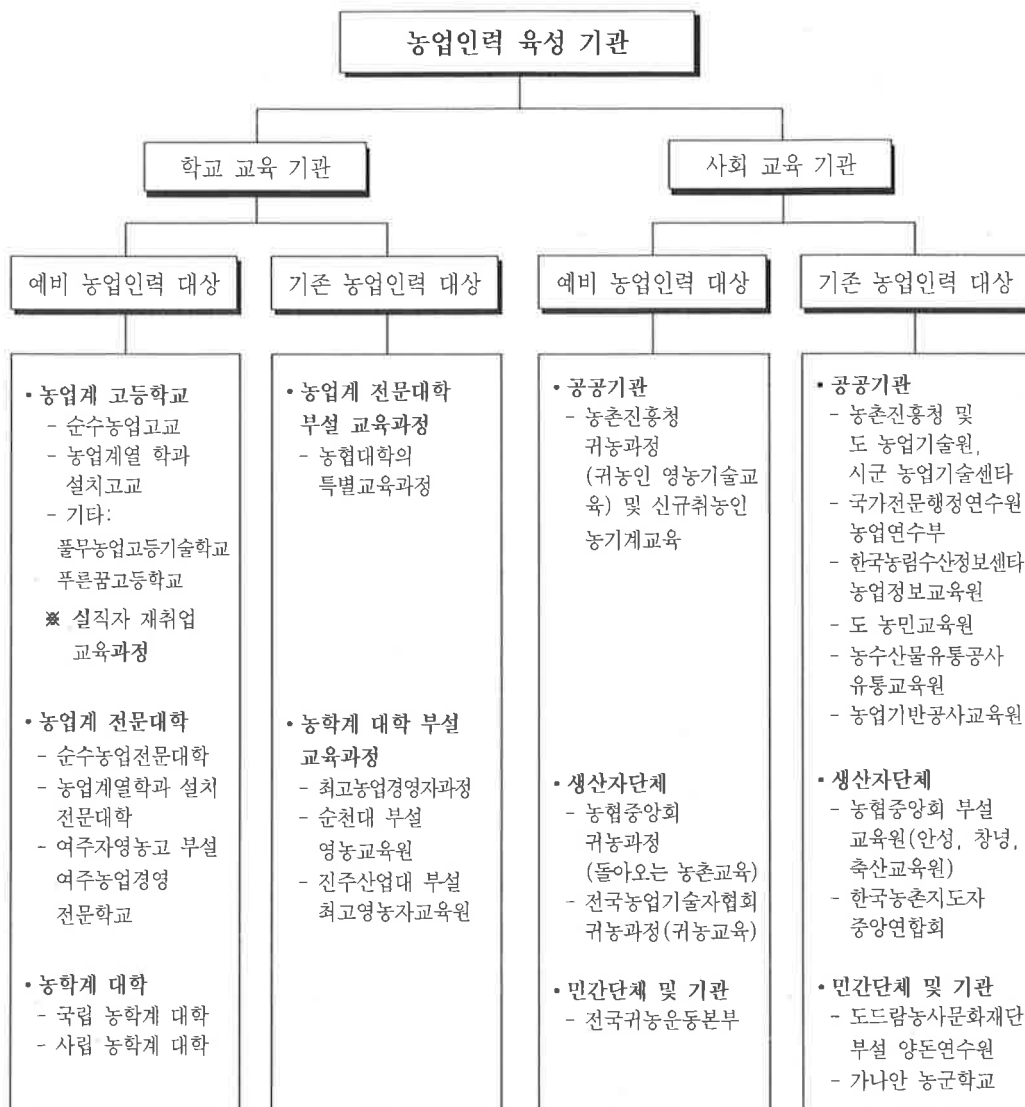
현재 창업농 지원사업을 비롯한 후계 농업인이나 취농 창업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은 시장이나 군수가 사업을 주관하되 자금의 지원은 농협에서 시행하는 형태이다. 자금 형태는 시설·개보수 자금, 운영자금, 농기계자금, 농지구입자금, 농업 기반 시설 자금, 가축입식 자금, 묘목 및 종근 구입 자금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중 운영자금, 시설 개보수 자금, 농기계 자금은 농업종합자금에 의하여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다. 농업종합자금 지원제도는 대출취급기관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대출후 사후관리까지 일괄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농지 자금 역시 농업인이면 영농규모화사업에 의하여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창업농 지원 사업의 핵심인 자금 지원과 관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는 현재와 같이 선발 및 관리와 자금지원을 분리할 것인가와 사업에 대한 평가와 지원을 종합자금제와 같이 할 것인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종합자금제는 현재 영농에 대한 자금 지원만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신청자금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평가하여 자금 지원기관이 자율적으로 선정한다는 점이 경영에 대한 평가를 비교적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와 같은 창업농을 비롯한 후계농업인 지원정책은 선발 및 관리와 자금 지원의 분리 운영은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사업경영에 대한 평가가 무시되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영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어려운 신규 창업농들에게 사업타당성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업 계획의 수립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므로 엄격한 의미로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한 선발만으로 운영한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들 계획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영상담과 지원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종합자금제는 한 방안이 될 것이나, 창업농 지원자가 아이디어는 있을지라도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받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을 엄격하게 하여 후계자의 진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강화하기보다는 선발후 자금 지원과정에서 충분한 사업계획서 검토와 조언이 이루어지도록 함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금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심사와 조언과정은 필요할 것이므로 후계 농업인들을 사업계획서를 제외한 다른 항목으로 일단 선발하고, 그에 기초하여 개인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자금을 지원하거나 컨설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마. 후계인력 육성체제

현행 농업인력의 육성 체계를 기관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그림 10]과 같이 학교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교육기관은 주로 예비 농업인력 육성을, 사회교육기관은 기존 농업인력에 대한 재교육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자료 : 정철영(2002).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농업인력 양성.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34권 제4호. p. 14.

(그림 10) 농업인력 육성기관 차원에서의 농업인력 육성체계

이 중에서 농림부에서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전문농업인력 육성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종합해보면, 농림부는 농업인력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을 담당하고, 각 지역의 농어촌발전심의회 및 지도협의회에서 후계자 사업자금 시군 배정, 예비후계자에 대한 영농 종사 적격여부 심사, 후계자 선발 및 지원액 확정, 전업농가 선발, 사기진작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농촌진흥청(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은 예비후계자 육성·확보, 선진경영 모델 발굴 제시 및 경영설계 지도, 농업계 학교 및 선진농장 위탁 알선, 영농경영 기술교육 및 지도 등을 담당하며, 농업협동조합은 예비후계자에 대한 개인별 신용상태 및 용자 가능 여부 검토, 사업자금 융자, 융자금 관리, 농자재 구입 및 농수산물 판매 알선 등 유통 사업 지원 등을 관장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업기반공사는 농수산물 수

출 지원, 농업경영자 해외연수 실시, 농지시설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제도는 현재의 제도이므로 이들 제도위에 귀농자나 도시에서 농업직으로의 전직을 희망하는 집단을 확보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농업계 학교에 대한 정시제 과정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학생수에 관계없이 개별적 과제의 수행이 가능하게 학교 농장을 확보하여 경작지가 없는 귀농자들의 실습을 겸하게 하고, 순차적인 적응 과정을 거쳐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이러한 농업인력 육성체계를 바탕으로 각 연구자들은 현재 후계인력의 육성체제를 3-4단계 정도로 가정하였다. 즉 농촌경제연구원(1991)의 예비단계-영농착수단계-정착단계-성숙단계의 구분(후계인력확보단계-영농정착육성단계-전업농화 단계)이나 농촌진흥청의 3단계(기초인력-정예인력-선도인력), 농촌경제연구원(2001)의 예비후계자-후계농업인-전업농가/농업법인-선도농업경영체의 4단계로 구분한 경우가 그 예이다. 이와같은 체제는 현재 대개의 영농인력 육성체제를 3-4단계로 상정한 결과들과 일치하고 있다. 일부는 경영이양기를 가정하기도 한다(농정발전기획단, 2001). 그러나 이들의 관점은 농업직의 영위가 변화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모든 농가는 기업과 달리 농업 경영자 1-2인 중심의 가족 단위의 경영체이므로 이들 조직이 전부 성장상태로만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 개별 경영체가 기술수준이나 경영능력 등의 변화에 의하여 발달이 이루어지고, 가족구조나 관계의 변화에 의하여 개별 경영주에게 요구되는 개인적, 사회적 역할이 변화될 것이므로 이들 단계에 적절한 육성 단계를 가정함이 필요할 것이다.

각 경영주의 life style은 발달이론이나 성인발달이론, 진로발달이론들을 참고하면 발달단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인들의 직업발달이 어떤 단계로 구성되었으며 각 단계의 생애과업은 무엇이 될 것인가는 성인발달이론이나, 직업발달이론 및 진로발달에 관한 이론들을 참고하면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Levinson(1978)은 성인의 생애발달모형은 유년기와 청소년기(~17세), 초기성인 전환기(17~22세), 초기 성인의 생애구조 진입기(22~28), 30대 전환(28-33세), 초기성인을 위한 생애구조절정기(33-40세), 중년 전환기(40-45세), 중년의 생애구조 진입기(45-50), 50대 전환기(50-55세), 중년을 위한 생애구조 절정기(55세~60세), 후기 성인전환기(60~65세)로 구분하였다. 이는 성인기를 초기와 중기, 후기로 구분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세분하고 있다. Miller와 Form은 연령에 따라 5가지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준비단계(0-15세), 초기 직업기(15-18세), 시행기(18-34세), 안정기(35-65세), 은퇴(65세이상)으로 구분하였고, Super는 성장기(0-14세), 탐색기(15-24세), 성립기(25-44세), 유지기(45-64세), 65세이상(쇠퇴기)로 구분하였으며, Hall와 Nougaim는 전직업기(pre-work:0-25세), 정립기(25-30세), 발전기(30-45세), 유지기(45-65세), 쇠퇴기(65세 이상)로 구분하였다. Schein은 성장,환상,탐색기(0-21세),입직기(16-25세), 기본훈련기(16-25세),전업형 직업 초기(17-30세), 직업 중기(25세 이상), 직업중기의 위기기(35-45세), 직업 후기(40세이상), 하향과 이탈기(40세이상), 퇴

직기(?)로 구분하여 나이와의 연속성을 떨어지나 대략적인 과업을 보여주고 있다.

Greenhaus, Callanan, Godshalk은(2000, pp.117-123) 5단계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진로발달단계의 구분을 직업선택(일의 준비;0-25세-), 조직 진입기(18-25세-), 직업초기(수립과 성취;25-40세), 직업중기(40-55세), 직업후기(55-퇴직시)로 구분하였다. 이들 단계별로는 직업선택기는 일의 준비를 위한 시기로 직업적 자아개념을 개발하고, 대안적 직업을 평가하며, 최초 직업 선택을 개발하고 필요한 교육을 추구하는 시기이다. 조직 진입기는 바람직한 조직으로부터 취직을 권유받고,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적절한 직업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직업초기는 직무를 배우고, 조직의 규칙과 규범을 학습하며 선택된 직업과 조직에 적응하며, 유능함을 증가시키고 꿈을 추구한다. 직업중기는 직업초기와 성인초기를 재평가하고, 꿈을 재확인하거나 수정하며, 성인중기에 적합한 선택을 하며, 일의 현장에서 생산성을 유지한다. 성인후기는 일의 현장에 생산적으로 유지하고, 자기존중감을 유지하며, 효과적인 은퇴를 준비한다.

Steffy등은(2000) 진로교사의 생애모형(life cycle of the career teacher)을 제시하였는데, 이들 모형은 초보교사(Novice Teacher)->도제교사(Apprentice Teacher)->직업적 교사(Professional Teacher)->전문가 교사(Expert Teacher)->저명한 교사(Distinguished Teacher)->명예교사(Emeritus Teacher)의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단계간의 과정은 반성->갱신->성장의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즉 현재의 지식과 기술을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꿈으로 연결시키며 이들 꿈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은 발달을 통하여 구성한다고 보았다. 진로교사 생애모형은 교사의 생애발달에 대한 모형이기는 하나 교사의 직업발달을 직업 수행에 있어서 수월성 추구라는 점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농업인을 전문적 직업능력의 개발이라는 점에서 파악한다면 농업인에게도 적용가능한 모형이 될 것이다.

Steffy등의 관점은 이전의 성인 발달과정의 논리와는 달리 연령이 아닌 과업이나 역할의 변화에 따라서 단계를 세분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단계별 명칭은 다를지라도 창업농 역시 농업인력의 초기 단계라고 한다면, 창업농으로서 성공한 단계를 가정하여 육성방향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Steffy등의 견해는 참고가 될 것이다. 이들 창업농의 성공 단계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성취될 수 있는가는 육성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농업인력육성 방향은 국가적 관점에서 인력 육성의 방향을 결정하여, 인력 육성에 있어서 사회적 요구를 중심으로 하여, 정책적 대상이며 주체가 되는 인간의 관점을 고려하여 개인의 성장을 통한 행복추구라는 점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더구나 이는 과거의 부분적 접근의 한계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에서 국가의 영농후계인력의 육성을 접근하여야 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표 35>와 같은 후계 인력 육성 단계를 가정하였다.

〈표 35〉 농업인력의 육성 단계

단계	농업인력명칭	특 징
예비단계	예비후계자	교육이수 중이거나 창업을 준비하며 교육 및 훈련을 받는 자
취농단계	창업예비자, 창업농업인	창업자,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의 사람, 초보적 기술, 경영, 소득수준, 처음으로 독립적으로 영농을 하는 사람. 이론과 기술을 통합하는 단계로서 초보적 수준을 지칭함.
정착단계	정착농업인	영농정착에 성공한 사람. 기술수준이 지역평균수준
발전단계	전문농업인	기술과 경영, 소득수준이 해당품목의 전체평균 수준
안정단계	선도농업인	기술, 경영, 소득 수준이 해당 품목의 전국 평균 수준이상, 부분별 전국 평균이상
후계수련 단계	신지식농업인	기술과 경영수준이 품목내에서도 전국평균수준보다 월등히 높고, 전국농업인 수준에서도 상위수준이며, 농업이외 분야의 평균소득과도 비슷하거나 상위수준
경영이양 단계	명예농업인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로서 그들의 지식이나 기술을 실제 경영에 종사하기 보다 후계를 가르치거나 자문이나 봉사활동에 관여하며 농업을 후원하는 단계의 농민

이들 대상별에 따른 정책적 적용 내용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표 36〉 농업인력 육성단계별 정책적 적용

단계	농업인력명칭	정책적 적용 내용
예비단계	예비후계자	교육지원, 프로젝트자금 지원
취농단계	창업예비자, 창업농	자금지원, 현장실습교육지원, 품목별 교육지원
정착단계	정착농업인	작목조직 지원, 선진농가연수지원, 자금 지원
발전단계	전문농업인	품목조직 지원, 해외연수 지원, 교육운영지원, 자금지원
안정단계	선도농업인	전문 품목 교육 강사 POOL화, 해외수출지원, 자금지원
후계수련단계	신지식농업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품목별 단체조직 운영지원
경영이양단계	명예농업인	경영이양지원, 경지유동화 지원, 창업자 지원 심사 참여

3. 선발 이후의 문제

선발 이후의 문제는 대체로 육성단계로서 선발된 이후의 교육방안, 컨설팅 주체와 절차, 방법의 문제, 사업계획서 항목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가. 사업계획서의 모형과 평가방법

1) 사업계획서 및 영농설계서 검토

지금까지 농림부에서는 영농정착 의욕, 학력 및 영농교육훈련, 영농경력, 영농기반, 영농사업계획 등을 평가하여 기본 점수에 미달하지 않으면 고득점자 순으로 신규후계농업인이나 취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선정하여 왔다. 이 중에서 영농사업계획서는 후계농업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평가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농림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계획서는 재산상황과 사업비 투자계획, 향후 영농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창업을 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서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계고등학교와 농촌진흥청에서 이용하고 있는 영농설계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두 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영농설계서는 농림부에서 후계농업인을 선정하는데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보다 더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좀 더 보완된 영농설계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7〉 농업계고등학교와 농촌진흥청의 영농설계서 내용

농업계고등학교	농촌진흥청
가. 경영목표의 설정	가. 경영목표 설정
나. 재배 및 사육 형태의 결정	나. 경영규모 및 작부(사양)기간, 노동투하량
다. 경영규모 및 작부 기간	다. 재배실천계획
라. 시설 구축 및 배치 계획	라. 수입 및 지출계획
마. 기초대차대조표	마. 자금소요액
바. 재배 및 사육계획	바. 예상경영성과
사. 수입 및 지출 계획	
아. 경영성과시산	
1) 경영성과 분석	
2) 손익계산서	
3) 기말대차대조표	
차. 융자금 상환 및 소득 처분계획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3). 고등학교 농업경영.
 농촌진흥청(1994). 식량·특용작물 경영진단과 설계요령

2) 사업계획서의 배점에 대한 검토

지금까지 농림부에서 후계농업인을 선정할 때 영농사업계획 항목에 신규후계농업인의 경우는 600점 만점에 100점, 취농창업후계농업인의 경우는 500점 만점에 200점을 부여하고 있다.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영농사업계획에 대한 배점이 너무 낮으며, 총점에 대한 최저점을 제시하여 이 점수가 낮아도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또한 영농사업계획 내의 각 항목별 평가 방법에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이 순수익의 극대화에 있다면 재배기술과 함께 경영능력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재배 작목에 대한 미래의 소비 확대 가능성과 영농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건전한 경영체로 발전하기 위해서 재무관리 및 위험관리 능력도 요구된다. 이러한 내용이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건전한 경영체로서의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창업농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사업계획서 수립

후계농업인 선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수한 농업인력을 확보하고 건전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여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발전시키는데 있다. 그러므로 건전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업계획서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을 선정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내용들이 창업농을 선정하는데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예비 후보자 단계에서는 간단한 영농설계서로 사업을 평가해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창업농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앞으로의 성공가능성과 실현가능성 등의 세부적인 사업계획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육성 단계별 사업계획서

가) 예비후보자 단계(농고 재학생, 4-H회원) : 이 단계에서는 농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고 농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일 작목에 대한 간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창업 예비 단계 : 창업예비단계에서는 후계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 뿐만 아니라 경영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는 단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정된 후에는 농업기술 뿐만 아니라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서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창업단계 : 독립경영체로서 유지될 수 있는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사업계획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경영성과 분석, 융자금 상환 계획, 앞으로의 사업계획(연차

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때는 작목에 대한 장래성과 사업의 발전가능성, 실현가능성 뿐만 아니라 사업의 건전성과 위험관리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육성 단계별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8〉 육성단계별 사업계획서의 내용

구 분	예비후보자 단계	창업 예비 단계	창업 단계
대상 범위	단일 작목	전 작목	전 작목
사업계획 내용	가. 경영목표 나. 재배 및 사육형태 다. 영농규모 라. 재배 및 사육계획 마. 수입 및 지출계획	가. 경영 작목 나. 경영목표 다. 재배 및 사육형태 라. 영농규모 마. 재배 및 사육계획 바. 수입 및 지출계획 사. 경영성과 분석	가. 경영 작목 나. 경영목표(단기, 장기) 다. 재배 및 사육형태 라. 영농규모 마. 재배 및 사육계획 바. 수입 및 지출계획 사. 경영성과 분석 아. 대차대조표 자. 손익계산서 차. 융자금 상환계획
대상자	농고 재학생 학교4-H회원	미래 창업농 희망자	창업지원자
지원사항	과제자금 300~500만원 지원		

영농설계에 대한 여러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본 결과 대체적으로 형식과 작성 절차가 비슷하였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농업계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업경영 교과서의 영농설계와 연구자가 일부 보충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양식과 절차는 창업농의 작목과 재배상황, 지역여건에 따라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영농설계서(사례)

가. 작목명 및 영농규모 : 버섯 300 m²(총면적 600 m²)

나. 경영목표

1) 장기 경영목표

〈 장기(5개년) 경영목표 〉

구 분	금년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경영 규모(재배사)	300 m ²	450 m ²	600 m ²	600 m ²	900 m ²
연간 재배 면적(상 면적)	600 m ²	900 m ²	1,200m ²	1,500 m ²	1,800 m ²
소득 목표(천 원)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소득 증대 방안	· 시설 현대화로 생력 재배 · 연 2회 이상 재배 및 고품질 버섯 생산				

2) 당해년도 경영 목표

〈 당해년도 경영목표 〉

경영 규모	생산량	재배 회수	소 득	기술 수준
재배사 300 m ² (상면적 600 m ²)	14,000 kg	2 회	20,000천 원	중

다. 재산상태

1) 기초대차대조표

〈 기초대차대조표 〉

2003.1.1~2003.12.31

(단위 : 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자본	금 액
현 금	1,000,000	장 기 부 채	1,000,000
예 금	15,091,000	단 기 부 채	10,000,000
미 수 금	0	자 본 금	42,071,000
대 농 기 구	3,380,000		
시 설 설 비	18,600,000		
토 지	15,000,000		
	53,071,000		53,071,000

2) 자산명세

가) 현금

(단위 : 원)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종 균 비	4,000,000	수 리 비	590,000
농 약 비	18,000	소 농 구 비	60,000
광열동력비	4,100,000	고 용 노 임	3,500,000
재 료 비	2,773,000	지 급 이 자	1,050,000
계			16,091,000

나) 대농기구

(단위 : 천원)

품 명	수량	단가	구입 가격	내용 연수	연감가 상각액	현재 가격	사용 비율 (%)	감가 상각비 (원)
경 운 기	1	2,200	2,200	8	275	1,100	20	55,000
동력분무기	1	320	320	8	40	280	20	8,000
보 일 러	2	1,000	2,000	5	400	1,600	100	400,000
벗짚절단기	1	500	500	5	100	400	100	100,000
계			5,020		815	3,380		563,000

* 폐기가격은 0원으로 계산함.

다) 시설설비

(단위 : 천원)

시 설 명	면적(m ²)	단가	신축 가격	현재 가격	내용 연수	감가 상각비
재 배 사	300	60	18,000	15,000	6	3,000
환기 장치	10개	40	400	320	5	80
온·냉방 장치	-	-	3,500	2,800	5	700
관수 장치	60	10	600	480	5	120
계			22,500	18,600		3,900

라) 토지

(단위 : 천원)

구 분	면 적	단 가	금 액	토지용역비	비 고
재배사	600m ²	25	15,000	450	이율:3%

라) 부채 및 자본금

(단위 : 천원)

구분	현금(예금)	대농기구	재배 시설	토지	계
부채	0	3,000	8,000	0	11,000
자본금	15,041	380	10,600	15,000	41,021
계	15,041	3,380	18,600	15,000	52,021

라. 재배 계획

1) 월별 재배 계획

작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벼			□	○	×			□	○	×		

□ : 접종 ○ : 벼 수확 × : 폐상

2) 월별 작업 계획

작업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입상			■	■				■	■			
소독			■	■	■	■	■	■	■	■	■	
살균			■	■				■	■			
접종			■	■				■	■			
수확					■	■				■	■	
폐상												

3) 병충해 방제 계획

병·해충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푸른곰팡이			■	■	■	■		■	■	■	■	
재배사소독			■	■			■	■			■	■

마. 지출계획(각 비목별 지출 계획)

1) 종균비

(단위 : 원)

종류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싸주카	1,000 kg	2,000	2,000,000	
2-1호	1,000 kg	2,000	2,000,000	
계			4,000,000	

2) 농약비

(단위 : 원)

병명	농약명	수량	단가	금액	비고
푸른곰팡이	벤레이트	20ℓ	400	8,000	
재배사 소독	포르말린	20ℓ	500	10,000	
계				18,000	

3) 광열동력비

(단위 : 원)

종류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경유	5,000ℓ	700	3,500,000	
전기료	3,000kw	200	600,000	
계			4,100,000	

4) 재료비

(단위 : 원)

종류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벗짚	단	36,000 kg	30	1,080,000	
하우스 비닐	0.05	10롤	50,000	500,000	
하우스 밴드	검정	20타	2,000	40,000	
온습도기	100℃	10개	2,000	20,000	
관수 호수	200m Ø70	1개	20,000	20,000	
포장박스	30×30×20	3,000개	300	900,000	
비닐봉지	20×30	40조	500	20,000	
차광망	75%	4개	25,000	100,000	
전기줄	Ø5	1타	3,000	3,000	
전구	200W	30개	3,000	90,000	
계				2,773,000	

5) 수리비

(단위 : 원)

종류	횟수	단가	금액	비고
경운기	4회	100,000	400,000	
동력분무기	2회	50,000	100,000	
보일러	3회	20,000	60,000	
벗짚절단기	1회	30,000	30,000	
계			590,000	

6) 소농구비

(단위 : 원)

종 류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작 두	10개	5,000	50,000	
삽	5개	2,000	10,000	
계			60,000	

7) 고용노임

(단위 : 원)

종 류	고용시간	단 가	금 액	비 고
남 자	300시간	5,000	1,500,000	
여 자	500시간	4,000	2,000,000	
계			3,500,000	

8) 지급이자

(단위 : 원)

종 류	원금	이자율	이자금액	비 고
장기부채	1,000,000	5%	50,000	
단기부채	10,000,000	10%	1,000,000	
계			1,050,000	

9) 감가상각비

(단위 : 천원)

품 명	수량	단가	구입 가격	내용 연수	연감가 상각액	현재 가격	사용 비율 (%)	감가 상각비 (원)
경 운 기	1	2,200	2,200	8	275	1,100	20	55,000
동력분무기	1	320	320	8	40	280	20	8,000
보 일 러	2	1,000	2,000	5	400	1,600	100	400,000
벗짚절단기	1	500	500	5	100	400	100	100,000
계			5,020		815	3,380		563,000

* 폐기가격은 0원으로 계산함.

10) 자가노임

(단위 : 원)

종 류	노동시간	단 가	금 액	비 고
경영주	800시간	5,000	4,000,000	
경영주 처	400시간	4,000	1,600,000	
계			5,600,000	

11) 자본용역비

(단위 : 원)

구분	이용금액	연이율	용역비	비 고
유동자본용역비	15,041,000	3%	451,230	
고정자본용역비	21,980,000	3%	659,400	
토지자본용역비	15,000,000	3%	450,000	
계	52,021,000		1,560,630	

사. 수입계획(작목별 수입 계획)

(단위 : 원)

구분	수량(원)	단가(원)	금액(청원)	비고
봄재배 판매수익	8,000	3,400	27,200	
가을재배 판매수익	6,000	2,710	16,260	
계			43,460	

아. 경영성과 시산

1) 손익계산서 작성

〈 손익 계산서 〉

2001. 3. 1. ~ 2002. 2. 28.

(단위 : 원)

비 용	금 액	수 익	금 액
중 균 비	4,000,000	봄재배 판매	27,200,000
농 약 비	18,000	가을재배 판매	16,260,000
과열 동력비	4,100,000		
재 료 비	2,773,000		
수 리 비	590,000		
소 농 구 비	60,000		
고 용 노 임	3,500,000		
지 급 이 자	1,050,000		
감 가 상 각 비	4,463,000		
(소 계)	(20,554,000)		
자 가 노 임	5,600,000		
유동자본용역비	451,230		
고정자본용역비	659,400		
토지자본용역비	450,000		
(소 계)	7,160,630		
(총 계)	(27,714,630)		
당기순이익	15,745,370		
	43,460,000		43,460,000

2) 경영성과 분석

조수입	생산비	순수익	경영비	소득	순수익률	소득률
43,460,000	27,714,630	15,745,370	20,554,000	22,906,000	36.2	52.7

3) 기말대차대조표 작성

〈 기말대차대조표 〉
2003.1.1~2003.12.31 (단위 : 천 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자본	금 액
현 금	1,000,000	장기부채	1,000,000
예 금	44,581,740	단기부채	9,000,000
미 수 금	0	자본금	52,353,370
대 농 기 구	2,817,000	당기순수익	15,745,370
시 설 설 비	14,700,000		
토 지	15,000,000		
	78,098,740		78,098,740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이 순수익의 극대화에 있다면 재배기술과 함께 경영능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배작목의 앞으로의 소비 가능성과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건전한 경영체로 발전하기 위해서 재무관리 및 위험관리 능력도 요구되는데, 이러한 내용이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건전한 경영체로서의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영농사업계획서에 대한 배점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영농사업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함).

〈표 39〉 영농사업에 대한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20	—
재배 작목에 대한 장래 소비증가 가능성	10	—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10	—
영농설계서의 실현가능성	20	—
재무관리 및 위험관리 능력	20	자산, 부채, 자본의 비율 기초, 기말간 재산 증감율 생산, 가격, 재정 등의 위험 관리 능력
생산 및 판매 계획	10	—
사업분야에 대한 타농가 재배 작목과의 작목 집단화(조화)	10	—
계	100	—

나. 교육방안

1) 각 시·도별 후계농업인들의 교육내용을 검토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후에 실시되는 후계농업인의 교육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도에서 영농기술과 농업정책, 성공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후계농업인들의 다양한 작목에 대한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목과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창업농들의 영농기술과 경영 및 유통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고 능력을 배양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교육적 관심과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다. 선정된 후계농업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선정되기 전에 농업에 대한 교육을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 작목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각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획일적, 일시적 교육에서 창업농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각 작목별, 분기별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실습과 이론이 병행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에게 재무관리, 위험관리, 경영분석, 유통, 정보 등에 대한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40〉 신규후계농업인교육내용

구분	농업정책	생산기술	유통 및 정보	경영	정신교육	우수사례, 견학
농촌진흥청 (2001년)	친환경, 후계농업인, 농산물유통, 농업정보화, 농지	벼농사, 밭작물, 안전축산물, 채소, 과수, 화훼, 병충해종합관리	-	농업경영진단 및 분석 방법	-	-
경기도	농정시책, 축산시책	-	협동조합 정보화 교육 농산물 수출	경영장부 작성	농업의 중요성·자세, WTO 대응	과수, 수도작, 시설원예
강원도	농정, 축산, 유통, 후계농업인	농기계실습	농산물 출하지원, 정보화시스템	-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전략, 품질경쟁력 제고 방안	영지
충청북도	농림사업, 지식농업과 농촌인력	원예작물기술	-	-	-	우수사례, 견학
충청남도	농정시책	품목별 전문 영농기술, 농기계 조작 및 수리	생산 및 수급동향, 가격추이, 유통경영 기법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분석	-	농장견학, 영농체험학습, 영농정착사례
전라남도	농정시책, 농지임대차 제도	원예 및 특용작물, 고품질 쌀생산, 병충해 종합관리, 축산기술, 오리 및 우렁농법, 농기계조작	농업정보화, 농산물 유통정책	-	농업경영인의 역할과 후계농업인 육성	유기농산물 생산사례, 우수농가 견학 및 현장교육
전라북도	농정시책	시설채소, 농기계보관, 한우 및 양돈 사양관리	세계 시장과 우리농업 마케팅, 농업정보 활용, 전자상거래	-	올바른 소비생활	특수가축, 쌀재배, 농장견학
경상남도	농업정책, 농업종합자금제	고품질 쌀생산, 농기계교육	유통관리, 수출농업 및 벤처 전략, 농업정보화교육	농업경영	농업인의 자세	영농정책 성공사례
경상북도	지도사업방향, 농정시책,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고품질 쌀생산, 재배 및 사양기술 친환경농업, 농기계안전사용	-	-	농업인의 자세	-

자료 : 농촌진흥청(2001), 신규후계농업인교육 교재, 농촌진흥청.

2) 단계별 교육내용

지금까지 각 시·도에서 후계농업인들에게 실시하는 교육내용이 농업기술과 농업정책, 농가 견학 등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작목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내용은 후계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떨어지게 되어 교육적 효과도 낮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후에는 전국 단위의 품목별 교육으로 전화해야 할 것이며, 교육내용에 경영성과 및 재무관리, 유통과 정보, 위험관리 등이 포함되어서 전문경영인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정호(2001)에 의하면 농가부채가 1990년에는 소득의 42.9%이었으나 1999년에는 83.0%로 농업경영인

들의 재무구조가 매우 악화되고 있다. 또 90%이상의 농가는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의 부채는 단순한 농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농업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창업농을 선정한 후에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단계별로 교육과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는 농업기술, 창업예비 단계에서는 농업기술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에 대한 교육과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창업단계에서는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산관리와 경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창업예비단계와 창업단계에서는 전체적인 공통교육보다 품목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교육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41〉 단계별 교육내용

구 분	예비후보자 단계	창업 예비 단계	창업 단계
교육 대상자	농고 재학생 학교4-H회원	미래 창업농 희망자	창업지원자
컨설팅 기관 (담당자)	농업계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농업기술원 및 기술센터	농업기술원 및 기술센터 민간 컨설팅 농업교육기관 농산물 유통기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및 기술센터 민간컨설팅 농업교육기관 농산물 유통기관 생산자 단체 농업협동조합
교육 내용	재배 및 사육기술 농업재무관리 및 경영 농산물 유통 농업정보	재배 및 사육기술 재무관리 및 경영분석 농산물 유통 및 정보습득 의사결정 경영기록 및 조직 농업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	재무관리 및 경영분석 농산물 유통 및 정보습득 농업금융 및 위험관리 의사결정 농업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 농산물 무역
교육 방법	공통교육	품목별 교육	품목별 교육
교육 시기	재학 중 과제이수기	농한기	농한기

가) 예비후보자 단계(농고 재학생, 4-H회원) :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재배 및 사육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4-H회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고 재학생은 농업계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에서 공통교육이 실시한다면 예비후보자를 육성하고 확보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나) 창업 예비 단계 : 재배 및 사육기술 뿐만 아니라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경영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각 작목에 따라 재배 및

사육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의 공통교육보다 품목별 교육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교육은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지도사가 농업기술과 경영에 대한 기초 이론을 지도하고 민간컨설팅 회사와 경영관련 기관이 경영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전문경영인을 육성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 창업 단계 : 창업농은 새로운 경영체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요구되므로 경영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내용들이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창업농으로 선정된 후에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업계고등학교나 농업계대학, 혹은 우수농업인의 농장을 교육장으로 하여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한다면 농업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도별 교육보다는 품목별 교육으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농업경영 성과 분석 및 진단(사업자 선정 후 성과 분석)

창업농으로 선정된 후에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경영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려면 경영성과 분석을 위한 지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농업경영성과 분석 자료는 1년동안 농업경영인인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생산활동도 중요하지만 농업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순수익의 극대화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분석을 통해서 농업경영인들은 한해의 수익성 분석과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러한 분석자료를 통해서 차기 회계연도에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업경영진단 및 성과 분석과 관련된 선행 자료는 아래와 같다.

〈표 42〉 농촌진흥청에서 제시한 원예작물 경영진단 내용

분 야	주 요 지 표
수익성 지표	농업조수입, 농업경영비 농업소득(농업조수입-농업경영비) 농업소득율(농업소득/농업조수입×100)
생산 및 생산성 지표	작물수량, 가축년간 생산량, 사료급여량, 노동시간 노동생산성(농업소득÷노동시간) 토지생산성(농업소득÷경지면적) 자본생산성(농업소득÷농업자본액) 자본효율(농업소득÷농업경영비)
진단 방법	외부비교법 : 표준비교법, 직접비교법 내부비교법 : 시계열비교법, 계획대 실적 비교법, 부문간 비교법

자료 : 농촌진흥청(1994). p.14.

〈표 43〉 고등학교 농업경영과목에 제시된 경영진단 내용

분 야	주 요 지 표
수익성 지표	농업조수입, 농업소득, 농업순수익 농업생산비, 농업경영비
생산성 지표	작물 : 단위면적당 생산량 또는 생산액, 수확량 지수 축산 : 가축 1마리당 생산량 또는 생산액, 일정생산량에 사용된 사료량 노동효율 : 농업노동력 단위당 농업종사일수, 단위경지 면적당 농업노동 일수 자본효율 : 농기계이용면적, 농기계이용시간, 자본수익률 투입요소에 대한 보수 : 가족노동력에 대한 보수, 자기 토지에 대한 용역비, 자기 자본에 대한 이자
진단 방법	외부비교법 : 표준비교법, 직접비교법 내부비교법 : 시계열비교법, 계획 대 실적 비교법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3). pp.158-191.

건전한 농업경영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항상 자신의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을 파악해야 할 것이며, 규모를 확장하더라도 수익과 자신의 부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 가격은 완전경쟁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항상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그에 따라 수익성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또한 농산물 가격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공급량의 작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큰 폭으로 변화하게 된다. 변화하는 가격을 고려하여 미래 자신의 수익성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규모를 얼마나 확장할 것인지, 그리고 차입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상황을 반영하여 자기 경영체의 부채금액과 예상 순수익을 고려하여 규모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연초에는 기초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연말에는 기말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자신의 자산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규모 확장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권오욱의 농업회계(선진문화사, 1998, p277)에서 기업적경영의 손익계산서 분석지표로 자본이익율, 매출이익율과 자본회전율, 생산원가 구성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의 농가부채상황을 고려한다면 총자본이익율과 자기자본이익율 뿐만 아니라 부채상환능력도 고려한 진단 지표가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진단방법 중에서 외부 비교법으로는 시험장의 성적 또는 조사지역에서 가장 합리적인 경영모형과 비교할 수 있는 표준비교법이 합리적으로 사료되며, 내부비교법으로는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스스로 작성해 선정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계획 대 실적 비교법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진단방법으로는 외부비교법으로 표준비교법, 내부비교법으로 계획 대 실적 비교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진단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44〉 자산관리 진단방법

항 목	사례농가	표준농가	표준농가비율	목표	목표달성도
수량(kg/10a)					
농업조수입					
농업경영비					
농업생산비					
농업 소득					
농업순수익					
농업소득율					
농업순수익율					
자본 효율					
노동생산성					
토지생산성					
총자본이익율					
자기자본이익율					
부채상환능력					
계					

* 각 항목에 대한 가중치는 이후 연구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여러 작목일 경우 각 작목에 대한 가중치는 매년 조사되는 표준소득분석표를 통해서 산출하여 이용하면 될 것으로 보임.

4) 회계관리 프로그램의 현황 및 문제점

대부분의 농업경영인들은 1년동안의 경영성과 분석과 자기 재산의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농업경영인들만이 단순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회계처리로는 자기 농장의 1년동안의 총수익, 사업별 순수익, 자산, 부채, 자본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농업인들이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해도 대부분 농업경영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농업경영인들이 농업경영 성과 및 재무상태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농업인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영농설계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자신의 재산상태와 수익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건전한 농업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쉽게 농업경영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촌진흥청의 농업경영정보관실에서 제공하는 농업회계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표 45〉 회계관리 프로그램 포함 내용

농업회계 경영관리 프로그램	인터넷 농장경영 종합관리 프로그램
가. 합계잔액 시산표 나. 계정별 집계표 다. 거래처별 집계표 라. 재산상태 및 경영성과 마. 사업별 수익 비용 바. 거래 기록 확인	가. 기술 분석 나. 경영회계 분석 : 안정성지표, 활동성지표, 수익성지표, 생산성지표, 성장성지표 다. 작목별 정보 나눔

다. 컨설팅의 개선방안

1) 컨설팅 주체

후계농업인으로 선정 된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이에 따른 자격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경영체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농업경영인들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업관련기관이나 민간 회사의 컨설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컨설팅의 내용을 보면 생산 컨설팅, 마케팅 컨설팅, 금융 컨설팅, 경영기록 컨설팅, 경영조직 컨설팅, 리스크관리 컨설팅, 사업계획 컨설팅, 가공기술 컨설팅 등 많은 분야가 있다. 이렇게 많은 내용을 여러 기관에서 컨설팅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업경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컨설팅은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 민간경영 컨설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컨설팅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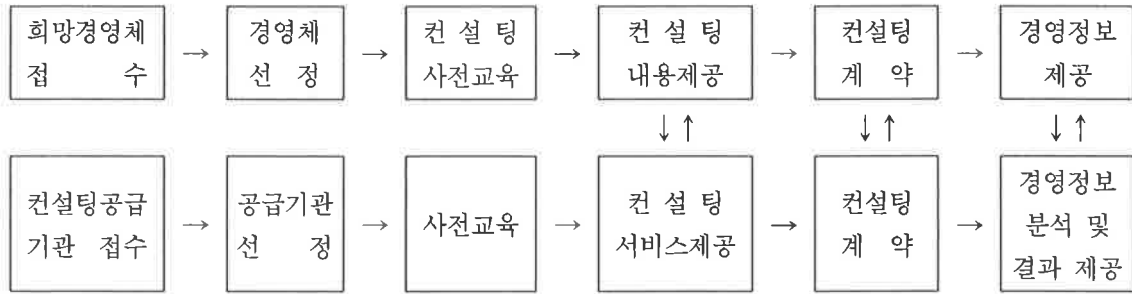
각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게 컨설팅의 종류별 주체기관이나 업체를 선정하여 농업경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관의 사업특성상 컨설팅의 종류와 주체기관을 설정해 본다면 아래와 같다. 이 중에서 민간컨설팅은 주로 농업경영인들의 경영관리 및 사업계획, 리스크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경영인들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 주며, 각 작목의 선정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주어서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46〉 컨설팅 종류별 주체기관

종류	생 산 컨설팅	마케팅 컨설팅	금 융 컨설팅	경영관리 컨설팅	사업계획 컨 설 텅	가공기술 컨 설 텅	리스크관리 컨 설 텅
기 관	농업기술센터	민 간 업 체 농업협동조합	민 간 업 체 농업협동조합	민간업체	민간업체	민 간 업 체 농업협동조합 농업기술센터	민 간 업 체 농업협동조합

2) 컨설팅 절차

컨설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컨설팅 대상 경영체의 선정과 컨설팅 공급업체의 선정 등이 합리적으로 선정되고 컨설팅 업체와 경영체가 상호 정보와 경영에 대한 각종 자료를 공유하면서 경영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의 구성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컨설팅 절차 구성도

이때, 지원 분야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분야(원예, 특작, 축산, 농산물가공업체)로 하되 일정규모 이상으로 한정하여 규모의 경제 유도해야 할 것이며, 농업정보화 교육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설계 교육도 실시하여 농업경영자들이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컨설팅 기관에 농업경영분석과 경영성과를 의뢰하여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경영상에서 경영인으로서의 능력이 경영체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이다.

3) 컨설팅 방법

가)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컨설팅의 분야가 경영관리, 사업계획, 생산기술, 가공기술 등으로 분류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생산기술 및 가공기술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타를 이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 컨설팅은 주로 경영관리 및 위험관리 금융관리, 사업계획, 마케팅 관리 위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나) 컨설팅의 전반적인 사업이 각 시·도별로 추진기관이 다른데, 농업전문인력이 풍부한 각 시·도의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 컨설팅 공급업체의 컨설팅 가능여부(구성원들의 자격 등), 업체의 재무구조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업체로 지정한다.

라) 컨설팅 공급업체의 보험 실시 및 보험가입을 유도하여 경영체가 안심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마) 컨설팅의 추진과정 및 실적을 수시로 감독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관(민간업체나 정부

기관)을 지정하여 컨설팅 업체의 부도로 인한 경영체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바) 경영체에서는 수시로 경영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 공급업체에서는 분석 결과와 결과에 따른 새로운 경영기법을 제공하여 건전한 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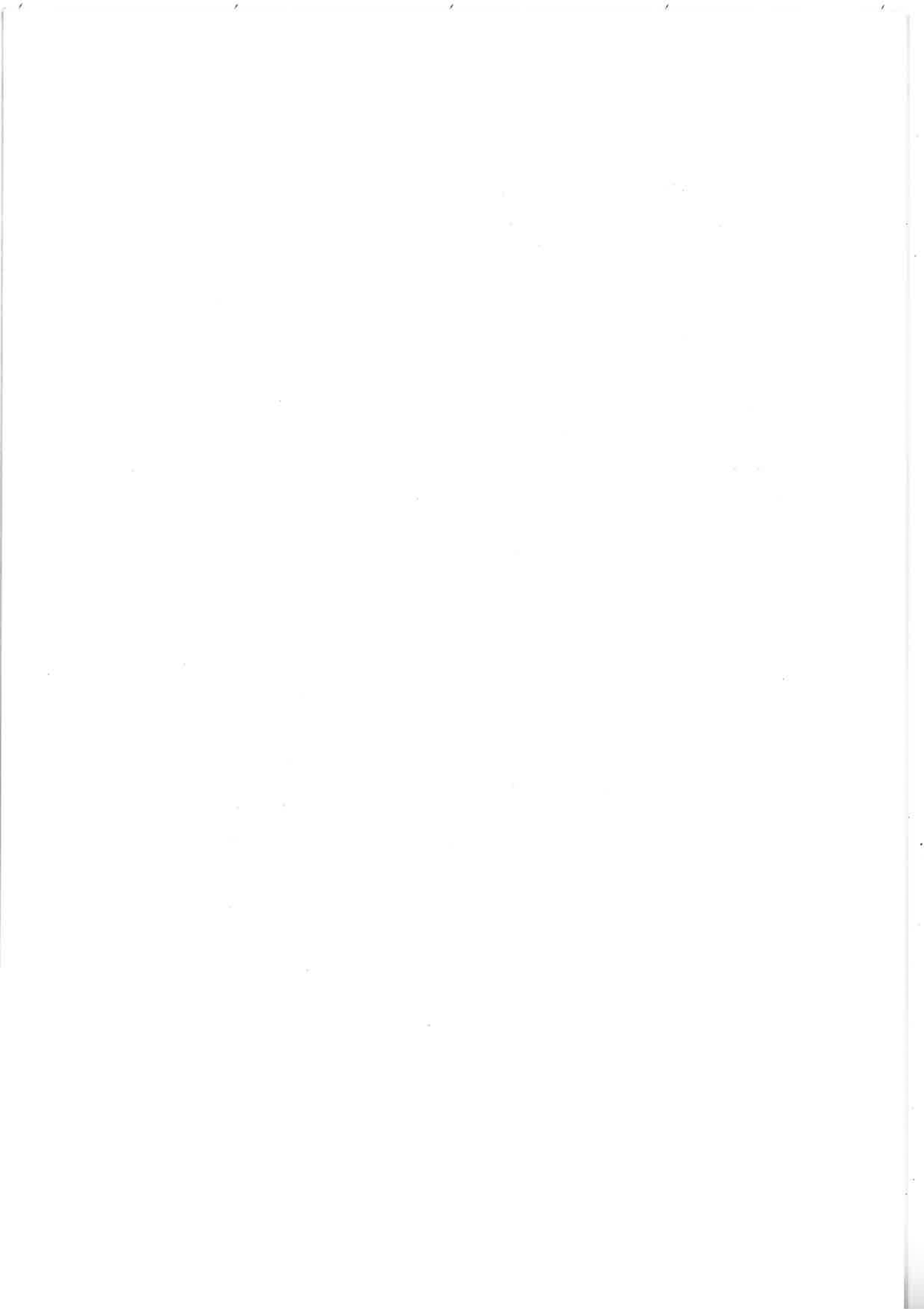
사) 창업농의 발전 단계에 따라 컨설팅의 주체와 내용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4) 각 단계별 컨설팅

컨설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육성 단계별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는 주로 생산기술에 대한 컨설팅이 농업계교육기관이나 지도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창업예비 단계에서는 영농기술뿐만 아니라 경영능력,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이 농업지도기관과 민간컨설팅 회사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창업단계에서는 재무관리와 경영분석, 의사결정 등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도기관, 교육기관, 민간컨설팅 뿐만 아니라 유통기관이나 농업생산자단체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표 47〉 육성단계에 따른 컨설팅

구 분	예비후보자 단계	창업 예비 단계	창업 단계
대상자	농고 재학생 학교4-H회원	미래 창업농 희망자	창업지원자
컨설팅 기관 (담당자)	농업계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농업기술원 및 기술센터	농업기술원 및 기술센터 민간 컨설팅 농업교육기관 농산물 유통기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및 기술센터 민간컨설팅 농업교육기관 농산물 유통기관 생산자 단체 농업협동조합
컨설팅 내용	영농기술(재배 및 사육)농 업경영	영농기술(재배 및 사육) 재무관리 및 경영분석 농산물 유통 및 정보습득 사업계획 수립 사업타당성 분석	재무관리 및 경영분석 농산물 유통 및 정보습득 농업금융 및 위험관리 의사결정 농산물 무역



VI. 결론 및 제언

농업 인력은 농업생산직 종사자만이 아닌 농업에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농업인력을 생산농업인력만으로 한정하여 정책 수립을 해온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현재 농업인력의 확보 문제가 심각한 부분은 생산농업인력의 육성 분야이다. 생산농업인력육성부분은 신규 취농후계인력의 확보에 관련된 부분과, 취농후계인력의 성장지원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성장 지원부분은 정착한 취농인력의 발전과 경영이양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고, 취농인력의 발전 부분은 취농인력의 구분에 따라 여러 가지 하위 정책 집행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농업인력의 육성은 결과적으로 단기간의 집중적 노력과 결정으로 성공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여건이나 국가의 정책적 입장과 관계가 깊어서 농업에 대한 사회적 여건이 좋으면 후계 인력의 육성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농업에 대한 사회적 여건이 좋으면 생산농업인력의 육성 정책이나 제도가 불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현재 농업의 여건상 불리한 산업이므로 국가의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인력 육성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농업의 산업적 전망과도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농업을 육성하게 할 국가적 정책이 선행되어야 효과적이다.

현재 신규 취농후계인력의 확보 부분은 취농창업후계농업인과 후계농업인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농업의 사회적 여건의 악화로 대상자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식량 공급이나 사회적 안전망의 확보라는 점에서 농촌과 농업의 유지는 필요하다. 그 때문에 이들 부분에서 종사할 취농 후계 인력의 확보와 육성은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 취농 후계인력 육성에 관련된 제도는 1980년 이후 현재까지 후계 농업인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영향을 미쳐왔다.

앞으로 이들 제도는 취농인력의 확보와 정착을 어떻게 지원하여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정예화된 필요 인력을 확보하여 정착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취농인력을 창업농 중심의 지원사업으로 변화함은 후계농업인이라는 명칭보다는 정착과 발전과정에 대한 육성 지원 사업을 겸하여 추진하기에 적절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즉 창업농 지원사업이라는 제목으로 바꾸는 것은 창업자의 확보문제나 선정자의 연령이나 사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적절한 명칭으로 판단된다.

앞으로의 신규취농인력은 국제적 여건의 변화로 과거와 같이 국가의 보호하에서 농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며, 과거보다 농업종사인구나 경작지가 감소하는데 반하여 인구는 증가하는 시대에서 보다 생산성이 높고 외국과의 경쟁하에서도 이기고 농촌도 지킬 수 있는 질적으로 우수한 능력있는 인력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농업이 직업을 구하다 못

구하면 돌아와 농사짓는 것이 아닌 준비되고 충분히 능력을 갖춘 인력이 취농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신규취농인력의 확보를 위한 이 사업도 농업관련 교육이수자로서 어느 정도 현장경험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를 갑작스럽게 바꾸기에는 혼란이 예상되므로 순차적으로 이 연구에서 제안된 4단계 선발과정을 통하여 농업계 학교 졸업자 선발 규모를 늘려가면서 영농에 대한 체험을 갖춘 사람들이 자금 지원을 받고, 사후의 교육과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아 성장하도록 함이 적절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근거를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선발단계

가. 지원대상자의 연령과 영농경력의 반영

- 지원대상의 연령은 기존의 후계농업인 제도와 부합하도록 40세 미만의 규정을 그대로 둬야 적절함. 더구나 순차적인 단계를 거쳐 선발되므로 나이는 한계 연령으로 규정함이 필요함.
- 연령을 35세 미만으로 한정할 때는 제한된 인력만이 유입되기 쉬우며, 나이의 상한을 없앨 경우 다양한 연령층이 농업부문으로 유입할 수 있으나, 그들 모두를 후계농업인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신규 인력보다는 전직인력의 입직을 유도하는 정책적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35-40세 이하의 인력으로 연령 제한을 두고, 그 이상의 귀농자들이나 전직자는 심의를 거쳐 종합자금제에 의하여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임. 그러므로 후계농업인이나 창업농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연령 제한을 현재와 같이 하는 것이 비교적 타당함.
- 연령이 35세나 40세 미만일 때 영농경력자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들은 2단계의 창업후보자단계나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영농경험을 갖도록 하므로 영농경력의 반영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나 이들 단계에서 거치게 된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졸업후 2-3년 뒤에 선정되어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인원의 제한이 없이 이루어지므로 이들 과정을 거치면 선발되는 것으로 한다.

나. 선발방법 및 기준

- 단계별 선발 및 단계에 따른 기준 설정을 통해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3단계 통과된 사람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4단계에서 자금지원 규모를 결정함.

단계	주요 선발 기준
1단계	- 농업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기술 -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직업기초능력 - 농업에 대한 애착심 및 의지, 사명감
2단계	- 부모의 지원 - 영농기반의 확보
3단계	- 농업경영능력 - 마케팅 능력 - 지식 정보의 생성, 저장, 활용 능력
4단계	- 사업계획서

- 첫번째 단계는 창업농 예비 후보자로서 농업계 각급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되, 선발과정에서 직업기초능력과 농업에 대한 애착심이나 의지, 사명감을 심사하도록 함. 이들 선발과정은 농업계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은 1학년 말, 4년제 대학은 2학년말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이때까지 담당교사나 교수의 관찰과정으로서 애착심이나 사명감, 의지등을 판단하도록 함.
- 두번째 단계는 부모의 도움이나 지원을 통한 영농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확인 과정으로 1단계와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음. 부모의 경영기반을 승계하는 경우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기반이 없는 경우는 경영이양농가의 경영기반을 이양받을 수 있는 지원문제가 존재함. 창업자들의 초기 투자가 대개 영농생산기반 확보에 대한 투자로 이루어져 부채 증가로 초기 수익 창출이 어려운 형편이므로 기술수준이나 경영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초기 투자가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도록 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세번째 단계는 창업준비자로 농업경영능력과 마케팅, 컴퓨터 등의 영농정보의 확보와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간임. 이때는 학교 교사나 지도교수, 부모 등의 지도하에서 과제자금을 지원받아 학교농장이나 자신의 농지에서 과제를 이수하게 함. 이때는 실제적인 영농경험을 갖는 시기로 이때 지원되는 자금은 현재의 4-H과제자금처럼 영농기술과 경영능력의 확보나 적용단계이므로 보조금 형태의 지원이 적절할 것임. 경영기반을 확보한 경우는 자체의 경영기반에서, 없는 경우는 학교 농장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3단계를 통과한 사람은 창업자로 인정된 것을 말함.
- 네번째 단계는 자금지원단계로서 이미 선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정도이므로 사업자금 지원만 이루어지는 단계임. 그러

므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이나 성공가능성에 대한 지도 조언이 중심이고, 이미 선정된 사람이므로 자금의 지원은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이루어짐.

다. 추진주체

- 4번째 단계인 자금지원단계는 종합자금제로 금융기관이 주가 되어 추진할 수 있으나, 3 단계를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과정에서 충분한 사업계획서의 검토와 조언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즉, 사업계획서를 제외한 3단계까지의 과정으로 일단 선발하고, 개인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자금 지원 규모를 결정하거나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견됨.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자금 지원은 농협이 하되, 그 외의 부분은 지역별로 기존의 방법과 유사하게 결정함이 적절할 것임.

라. 농업인력 육성체제

- 지금까지 연구하여 제안된 체제를 좀 더 세분화하여 7단계의 육성체제를 제안함.

단계	농업인력명칭	특 징
예비단계	예비후계자	교육이수 중이나나 창업을 준비하며 교육 및 훈련을 받는 자
취농단계	창업예비자, 창업농업인	창업자,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의 사람, 초보적 기술, 경영, 소득 수준, 처음으로 독립적으로 영농을 하는 사람. 이론과 기술을 통합하는 단계로서 초보적 수준을 지칭함.
정착단계	정착농업인	영농정착에 성공한 사람. 기술, 경영, 소득수준중 어느 하나가 지역평균 수준
발전단계	전문농업인	기술과 경영, 소득수준이 해당품목의 전체평균 수준
안정단계	선도농업인	기술, 경영, 소득 수준이 해당 품목의 전국 평균 수준이상, 부분별 전국 평균이상
후계수련 단계	신지식농업인	기술과 경영수준이 품목내에서도 전국평균수준보다 월등히 높고, 전국 농업인 수준에서도 상위수준이며, 농업외 분야의 평균소득과도 비슷하거나 상위수준
경영이양 단계	명예농업인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로서 그들의 지식이나 기술을 실제 경영에 종사하기보다 후계를 가르치거나 자문이나 봉사활동에 관여하며 농업을 후원하는 단계의 농민

- 이들 영역별로 예비후계자와 창업예비자, 창업농단계로 구분되며, 그 이후는 정착 농업인, 전문 농업인, 선도 농업인, 신지식농업인, 명예농업인의 구분으로 이루어진다. 각각 별로 정책적 적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임.

단계	농업인력명칭	정책적 적용 내용
예비단계	예비후계자	교육지원, 프로젝트자금 지원
취농단계	창업예비자, 창업농	자금지원, 현장실습교육지원, 품목별 교육지원
정착단계	정착농업인	작목조직 지원, 선진농가연수지원, 자금 지원
발전단계	전문농업인	품목조직 지원, 해외연수 지원, 교육운영지원, 자금지원
안정단계	선도농업인	전문 품목 교육 강사 POOL화, 해외수출지원, 자금지원
후계수련단계	신지식농업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품목별 단체조직 운영지원
경영이양단계	명예농업인	경영이양지원, 경자유동화 지원, 창업자 지원 심사 참여

마. 창업농의 수요와 확보 방안

□ 창업농은 전체 인구의 증가나 농업생산물에 대한 연간소비량 변동, 농업인구의 변동 및 농업인의 생산성 변동을 고려할 때, 현재 여건에 기초할 때 12,000명 정도가 매년 확보되어야 함. 그러나 2010년까지 현재의 농민들의 69%이상에 속하는 159만명 정도가 60세 이상의 고령이 되므로 생산성의 대폭 감소가 예견되며, 농경지의 대폭 증가나 생산성의 비약적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부족한 모든 식품의 수입이 예견되므로 5년 이내의 은퇴농 101만명을 대체할 인력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도 58만 이상의 취농인구가 확보되어야 할 것임. 현재의 소비량과 생산량을 유지한다고 할 때 인구증가에 따른 농업생산인구 수요 규모는 2010년에는 최소 187만명에서 277만명이여야 함. 그러므로 연평균 10만-20만명의 신규 취농인구가 필요함. 이는 현재의 고교이상의 각급 학교에서 졸업자의 10%이상을 취농분야의 인력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농업분야의 학과개편은 생산학과를 관련학과로 개편하거나 폐과를 최대한 억제하고, 신설하여야 하는 실정이며, 현재의 취업생 6500여명은 농업분야로 최대한 유치하되, 이들에 외에도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농업계 전문대학과 농과계 대학의 졸업생 10%이상을 유치하여야 함. 이들에 외에도 귀농자의 유치를 위하여 각급 농업계 학교에 상설과정을 정시제로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취농희망자를 유치하는 방안이 육성과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이 농림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은퇴연령을 70세이상으로 규정하여 이들 60-70세 연령 집단을 영농에 대한 실제적 실습을 보완할 수 있는 집단으로 설정하고 이들에게 창업후보자의 실습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함이 적절할 것임. 이는 장차 농지의 승계나 판매에도 도움이 될 것임.

2. 선발 이후

가. 사업계획서

□ 영농사업계획에 대한 낮은 배점의 문제, 경영능력, 재배 작목에 대한 미래 소비 확대 가능성, 영농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재무관리 및 위험관리 능력 등이 재고되어 창업농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창업농에 대한 육성단계를 ① 예비후보자단계, ② 창업예비단계, ③ 창업단계로 구분하였을 때, 각 단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사업계획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본문 참조)

구 분	예비후보자 단계	창업 예비 단계	창업 단계
대상 범위	단일 작목	진 작목	전 작목
사업계획 내용	가. 경영목표 나. 재배 및 사육형태 다. 영농규모 라. 재배 및 사육계획 마. 수입 및 지출계획	가. 경영 작목 나. 경영목표 다. 재배 및 사육형태 라. 영농규모 마. 재배 및 사육계획 바. 수입 및 지출계획 사. 경영성과 분석	가. 경영 작목 나. 경영목표(단기, 장기) 다. 재배 및 사육형태 라. 영농규모 마. 재배 및 사육계획 바. 수입 및 지출계획 사. 경영성과 분석 아. 대차대조표 자. 손익계산서 차. 융자금 상환계획
대상자	농고 재학생 학교4-H회원	미래 창업농 희망자	창업지원자
지원사항	과제자금 300~500만원 지원		

나. 교육방안

□ 창업농 각 육성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구 분	예비후보자 단계	창업 예비 단계	창업 단계
교육 대상자	농고 재학생 학교4-H회원	미래 창업농 희망자	창업지원자
컨설팅 기관 (담당자)	농업계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농업기술원 및 기술센터	농업기술원 및 기술센터 민간 컨설팅 농업교육기관 농산물 유통기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및 기술센터 민간컨설팅 농업교육기관 농산물 유통기관 생산자 단체 농업협동조합
교육 내용	재배 및 사육기술 농업재무관리 및 경영 농산물 유통 농업정보	재배 및 사육기술 재무관리 및 경영분석 농산물 유통 및 정보습득 의사결정 경영기록 및 조직 농업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	재무관리 및 경영분석 농산물 유통 및 정보습득 농업금융 및 위험관리 의사결정 농업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 농산물 무역
교육 방법	공통교육	품목별 교육	품목별 교육
교육 시기	재학 중 과제이수기	농한기	농한기

건전한 농업경영체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관리 진단방법으로 외부비교법으로 표준 비교법, 내부비교법으로 계획 대 실적 비교법을 적용하여 진단방법으로 제시하였음.

항 목	사례농가	표준농가	표준농가비율	목표	목표달성도
수량(kg/10a)					
농업조수입					
농업경영비					
농업생산비					
농업 소득					
농업순수익					
농업소득율					
농업순수익율					
자본 효율					
노동생산성					
토지생산성					
총자본이익율					
자기자본이익율					
부채상환능력					
계					

회계관리 프로그램은 농업인들이 쉽게 작성하고, 자신의 재산상태와 수익성을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다. 컨설팅

- 컨설팅 관련 각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게 컨설팅 종류별 주체기관이나 업체를 선정하여 농업경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컨설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컨설팅 대상 경영체의 선정과 컨설팅 공급업체의 선정 등이 합리적으로 선정되고, 컨설팅 업체와 경영체가 상호 정보와 경영에 대한 각종 자료를 공유하면서 경영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구체적인 컨설팅 방법은 본문 참조)

참고문헌

- 각 시·도(2002, 2003). 후계농업인 교육 계획 및 교재.
- 강정일 외(1996). 21세기 농업·농촌의 좌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교육인적자원부(각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3). 고등학교 농업경영. 교육인적자원부.
- 권오욱 외(1998). 농업회계. 선진문화사.
- 김양식(2000). 우리나라 벤처농업의 현황과 과제. 벤처농업 심포지움: 한국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 김재호(2000). 벤처농업의 필요성과 육성방향. 벤처농업 심포지움: 한국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 김정부 외(1998). 프랑스·독일의 영농규모화사업 관련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외(2001). 농가경제·부채 실태와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호섭(1985). 영농후계자 육성사업의 성과분석: 성공사례에 나타난 자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김호탁 외(1993). 농업인력: 올바른 인식과 대책. 서울: 농민신문사.
- 농림부(1963-2000). 농림주요통계. 농림부.
- 농림부(1997). 1997년도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사업 현황. 농림부.
- 농림부(1998). 1998년도 농업인력 육성 현황. 농림부 농업정책국.
- 농림부 농촌인력과(1999). 2000년도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계획(지침).
- 농림부(2001a). 농업인력 육성 대책(안). 농림부 내부자료.
- 농림부(2001b). 2001년도 농업인교육훈련계획. 농림부.
- 농림부(2001c). 해외농업통계. [On-line]. Available. http://www.maf.go.kr/overseas_2000.
- 농림부(2001d). 후계농업인 사업지침. [On-line]. Available. http://www.maf.go.kr/human_2000/후계농업인.asp.
- 농림부(2001e). 2001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On-line]. Available. <http://www.maf.go.kr/chosin/allim1204.htm>.

- 농림부·농촌진흥청(1998). 농업인후계자·전업농가 경영실태조사보고서. 농림부·농촌진흥청.
- 농림부(2002). 200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4권. 농림부.
- 농림부(2002a). "2002년 주요업무계획".
- 농림부(2002b). "2003년도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사업실시 요령".
- 농정발전기획단(2001). 주요 농정지표의 전망과 목표(잠정). 서울: 농정발전기획단.
- 농정발전기획단(2001). 농업인력 육성안.
- 농촌진흥청(1994a). 식량·특용작물 경영진단과 설계요령.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1994b). 원예작물 경영진단과 설계요령.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1995). 외국의 농민교육훈련사업.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1999). 작물별 경영기록장.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2001C). 2001년도 4-H 육성 현황. 내부자료.
- 농촌진흥청(2001a). 신규후계농업인교육 교재.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2001b). 후계농업인 사업추진 실적. 내부자료.
- 농촌진흥청(2002). 영농4-H 과제활동 지원사업 성과분석. 내부자료.
- 농촌진흥청(2003). 2003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
- 민승규(1999). 벤처농업의 가능성. 삼성경제연구소.
- 민승규(1997). 정예인력육성 정책의 평가와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 민승규(2000). 한국농업의 새로운 가능성: 벤처 농업. 삼성경제연구소.
- 박진도 외(1999).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 실효성 분석. 대전충남발전연구원.
- 박문호(1998). 일본 신농정의 농업경영체 육성정책. 농촌경제 제21권 3호.
- 벤처농업포럼(2000). 한국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벤처농업심포지엄 자료집.
- 안덕현 외(2001). 농업인력 확보 및 육성방안 연구. 한국농업전문학교.
- 윤호섭·박동규·이영대(1992). 농업인력의 확보 유지 및 교육훈련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김종선·전일송(2002). 벤처농기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영대(1981). 성공적인 영농정착자의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대·정명채(1990). 농촌인력의 체계적 육성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용환 외(2000). 21C 신지식농업인화 방안 및 교육·훈련연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임정빈(2001). 최근 미국의 농정변화와 WTO 농업협상에서의 전략. 농촌경제연구원.
- 장건상(1997). 농업전문인력의 육성 방향(농촌진흥청 편). 농촌지도공무원 전문교육 교재 (3-12). 농촌진흥청.
- 장창원 외(1998). 산업인력 수급 전망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명채·민상기·이영대(1991). 농업전문인력의 확보와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성봉(1987). 농업계 고등학교 출신 자영자의 영농정착과 관련변인. 서울대학교 미출판 박사 위논문.
- 정철영 외(2001). 지식기반 농업을 위한 농업인력 육성의 문제점 분석. 국농업교육학회지 33(1). pp.1-24.
- 정철영 외(2002). 21세기 지식기반 농업을 위한 농업인력 육성방안.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조홍수·전영길(1991). 일본과 대만의 농업후계자 육성사업. 안성농업전문대학 논문집 제 23호.
- 중소기업청(2003). 창업가이드. [On-line]. Available.
<http://www.changupnet.go.kr/cnet-bin/index.cgi>.
- 진주농림전문학교(1988). 새 영농설계사례집. 진주농림전문대학.
- 최민호 외(1993). 농촌인력개발 육성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설 농업개발연구소.
- 최현주(1994). 영농후계자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미출판 석사학 위논문.
- 통계청(2003). 통계정보시스템. <http://www.nso.go.kr/>
- 하동호(1998).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지원정책.
- 農林水産省(2001). 青年農業史・指導農業史 縣別認定要件, 認定狀況. 農産園藝局 婦人生活課 내부자료.
- 全國新規就農相談センター(2001). 新規就農ガイド事業. [On-line]. Available.
<http://www.nca.or.jp/guide/howto.html>.
- 全國 農村青少年 教育振興會(2001). 社團法人 全國農村青少年教育振興會 概要. [On-line]. Available. <http://www.agriworld.or.jp/>
- Board on Agriculture,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2). *Agriculture and the undergraduate*.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CNASEA. (2003). *Aides à l'installation*. [On-line]. Available:
<http://www.cnasea.fr/accueil/informations/formulaires.html>.

- Cortada, J. W. (Ed.). (1998). *Rise of the Knowledge Worker (Resources for the Knowledge-Based Economy)*. Butterworth-Heinemann.
- Educagri. (2002). *L'enseignement agricole 150ans(1848-1998)*. [On-line]. Available: <http://www.educagri.fr/150ans/sommaire.htm>.
- FAO. (1993). *Agriculture: Towards 2010*. Rome: FAO
- Mellor, J. W. (1996). *Agriculture, the environment and farmer's incomes for the 21st century*. 제1회 「농업인의 날」 기념 국제학술대회논문집(1996. 11. 8), 183-200.
- 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de la Pêche. (2000). *Agreste Statistique agricole annuelle Résultats 2000*. Paris: MAP.
- 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de la Pêche. (2000). *Agricultural Education in France*. Paris: MAP.
- 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de la Pêche. (2000). *L'installation en agriculture: Analyse et perspectives*. CNASEA.
- OECD. (1994).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youth*. Paris: OECD Head of Publication Services.
- OECD. (1996a). *The Knowledge-based economy*. Paris: OECD.
- OECD. (1997).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 SDRE, FAO. (1998). *Agricultural Education and Training: Issues and Oportunity*. [On-line]. Available: <http://www.fao.org/sd/EXdirect/EXre0003.htm>.
- U.S. Department of Education, etc. (1999). *21st Century Skills for 21st Century Jobs*.
- Steffy, B.E., Wolfe, M.P., Pasch, S.H., Enz, B.J.edi.(2000). *Life cycle of the Career Teacher*, Corwin press.

[부록]

【 DJA의 주요 작성서류 】

※ <http://www.cnasea.fr/accueil/informations/formulaires.html>에 제시되어 있는 서류 중 일부를 제시하였음.

신청자 경력증명(le demandeur)

신청자 신분증명(Identité du demandeur)

남성 기혼녀 미혼녀

성(가문)

관용명

이름

생일

국적

가족사항

부양가족

국가의무

미필

복무중

면제, 퇴역

개인주소

전문 역량(capacité professionnelle)

농업 학위

수강강좌 또는 수강계획

기타 자격

실행전 6개월 단계

정착 실행 예비단계

전문 활동을 위한 예정 강좌

활동 유형	법령	방법	기간	시작일	만료일
-------	----	----	----	-----	-----

신청기간

영농정착

신청자의 배우자 경력증명(le conjoint du demandeur)

배우자 신분증명(Identité du conjoint du demandeur)

남성 기혼녀 미혼녀

성(가문)

관용명

이름

생일

국적

가족사항

부양가족

국가의무

- 미필
- 복무중
- 면제, 퇴역

전문 역량(capacité professionnelle)

농업 학위

수강강좌 또는 수강계획

기타 자격

실행전 6개월 단계

정착 실행 예비단계

신청자의 개인적 특징(Caractéristiques de la Personne Morale dont fait partie le demandeur)

사회적 호칭

법률적 지위

SIRET

RCS 등록일 / 배당에 대한 양도일 / 자본증가일

사회기관 소재지

개인적 특징 구성

회원이름	세레명	경력 (ATP, ATS)	출생일	신용보증			단체 허가 보증			사회자본비율		
				소유지	소작지	기타	출자액	경지위치	MAD	임대출자액	1차년도	최종연도

경작지(l'exploitation)

경작지의 지리적 소재지(adresse du siège(géographique) d'exploitation)

경작면적(surface de l'exploitation)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요구 SAU						
총면적						
SAU						
- 소유지						
- 소작지						
- 반소작지						
- 지형						
- 기타						

주요 작업(main d'oeuvre de l'exploitation)

주요 작업명	주요작업유형	연번	1차년도 UTH	최종년도 UTH
총 가족 MO(정규, 무급) :				
총 정규 유급 MO :				
총 정규 MO				
총 임시 유급 MO :				

생산에 대한 보조/세금(aides & droits à produire)

보조유형	실제 보조액		단일 보조 총액		보조 총액	
	1차년도	최종년도	1차년도	최종년도	1차년도	최종년도
곡물						
유지(油脂)물						
단백질물						
PH						
세금유형	세금액		주요 조합 단일 총액		주요 조합 세금 총액	
	1차년도	최종년도	1차년도	최종년도	1차년도	최종년도
PMTVA						
PSBM						
PCO						
젓소세(소)						
젓소세(기타)						

생산자 단체 경작 활동 (Les activités de l'exploitation et les produits associés)

활동유형	코드	방법	면적		MBU		회원간 협조방법	수익		PVU	
			1차년도	최종년도	1차년도	최종년도		1차년도	최종년도	1차년도	최종년도
채소											
축산물											
기타											

영농계획의 특징(Caractéristiques du projet d'installation)

예측되는 영농 지속기간(durée de l'étude prévisionnelle d'installation)

영농계획의 개요(grandes lignes du projet)

영농생산물 상업화 방식(mode de commercialisation des produits de l'exploitation)

사회적 환경에 주는 장점(prise en compte des aspects environnementaux et sociaux)

세입 능력 예측표 (fiche de calcul du revenu disponible)

영농에 의한 세입 능력 예측(Calcul du revenu disponible de l'exploitation)

최종년도(시작일 - 만료일)

개인 영농 (installation individuelle)	
조세 납부전 결과액	
+ 상각에 의한 보조금 지급	
- 차용 만료에 의한 대금상환	
= 영농에 의한 세입 능력(F)	
UTAF 수	
세입 능력 / UTAf = A	

단체 영농 (installation sociétaire)	
조세 납부전 결과액	
+ 단체 노동에 대한 수당	
+ 상각에 의한 보조금 지급	
- 차용 만료에 의한 대금상환	
- 단체내 개인 JA 단축에 따른 부채 연부금	
= 영농에 의한 세입 능력(F)	
단체 영농 UTAf 수	
세입 능력 / UTAf = B	

1차 ATP 농업 지원자 (demande agriculteur a titre principal ATP)	
AMEXA 기등록자	
세입 능력 예측 / UTAf = A 또는 B	
지방세 최소액	
국세의 140% 최대액	

2차 ATS 농업 지원자(demande agriculteur a titre principal ATS)	
UTAF에 의한 세입 능력 예측	
(지방세 최소액) 50%	
가정의 세입 능력 예측	
농업 관련 세입 능력	
비농업 세입 능력	
최대 세입액 : 국세의 180%	

